한 눈에 보는 연금

OECD 국가들의 연금정책 2007

Pensions at a Glance 2007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Korea Policy Centre
Health and Social Plicy Programme

한 눈에 보는 연금

OECD 국가들의 연금지표

2007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30개 민주국가의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유일한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그들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거나,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또는 모범사례를 확인하거나, 국내외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도 OECD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이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역자 서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OECD/Korea Policy Centre -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는 OECD와 아시아 국가간 정책대화를 심화시킬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우리나라간 양해각서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사회정책본부의 전신인 RCHSP(Joint OECD/Korea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는 각국의 연금제도 분석에 대한 OECD 성과를 집약하고 있는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의 초판을 2005년 12월 우리말로 번역 출판한데 이어 이번에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07년" 최신판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OECD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연금정책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책분석을 포함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판 (Pensions at a Glance:Asia-Pacific)" 발간한 바 있습니다.

OECD는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에서 국가 간 연금정책을 비교하는데 기존 제도중심 비교에 의한 접근방법과 달리 지표에 의하여 국제비교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07년판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와 노후소득보장에서 점차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매우 중요하고도 유익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번역서는 OECD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합의서에 의하여 한정비매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의 이은석 연구원의 책임아래 이은경 선생님이 번역에 도움을 주셨으며, OECD 대한민국 점책센터 사회점책본부의 신수아 선생님은 본문에 나온 표와 그림 등을 편집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팀 이용하 박사님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박사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검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OECD의 Willem Adema 박사님은 합의서 작성을 포함하여 여러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쪼록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번역서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연금정책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연구원 이 은 석

본 부 장 조 기 원

서 문

이 보고서는 OECD 국가 간 연금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제공한다. 또 연금가입자가 현재의 연금관련 규정이 계속 유지되고 생애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일을 할 경우 받게 될 연금액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OECD 고용노동사회 정책국 (DELSA: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의 Monika Queisser와 Edward Whitehouse가 작성하였다. Rie Fujisawa와 Edward Whitehouse는 연금산정을 위한 모형설계와 연금과세와 관련된 부분의 분석을 담당하였으며 Anna Cristina D'Addio와 Jongkyun Choi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각국의 담당 공무원들은 각 국가의 연금제도와 조세제도에 대한 값지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각국이 제공한 연금관련 변수들과 관계법령에 대한 OECD의 해석과 연구 결과치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각국의 승인을 받은 것임을 밝혀 둔다.

특히 Mark Pearson, Martine Durand와 John Martin 등 수많은 OECD의 동료들이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OECD 금융기업국 (DFEA: Directorate of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내의 개인연금 팀 - 특히 Fiona Stewart와 Jauan Yermo - 은 사적연금과 관련된 연구부분에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OECD 사회정책 작업반은 연금제도의 국제 비교를 위한 모형 및 지표의 개발에 자문을 해 주었고, 또 이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 보고서는 OECD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함께 연구자금을 지원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아울러 동 프로젝트는 스위스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이 보고서의 연금분석모델은 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액시아 경제학연구소(Axia Economics)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가간 연금수급권 비교분석 기법(APEX ; Analysis of Pension Entitlements across Countries)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 이탈리아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의 정확성과 그 결과물의 비교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기본가정인 노동시장 진입연령과 근로 기간 (각각 20세와 45년) 가정에 대하여 EU 차원에서 수행된 유사연구의 결과 및 현재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현실과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Table of Contents

제 2 부
연금개혁과 개인연금

제 3 부
국가별 연구

Table of Contents

논 설

연금개혁: 미완의 정책과제

1990년대 초반 이래 연금개혁은 많은 OECD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왔다. 각국 정부는 미래의 연금수급권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도하거나 일련의 부분개혁을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개혁은 연금제도 그 자체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개혁들은 무엇보다도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연금산정방식의 조정 및 예전보다 낮은 실질연금인상률의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마다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은 예전 세대보다 현재 근로자세대의 예상연금액을 낮추는데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퇴직자 모두를 위해서도 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기에 이르다. 연금개혁이 모든 OECD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미완성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아직 몇몇 국가의 공적 연금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와 스페인의 연금제도의 경우 완전 경력(full-career) 근로자들은 기준퇴직연령에 퇴직 시 상당한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근로자들은 불충분한 기여금 납부경력으로 인해 최저연금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조기 퇴직을 유인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연금개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둘째, 몇몇 중요한 연금개혁안이 너무 느리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멕시코와 터키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터키의 경우 남성의 새로운 기준연금수급연령인 65세는 2043년에야 비로서 적용되며, 여성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늦게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와 멕시코의 경우, 연금개혁전에 이미 공적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짧은 가입기간을 가진 사람들 포함)에 대해서는 예전 제도와 같거나 조금 낮은 정도로 그들의 급여수준에 대한 기득권을 과다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 1995년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경우, 2017년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부터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많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느슨한 정책실행은 결국 향후 수십 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지출로 귀결될 것이다. 이로 인한 연금재정의 압박은 신속한 개혁실행 시보다도 더 큰 고통을 초래하는, 임시변통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공적연금의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근로자들에게 퇴직준비 저축을 강화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의제도를 통한 저축은 퇴직전 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이 작은, 특히 중산층이나 고소득자에게 공적연금이 작은 국가들 -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이 같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의 축소는 퇴직 후의 생활수준을 유지를 위해 더 많은 개인저축을 전제로 한다. 사적연금의 가입을 보다 활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탈퇴하지 않는 한 보장이 되는 소위 "자동가입자격유지방식(automatic enrolment)"의 도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근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퇴직소득 이슈를 단체교섭에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연금이 거의 보편화되도록 한 바 있다.

넷째, OECD 국가들이 대부분 표준 연금수급연령을 65세,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정해 놓았으면서도 많은 연금제도가 아직도 조기 퇴직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몇몇 국가들은 실업급여나 장애급여를 통하여 조기퇴직을 억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몇몇 국가들은 퇴직연령이나 급여수준을 기대여명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망이 좋아 보이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두고 보아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최근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려는 방안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정치적 압력이나 선거 사이클(electoral cycles)로 인해 실패한 바 있다.

다섯째, 몇몇 연금개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노후 빈곤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많은 국가들은 연금기여금과 연금급여액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을 실행했다. 이러한 정책시도가 근로자들이 더욱 오래 일하도록 장려하는 효과도 있지만, 평생 동안 저소득 근로자로 종사하였거나 실업, 육아 및 개호 또는 피용근로와 자영업간의 잦은 이동 등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노후 빈곤위험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각 국가들은 퇴직자들의 소득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야만 할 것이고, 노후빈곤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에서 15년간에 걸친 OECD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연금개혁의 장애물은 결코 극복하기 힘든 것은 아니다.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그 기간 중 큰 연금개혁을 실천하는데 성공했다. 연금개혁의 후발주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각자에게 필요한 연금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OECD 고용노동사회국 국장
John P. Martin

한 눈에 보는 연금

본문요약

"한 눈에 보는 연금"의 두 번째 판(edition)은 첫 번째 판에서 개발된, 연금제도의 모든 지표들을 새로이 산정하였다. 연금제도의 모든 변수 값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30개의 모든 OECD 국가의 연금제도에 있어 개인별 예상수급액을 살펴보는, 미시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 국가의 연금제도의 규정과 모든 제도변수에 대한 요약을 포함하여 연금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연금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OECD의 연금산정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8가지의 중요 대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연금개혁과 사적연금과 관련된 두 개의 특별주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OECD의 연금모형을 사용하여 국가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연금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을 더 깊게 연구한 결과물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30개 국가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균소득 근로자의 경우, OECD 국가들의 의무가입 연금이 제공하는 총 소득대체율 즉, 퇴직전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은 59%이다. 그런데 과세는 노후소득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수령자들은 대개 사회보장 기여금을 내지 않으며, 수령연금액이 대체로 퇴직전 소득보다 적고 누진세제가 적용되어 세금도 적게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소득자의 경우 OECD 국가의 순 소득대체율은 평균 70% 정도이며, 이는 총 소득대체율보다 11%가량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자들의 경우, OECD 국가들의 순 소득대체율은 평균 83%이다, 그러나 지역간 편차가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평균소득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95% 가량의 순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반면, 영미계의 OECD 국가들은 76% 정도의 순 소득대체율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 보장되는 총 연금수급액이다. 이것은 연금자산(pension wealth) 지표로 측정되며, 기대여명과 지급연금액의 실질가치 유지방식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 지표를 사용할 경우, 연금보장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이다. 평균적으로 남성인 연금수급자는 평균 92만불(USD), 여성 연금수급자는 백만불(USD) 상당의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네덜란드와 그리스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연금자산을 보장하고 있다. 다소 소박한 연금제도를 갖춘 국가는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영국 및 미국으로, 이들 국가의 연금자산은 OECD 평균의 2/3 수준이다. 가장 적은 연금을 제공하는 나라는 멕시코로, 남녀 연금수급자는 각각 미화 3.4만불, 3.2만불의 연금자산을 보장받고 있다.

■ 본문요약

거의 모든 30개 OECD 국가가 1990년대 이후 조금씩이라도 연금제도의 변화를 시도해 왔다. 그 결과 16개 국가(이들 국가의 연금개혁 내용은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의 평균연금액은 약 22% 정도 삭감되었다. 여성의 경우 평균연금액이 25%나 줄었다. 이 16개 국가들 중 헝가리와 영국에서만 평균적인 연금지급액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가 개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같은 국가들은 저소득 근로자계 층의 보장강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을 개정하고 있다. 폴란드나 슬로바키아와 같은 다른 국가는 연금과 근로소득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빈곤위험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일본,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 평균소득의 1/2에 상당하는 소득을 취득하는 완전경력 근로자의 순 연금수준이 연금개혁 이전에는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41% 정도였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이것을 32.5%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한국, 뉴질랜드, 영국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 혜택은 줄이지 않았다.

OECD 국가들의 이러한 강도 높은 개혁추진은 오늘날 근로자들이 미래의 퇴직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더 많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국가의 경우 OECD 평균 소득대체율에 접근하기 위해 생애기간에 걸친 근로자들의 저축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젊은 근로자들이 경력의 초반 10년~15년의 기간을 저축하지 않고 허비해 버린다면, 충분한 연금수준에 도달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 보고서는 왜 근로자들이 인생 초반부터 저축을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의 구조와 방법론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일반적 접근방법은 "미시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30개 OECD 국가의 연금제도 하에서 개인의 예상 연금수급액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방법론은 다음의 두 가지 연금제도 분석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장기 재정재무전망법 (예를 들어, Dang 외, 2001; 유럽 연합, 2006)과 소득분포데이터 분석법(F□rster와 Mira d'Ercole, 2005: Disney와 Whitehouse, 2001).

이 보고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각국의 연금정책을 분명하게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비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 퇴직연금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유형을 정리한다. 그 다음, 제도변수와 연금제도의 규정을 요약한다.

그리고 OECD 연금산정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8개의 중요한 비교지표들을 보여줄 것이다.

- 처음 두 가지 지표는 연금분석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지표이다. 소득대체율 즉, 연금급여와 개인소득과의 비율이다. 대체율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과 기여금의 고려여부에 따라 총 소득대체율과 순 소득대체율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정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연금제도의 최초 진입연령에 대한 기본가정을 바꾸었을 때와 확정기여(DC)요소를 가진 연금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을 바꾸었을 때 총소득대체율의 민감도를 분석할 것이다.
- 다음 두 지표는 연금자산(pension wealth)인데, 역시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으로 구분된다. 연금자산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다 포괄적으로 연금급여액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금수급연령, 임금이나 물가 등 연금의 연동기준 그리고 기대여명도 고려한 급여액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각 국가는 그들의 연금제도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기본적 사회안전망를 제공하거나 퇴직 전 소득을 대체하는 등 서로 다른 보장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보장목표간의 균형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된다. 하나는 연금산식의 누진성이고 다른 하는 연금과 소득간의 연관성이다.
- 마지막 두 가지 비교지표 - 가중평균 연금수준과 연금자산 -는 총 노후소득에 대한 각 연금제도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 보고서의 제2부에는 두 개의 주제 - 연금개혁, 개인연금 -를 다루기 위해 두 개의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주제는 국가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연금정책의 핵심쟁점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OECD의 연금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연금의 기본 분석목표는 현세대 근로자가 미래에 수급하게 될 연금액을 전망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연금 및 퇴직제도 분야에

서 강도 높은 개혁노력이 있어왔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각 국가들이 어떤 연금개혁을 했으며, 이것이 미래 연금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많은 연금개혁이 노후보장에 대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다양한 사적 퇴직준비제도의 유형을 정의하고 퇴직이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들의 저축노력을 계량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30개국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는 연금의 수급연령과 수급조건, 연금산정방식, 조기(early) 및 만기(late) 퇴직자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연금개혁에 관한 특별 장에서 다루었던 개혁 이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 국가별 연구에서는 각 나라별로 정형화된 그림과 표를 통해 연금지표의 산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제1부의 나머지 부분은 연금수급액을 계산하는데 쓰인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비교 관점에서 미래의 연금수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설정된 기본적 가정(고찰 기준년도, 고찰대상 수급자, 고찰대상 연금제도의 범위, 경제적 변수 등)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변수와 규정에 의한 미래 예상수급액

연금수급액의 비교는 OECD 국가들의 현재 입법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입법화 되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처음부터 완전히 적용되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2004년 이래로 입법화된 개혁이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에는 포함시켰다(예를 들면, 포르투갈의 경우). 몇몇 변경사항의 경우 (독일의 연금수급 연령 연장안이나 영국의 연금개혁안과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분석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늦게 확정된 것은 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금제도의 모든 변수 값은 2004년도의 상황으로 반영하고 있다. 모든 결과값은 현재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생애기간 동안 일한 다음 퇴직하는 독신 근로자(a single person)의 예상연금수급액을 나타낸다

근로경력기간

여기서 완전근로경력은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 각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 표준적 연금수급연령까지 근로한 기간으로 정의한다. 이 완전근로경력기간은 법정 퇴직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60세에 퇴직하면 40년, 65세 퇴직의 경우 45년 등등. 근로경력기간에 대한 가정에 따라 결과치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근로경력자에 비해 경력기간이 5년이 짧은 즉, 25세에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함께 계산하였다.

연금제도의 범위

공적(즉, 국민계정에 정의된 정부 또는 사회보장기관의 이전지출부분)이든 사적이든 관계없이 민간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의무가입(mandatory)* 연금제도는 고찰대상 연금제도에 포함한다. 각 국가의 민간부분 근로자를 위한 주요한 국민제도만을 모델링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 기타 특별 직업군에 속하는 근로자를 위한 연금제도는 고찰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피용자의 9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적연금제도는 고찰대상에 포함한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기업연금이 이에 해당된다. 적용범위가 넓고, 퇴직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의 기업연금을 가지고 있는 OECD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을 위해 사적연금을 다루는 별도의 장에서 임의가입 연금제도를 포함한 산정 결과치를 제시해 줄 것이다.

퇴직자가 수급할 수도 있는 자원조사(Resource-tested)형 급여도 역시 연금산정모형에 포함하였다. 이 자원조사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순전히 소득만 고려하는 경우, 또는 연금소득만을 고려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연금수급액 계산 시 모든 연금수급자는 이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재산까지 고려하는 넓은 범위의 자산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소득조사(income-test)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퇴직기간 동안에 얻게 되는 연금소득은 모두 의무가입 연금제도에서 (여기에서 고찰대상으로 포괄된 임의가입 사적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의 경우 이 임의가입 연금제도를 포함) 나오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금수급액은 경제전반 평균소득의 0.5배에서 2배 사이의 소득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이러한 소득계층 범위의 설정은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의 미래 연금급여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변수

30개국 전체를 단 하나의 경제적 가정에 기초하여 비교한다.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가별로 크게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가정은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국가 간 연금수준의 차이는 오로지 연금제도와 정책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 실질소득상승률(real earnings growth) : 매년 2%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명목 임금상승률 4.55%를 의미함)
- 개인 소득(individual earnings) : 경제 전체의 평균과 나란히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개인이 근로생활기간 내내 벌어들이는 소득이 평균소득과 일정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따라서 소득분포에서 동일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물가상승률(price inflation) : 매년 2.5%
- 적립방식, 확정기여 연금의 실질수익률(real rate of return on funded, defined-contribution pensions) : 매년 3.5%

- 계리적 할인율(discount rate for actuarial calculations) : 매년 2% (할인율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Queisser와 Whitehouse, 2006을 보라)
- 사망률(mortality rates) : 기본 모형은 국제연합/세계은행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국가별 2040년 추계치(2002년 작성)를 이용.
- 소득분포(earnings distribution) : 주요지표 산출 시에는 (18개 국가를 포함하는) OECD의 평균소득분포자료를 이용한다.

이러한 기본가정을 변경하면, 예상 연금수급액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 하에서는 적립기금의 수익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경제전반의 소득증가율 변동이나 개인소득이 경제전반의 소득에 비해 빠르게 혹은 느리게 상승할 경우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눈에 보는 연금* 의 초판(OECD, 2005)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에서의 수익률은 관리비용(net of administrative charges)을 제외한 실질수익률로 가정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은 국가 간 관리비용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는 Whitehouse, 2000과 2001 참조).

이 계산에서 연금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확정기여형 연금급여는 퇴직 시 보험수리적으로 공정한, 물가연동의 종신연금(price-indexed life annuity) 형태로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이 종신연금은 사망률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마찬가지로, 명목계정연금제도(NDC)의 명목연금지급률(notional annuity rate)도 (대부분의 경우) 연금의 연동규정을 이용한 사망률 자료와 각 국가에 의해 채택된 할인율 가정(discounting assumption)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순 지표(net indicators)의 산정 시 기초가 된 2002년의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정보는 한눈에 보는 연금의 초판(OECD 2005)의 국가별 연구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의 규정과 변수는 2004년 기준으로 갱신되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지면관계상 반복하지 않았다(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곧 출간될 Fujisawa and Whitehouse 2007 참조)

산정모델 설계 시 세금제도와 사회보장 기여금은 향후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세금공제나 사회보장기여금 부과의 소득상한과 같은 "가치"변수(value parameters)는 평균소득과 함께 매년 조정되지만, 개인별 소득세율, 사회보장기여율 등의 "비율"변수(rate paraters)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세법규정과 2004년 근로자에게 적용된 세제규정에 대하여는 OECD의 보고서인 임금과세 *Taxing wages* (OECD, 200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금으로 분류하는 기준 등은 전술한 보고서의 관행에 따른다.

평균소득

이번 판에서부터 한눈에 보는 연금은 “평균적인 근로자”(average worker: AW)의 평균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새롭고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평균적 근로자의 개념은 예전에 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균적인 생산직 육체근로자”(APW)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 개념은 OECD의 보고서 *Taxing wages* (OECD, 2006)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Benefits and Wages* (OECD, 2007)에서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OECD 국가들에서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근로자가 더 이상 “전형적 납세자(typical taxpayer)”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균소득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은 더 넓은 산업 분야와 육체근로자 및 비육체 근로자 모두를 포괄한다. 그러나 소득의 개념이나 정의는 예전과 같다. 여기서 소득이란 평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공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총 임금소득을 말하며, 초과근무수당이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타 모든 현금급여를 포괄한다.

표 0.1.은 평균근로자에 대한 예전(APW) 정의와 새로운 정의(AW)에 따른 2004년의 평균소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아일랜드, 한국, 터키 세 국가의 경우에만 아직 더 넓은 개념의 새로운 근로소득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전의 APW 자료를 가지고 모델링했다. 포함되는 근로자유형의 확대는 개개의 OECD 국가들의 평균소득을 측정하는데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AW자료를 구할 수 있는 27개국 중 19개 국가는 예전의 APW 정의에 의한 평균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그림 0.1. 참조). 정의(definition)의 변경은 측정된 6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영국)의 평균소득을 30%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시켜 놓았다. 그 다음 3개국(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은 20%가량 상승시켜 놓았다. 반면, 미국의 평균소득은 상당히 감소(13%)시켜 놓았고, 다른 7개국은 약간 감소(5% 내외) 시켜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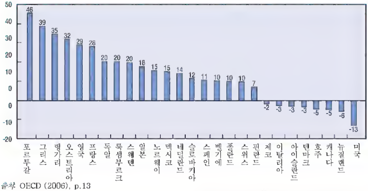
* 각 국가들은 새로운 평균 임금의 개념에 의거하여 자료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 초기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가이드라인 해석의 차이들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료의 경우 평균 임금의 자료에 다른 국가에서 포함되었던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미국의 평균임금 추산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연구 중이고 준비가 되는대로 조만간 OECD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표 0.1. OECD 국가의 2004년 평균소득
각국의 통화 및 미국 달러화 시장가격 및 구매력등가 환율(PPP) 기준

	OECD 기준 평균소득				대미환율	
	구- 자국통화 (APW)	신- 자국통화 (AW)	신- 달러화 환산, 시장환율	신- 달러화 환산 PPP	시장환율	PPPs
호주	52,777	48,827	35,922	35,917	1.36	1.36
오스트리아	24,946	32,872	40,842	37,872	0.80	0.868
벨기에	32,281	35,578	44,205	41,151	0.80	0.865
캐나다	40,912	38,945	29,933	31,269	1.30	1.25
체코	213,573	209,489	8,153	14,936	25.69	14.03
덴마크	323,900	316,500	52,860	37,684	5.99	8.40
핀란드	29,152	31,539	39,186	32,372	0.80	0.974
프랑스	23,087	29,549	36,713	32,199	0.80	0.918
독일	34,088	41,046	50,998	45,898	0.80	0.894
그리스	12,525	17,360	21,569	24,996	0.80	0.695
헝가리	1,262,712	1,697,268	8,377	13,682	202.61	124.05
아이슬란드	2,849,554	2,770,000	39,463	29,461	70.19	94.02
아일랜드	30,170	n.a.	37,485	30,312	0.80	1.00
이탈리아	23,044	22,053	27,400	25,628	0.80	0.861
일본	4,223,100	4,943,208	45,708	37,139	108.15	133
한국	27,356,688	n.a.	23,888	34,974	1145.20	782
룩셈부르크	32,586	39,171	48,668	42,649	0.80	0.918
멕시코	66,432	76,332	6,767	10,446	11.28	7.31
네덜란드	32,457	37,026	46,003	41,300	0.80	0.897
뉴질랜드	41,778	39,428	26,129	26,793	1.51	1.47
노르웨이	314,523	366,161	54,332	41,005	6.74	8.93
폴란드	26,745	29,263	8,015	15,858	3.65	1.85
포르투갈	9,372	12,969	16,113	18,344	0.80	0.707
슬로바키아	190,000	200,722	6,228	11,679	32.23	17.19
스페인	17,913	19,828	24,635	26,215	0.80	0.756
스웨덴	251,282	300,814	40,949	32,773	7.35	9.18
스위스	64,419	70,649	45,849	40,900	1.24	1.73
터키	13,959	n.a.	9,789	16,788	0.83	0.831
영국	20,560	27,150	49,747	43,881	0.55	0.619
미국	34,033	30,355	30,355	30,355	1.00	1.00

n.a.: 해당없음
AW = 평균 임금
APW = 평균 제조업 임금
PPP = 구매력 평가 환율
주: 터키의 통화가치는 1,000,000으로 나눈 값임. 아일랜드, 한국, 터키는 AW 방법에 의한 평균소득을 산출할 수 없었음
출처: OECD (2006), p.13, 및 OECD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림 0.1. 종전의 APW기준 평균소득과 AW기준 평균소득간 격차(%), 2004년



출처: OECD (2006), p.1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6456570455*

표 0.2. 2040년 추정 사망률에 기초한 65세의 기대여명

	남성	여성
호주	84.0	87.4
오스트리아	83.7	87.3
벨기에	83.8	87.3
캐나다	83.8	87.4
체코	82.5	86.0
덴마크	83.1	86.0
핀란드	83.6	87.5
프랑스	83.9	87.6
독일	83.2	86.6
그리스	83.3	86.6
헝가리	80.8	85.0
아이슬란드	84.8	87.5
아일랜드	82.8	86.2
이탈리아	83.0	87.0
일본	85.8	88.7
한국	81.8	85.6
룩셈부르크	83.0	87.2
멕시코	80.9	84.8
네덜란드	83.5	86.7
뉴질랜드	83.6	86.8
노르웨이	84.2	87.5
폴란드	81.5	85.6
포르투갈	82.8	86.2
슬로바키아	81.1	85.1
스페인	83.4	87.0
스웨덴	84.3	87.5
스위스	84.5	88.2
터키	80.0	83.0
영국	83.3	86.4
미국	83.8	87.3
OECD 평균	83.1	86.6

주: 이 추계는 최근의 국가 센서스자료에 기초하고 있음. 사망률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가정이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관된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산출된 사망률이 가정의 차이로 해당 국가의 자체 추정치와 다를 수 있음

출처: OECD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OECD가 계산함.

인구분포와 기대여명

표 0.2.는 각 국가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65세 시점에서의 기대여명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의 연금수급액을 추정하기 위해 국제연합(UN)/세계은행(World Bank)의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2040년 인구전망자료를 사용하였다. 2004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는 2044년과 2051년 사이에 퇴직할 것이다. 불행히도 기대여명 전망자료는 2040년과 2075년의 것만 이용이 가능했다.

가난한 OECD 국가의 국민은 부유한 국가의 국민보다 기대여명이 더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의 경우 65세 시점의 기대여명이 OECD 평균보다 1.5년에서 3년까지 더 짧다. 일본과 스위스의 경우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기대여명이 현저하게 높고, 이러한 추세라면 2040년에도 가장 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들의 기여여명은 대체로 OECD 평균 주변에 몰려있다.

참고문헌

Dang, TT., P. Antolin and H. Oxley (2001), "Fiscal Implications of Ageing: Projections of Age-related Spending", Working Paper No. 305, Economics Department, OECD, Paris.

Disney, R.F. and E.R. Whitehouse (2001), "Cross-Country Comparisons of Pensioners' Income", Report Series No. 142,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London.

European Union, Economic Policy Committee(2006),"The Impact of Ageing on Public Expenditure: Projection for EU-25 Member States on Pensions, Health Care, Long-term Care, Education and Unemployment Transfer(2004-2050)", *European Economy*, Special Reports No. 1/2006.

Förster, M.F.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22, OECD, Paris.

Fujisawa, R.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Cross-country Evidenc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Paris.

OECD (2005), *Pensions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OECD (2006), *Taxing Wages*, Paris.

OECD (2007), *Benefits and Wages*, Paris.

Whitehouse, E.R. (2000), "Administrative Charges for Funded Pensions: Measurement Concepts,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ssessment",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Studies*, Vol.120, No.3, pp. 311-361.

Whitehouse, E.R. (2001), "Administrative Charges for Funded Pensions: Comparison and Assessment of 13 Countries", *Private Pension Systems: Administrative Costs and Reforms, Private Pensions Series*, Vol. 3, OECD, Paris.

Whitehouse, E.R. (2006), *Pensions Panorama: Retirement-Income Systems in 53 Countries*, World Bank, Washington, DC.

제 1 부

OECD 국가들의 연금 정책 비교

제1부는 먼저 국가의 퇴직연금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연금제도를 이루는 중요요소 –변수와 규정들 –에 대해 요약하고, OECD 연금모형을 이용하여 계산된 8개의 연금지표에 대한 결과치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첫 두 개의 지표는 두 가지의 개념의 대체율(연금 급여와 개인별 소득의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과 기여금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로 구분된다. 또한 25세에 연금제도에 처음 진입하는 경우와 기금수익률이 다른 경우에 대한 총 대체율의 민감도 분석도 제시한다.

다음의 두 지표는 연금자산(pension wealth)인데, 역시 총(gross)와 순(net)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소득대체율과 달리 연금자산은 연금수급연령, 연금연동기준 및 국가별 기대여명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연금 제도의 두 가지 핵심 목표 –적정성(adequacy)과 보험성(insurance) –사이의 균형관계는 연금급여산식의 누진성과 소득-연금간 연관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 두 지표는 가중평균 연금수준과 연금자산, 그리고 연금소득원의 구조로 구분된다. 이 두 부류의 지표는 연금제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연금제도의 개관
(Overview of Retirement-Income Provision)

OECD 국가들의 퇴직소득제도는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복수의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연금제도 및 퇴직소득제도들을 유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는 예전의 OECD 연구(OECD, 2004, 2005a)가 만든, 연금제도의 각 부분의 목적과 역할에 기초한 제도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기본골격은 두 개의 의무적용 “층”(tiers)인 재분배 요소(redistributive part)와 보험 요소(insurance part)로 구성된다. 연금제도의 재분배요소는 연금 수급자가 어떤 절대적인 최저 생활수준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부분을 말하며, 보험 요소는 근로 당시와 비교하여 퇴직 시 어떤 목표 생활수준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부분을 말한다. 개인이 준비하거나 사용자가 제공하는 임의제도가 세 번째 층을 이룬다. 이들 각 층 내에서 다시 제도의 제공자가 누구인가(공적 또는 사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급여가 정해지는가(확정급여 또는 확정기여)에 따라 제도유형이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표 I.1은 OECD 국가에 있어 연금제도의 다양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전생애기간 또는 생애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가적 연금제도에 적용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여경력에 많은 공백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또는 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는 고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OECD 국가는 노령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제도는 여기서 “제1층, 재분배 연금제도”로 부르는데,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며 다음 세 가지 중요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초연금제도(Basic-Pension Schemes) : 그 급여가 정액(즉, 모든 퇴직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과거의 소득과 상관없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13개국이 기초연금제도 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외 두 가지 유형의 제1층 퇴직소득제도는 저소득 노인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급여의 목표대상자에 따라 구별한다.

자원조사(Resource-tested)제도는 가난한 수급자의 급여를 높이고 좀 더 부유한 수급자의 급여는 낮추어 지급한다. 급여액은 다른 원천의 소득이나 소득과 자산 모두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부 국가들은 노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일반적인 사회부조(social-assistance) 급여를 통해 제공한다. 16개 OECD 국가에서 경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적 연금제도에 가입한 저소득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조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4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연금(Minimum Pension)제도는 연금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원조사제도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급여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데 있다. 최저연금은 대개 하나의 연금제도로 나오는 연금소득만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른 저축이나 자산 소득은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벨기에나 영국의 소득비례연금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최저크레딧제도 (Minimum credits in earnings-related schemes)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아주 낮은 소득의 근로자의 경우 실제보다 더 높은 가상적 소득을 적용하여 급여액을 계산한다.

표 I.1 OECD 국가들의 연금제도의 구조

	제1층			제2층	
	보편적용, 재분배			의무적, 보험적	
	공적			공적	사적
	자원조사	기초	최저	형식	형식
호주					확정기여
오스트리아	✓			확정급여	
벨기에	✓		✓	확정급여	
캐나다	✓	✓		확정급여	
체코	✓	✓	✓	확정급여	
덴마크	✓	✓			확정기여
핀란드			✓	확정급여	
프랑스	✓		✓	확정급여+점수제도	
독일	✓			점수제도	
그리스	✓		✓	확정급여	
헝가리				확정급여	확정기여
아이슬란드	✓	✓			확정급여
아일랜드	✓	✓			
이탈리아	✓			명목계정	
일본		✓		확정급여	
한국		✓		확정급여	
룩셈부르크	✓	✓	✓	확정급여	
멕시코		✓	✓		확정기여
네덜란드		✓			확정급여
뉴질랜드		✓			
노르웨이		✓	✓	점수제도	확정기여
폴란드			✓	명목계정	확정기여
포르투갈			✓	확정급여	
슬로바키아			✓	점수제도	확정기여
스페인			✓	확정급여	
스웨덴			✓	명목계정	확정급여+확정기여
스위스	✓		✓	확정급여	확정급여
터키			✓	확정급여	
영국	✓	✓	✓	확정급여	
미국	✓		✓	확정급여	

출처: 각국의 관계당국에서 제공한 정보. 용어들의 정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OECD (2004, 2005a)을 보라.

우리의 연금제도 유형화에서 두 번째 층은 "보험(Insurance)"의 기능을 한다. 이것은 빈곤을 방지하는 절대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소득수준과 연계된 적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층과 마찬가지로 의무가입제도이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만 이 제2층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16개 OECD 국가가 공적 확정급여(DB)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보험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하에서 연금수급권자가 받는 금액은 근로생활중의 가입기간과 근로 당시의 개인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4개국에는 "점수(Points)" 제도가 있는데, 프랑스의 기업연금제도와 독일,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근로자들은 매년의 가입기간에 대해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점수를 받는다. 퇴직 시 총 연금점수(pension points)에 점수당 지급액(pension-point value)을 곱하여 지급연금액을 산정한다.

4개 국가에서는 민간 기업 확정급여(DB)제도가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기업연금은 분명하게 확정급여제도의 성격을 띄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연금급여수준를 결정하는 보험료율, 최소수익률 그리고 적립금의 연금전환율 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보험제도로는 확정기여(DC)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기여금은 개인별 계정으로 들어가고 적립금과 투자이익은 보통 퇴직 시에 연금소득으로 인출된다. 확정기여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는 반면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는 사용자의 관여 없이 근로자가 연금운영기관을 선택한다. 스웨덴의 경우 준강제적 기업연금에 가입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의무적인 개인저축계정과 함께 추가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에 약간의 기여금만 납부한다.

또한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인 명목계정제도(NDC, notional-accounts schemes)가 있다. 이들 제도는 개인별 연금계정에 각 근로자의 기여를 기록하고 소정의 수익률을 적용해 주는 제도이다. 이 계정들을 "명목(notional)"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기여금과 이자 모두 관리기관의 장부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퇴직 시 개인별 계정에 적립된 명목금액은 기대여명을 고려한 연금산식에 의거하여 연금으로 전환된다.

연금제도의 핵심 특징들 (Key Features of Pension-System Design)

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뒤에 나오는 표 I.2.에 요약되어있다. 앞 절의 유형에 따라 연금제도를 두 개의 층으로 나눈다. 이 요약에는 불가피하게 제도의 세부사항이 많이 빠져있는데 이러한 세부사항들은 국가별 연구(제3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제1층, 재분배 제도 (First-tier, redistributive schemes)

제1층 재분배 제도의 급여수준은 각 국가의 평균소득의 백분율로 표시한다(평균소득자료는 이 연구의 방법론에 관해 전술한 절 참조)

최저연금과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어떤 근로자가 20세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표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중단없이 취업했을 때의 급여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I.2.의 마지막 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OECD 국가의 표준수급연령은 65세이다. 완전경력 근로자는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에만 자원조사 제도의 급여대상이 될 수 있고 이들 수급자의 대부분은 가입이력이 짧고 중단된 경우이다. 마지막 행은 완전경력 근로자가 수급할 수 있는 제1층 급여의 전체를 표시한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제1층 급여를 동시에 받은 수도 있는 반면, 여러 제도 중에 하나에만 수급권이 있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최저퇴직급여액은 평균소득의 약 29% 수준이다.

제2층, 보험 제도 (Second-tier, insurance schemes)

제2층, 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는 소득비례제도와 확정기여(DC)제도로 나누어 보여준다.

소득비례제도에 대한 정보는 제도의 유형을 확정급여제도(DB), 점수제도, 명목계정제도(NDC)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들 제도유형간 급여액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근로자가 가입기간 1년당 얻게 되는 연금지급률(accrual rate)이다. 지급률(accrual rate)은 연금제도에 "적용된"(covered) 소득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대부분의 연금제도에서는 연금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 근로자 소득의 일부만 적용한다.

점수제도의 경우 표 I.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효지급률은 연금점수당 비용과 연금점수당 지급액의 비율이며 개인별 소득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이것은 확정급여제도의 지급률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일정비율

로 매년 소득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급여율을 표시한다. 이것은 기여율(contribution rate), 명목이자율 (notional interest rate), 연금화 변수(annuity factors)에 기초하여 계산되는데 자세한 것은 2005년판 *한눈에 보는 연금* (OECD, 2005a)에 나와 있다.

소득비례연금제도(세 가지 유형 모두 포함)가 있는 국가의 절반 정도는 가입기간 1년당 동일한 (linear)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가입기간 1년당 얻게 되는 연금급여는 개인의 소득, 가입기간, 또는 연령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8개의 국가 경우에서 연금지급률은 소득과 연관되어 있다(표 I.2.의 [w]로 표시). 체코, 스위스, 포르투갈,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지급률이 누진적인 관계로 저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이 더 높다. 영국의 경우 지급률이 U자 형태로 저소득에서 가장 크다가 차츰 작아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기업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에서 적용되는 소득삼한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높은 대체율을 보장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상쇄시켜 버리고 있다.

핀란드와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의 경우 연금지급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a]로 표시).

2개국의 연금지급률은 종사기간([y])에 따라 가변적이다. 룩셈부르크는 가입이력이 긴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스페인에는 세 단계의 지급률을 두고 있다. 그 패턴은 룩셈부르크와 반대로, 초기 몇 년의 가입기간에 대해 가장 높은 지급률이 적용되고 긴 가입이력의 후반기에는 가장 낮은 지급률이 적용된다.

확정기여제도 (Defined-contribution schemes)

확정기여제도에서 핵심 변수는 근로자, 사용자 또는 정부에 의해 개인별 계정에 납부된 연금기여율이다. 의무적 확정기여제도를 실시하는 8개국의 평균 기여율은 7.25%이다. 가장 높은 기여율을 가진 덴마크의 경우 총기여율은 특별연금에 납부되는 1%와 준강제 기업연금의 평균기여율 10.8%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와 슬로바키아의 기여율은 9%이다. 노르웨이는 최근 의무적 확정기여방식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기여율은 2%이다. 스웨덴의 경우 피용자는 확정기여계정에 소득의 2.5%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화이트칼라나 민간부분의 근로자는 그 외의 확정기여제도에 2%의 기여율을 납부해야 한다. 멕시코의 기여율은 6.5%이다. 최저임금의 5.5%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정부기여금은 근로기간 중 매년 정액형태로 지급되므로 기초연금제도로 본다.

급여산정소득의 측정 (Measuring earning to calculate benefits)

확정급여형 연금수급액은 개별 근로자의 과거소득에 달려 있는데, 이 소득의 측정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표 I.2.는 생애평균소득이 사용되는지, 생애 최고소득 또는 생애 최종소득 등 제한된 생애기간의 평균소득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제도의 장기 규정과 연관된 정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평균소득 산정에 사용되는 기간은 많은 국가에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연금개혁에 대한 특별 장을 볼 것).

연금산정 시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소득은 전 생애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이다. 17개국이 이러한 소득을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체코, 미국은 상당히 긴 경력기간 동안(30-35년)의 평균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5개 국가의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스페인의 공적연금 그리고 스웨덴의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에서는 최종임금이 연금산정소득으로 적용되므로 이 연구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공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액 산정 시에는 각각 생애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은 25년과 20년간의 평균소득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재평가 (Valorisation)

소득 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과거소득의 재평가(valorisation) 또는 재계산(revaluation) 방식인데, 이는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과 청구 시점사이의 생활수준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과거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것은 종종 퇴직전 연동 pre-retirement indexation 이라고 부른다).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과거소득의 재평가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긴 기간의 소득에 의하여 급여를 산정할 때는 연금수급권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수제도나 명목 확정기여형제도에서 사용되는 연금점수당 지급액의 연동율이나 명목이자율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재평가율과 동일한 개념이다.(자세한 설명은 Queisser and Whitehouse, 2006, Box 4를 볼 것)

재평가 정책은 그 "복리(compound interest)"효과로 인해 연금급여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경제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실질임금상승률 2%와 물가상승률 2.5%)하에서 완전경력(20세에서 60세 사이)근로자의 경우, 물가상승률에 의한 재평가는 소득상승률에 의한 재평가보다 40% 정도 작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거소득 재평가기준은 - 15개 OECD 국가가 적용하고 있다 - 경제전반의 평균소득상승률이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은 물가상승률만으로 과거소득을 재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적연금은 25년, 벨기에와 프랑스의 기업연금제도는 전생애기간의 임금을 고려하는데 비해 스페인은 마지막 15년의 임금을 연금산정 시 고려하기 때문에 물가에 의한 재평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핀란드, 포르투갈, 터키는 물가와 소득의 상승률을 합쳐서 재평가에 사용한다.

연금산정 기준소득의 상한선 (Ceilings on pensionable earnings)

대부분의 국가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기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대개 기여금 부과와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소득에 대해 한도를 정해 두고 있다. 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제도는 2층 제도의 구조, 규모 및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9개국 공적연금제도의 평균 상한소득은 경제전

반 평균소득(average economy-wide earnings)의 189%이다(이때 소득상한제와 관련이 없는 기초연금이나 목표제도 등의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8개 국가와 공적연금에 소득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3개국은 제외했다).

표 I.2.는 강제가입 개인연금제도나 핀란드와 프랑스의 기업연금제도에도 상한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제도를 가진 9개국 중에서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3개국은 소득상한이 없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기업연금제도에서 상한은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상한의 각각 3배, 2.8배 수준(경제전반 평균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이다. 멕시코의 확정기여제도(DC)에서 의무기여 소득상한도 역시 비교적 높다.

연금수급연령 (Pension eligibility age)

대다수 OECD 회원국이 남성의 경우 65세가 표준 퇴직연령이다. 여성의 수급연령이 몇몇 국가에서 여전히 낮지만,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남녀 간 수급연령 격차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예를 들면, 벨기에, 헝가리,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미국의 경우는 67세가 표준 수급연령이고 덴마크, 독일, 영국은 65세 이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늘이려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프랑스가 60세를 정상퇴직연령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퇴직연령 이전에도 퇴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개 연금액이 감액된다.

지급연금의 연동 (Indexation of pensions in payment)

연동(indexation)이란 연금수급을 시작한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인상 정책을 말한다. 연금 급여는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계되어 조정된다. 몇몇 국가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조합하여 연금을 조정하는데 체코,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가 이런 나라들이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누진적인 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금액이 낮을수록 높은 연동률이 적용되므로 연금액이 낮은 사람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저액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고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의 90%에서 75%까지 제한적으로 물가에 연동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혼합기준으로 연금을 조정하는데 정확한 증가분은 수급연금수준과 GDP 상승률에 달려 있다.

연금제도 변수의 연동 (Indexation of pension-system parameters)

연동은 연금의 지급액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원조사 연금제도나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시점의 연금수준에 대한 조정은 수급 중인 연금액의 조정보다 더 중요하다.

영국의 기초연금제도를 예를 들어보자. 1981년부터 소득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기

초연금의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24% 정도였지만, 현재는 평균소득의 15%에 불과할 정도 낮아졌다. 연동기준의 변화는 연금수급자들의 수급액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 근로자의 급여도 감소시켰다. 이러한 연동제도의 적용이 계속된다면, 신규 기초연금가입자가 45년 후 그들이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은 현재 기초연금액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평균소득의 6.4%에 달할 것이다(이 계산은 연 2%의 실질 소득상승률 기본가정에 의한 것이다).

캐나다와 스웨덴은 자원조사제도의 급여를 물가에 연동시키고 있다(반면 영국은 이제 평균소득과 연계한다). 장기적 성격을 지닌 연금 정책의 특성상 이러한 연동제는 제도를 거의 소멸시켜 버리게 될 것이다. 새로 진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45년 이후 캐나다의 최저퇴직소득은 평균소득의 12%, 스웨덴의 그것은 평균소득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낮은 급여가 가난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유지될 수가 없으며, 실제로 유지될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각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던지 간에 연금급여와 제도변수는 물가가 아니라 평균소득의 변동률에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모형화 한다. 분명 이러한 가정은 연금지급액의 가치를 계산할 때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표 I.2. 연금제도의 변수와 규정의 요약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제1층										
(평균소득의 백분율)										
자원조사	25	28	22	17	26	18	19	32	19	11
기초	–	–	–	14	8	18	–	–	–	–
최저	–	–	34[1]	–	12	–	–	23	–	34
전체 수급권	25	28	34	31	26	36	19	32	19	34
(완전경력 근로자)										
제2층										
소득비례										
형식	없음	DB	DB	DB	DB	없음	DB	DB/점수제	점수제	DB
지급률	–	1.78	1.33	0.63	0.45[w][2]	–	1.5[a][4]	1.75[w][5,6]	1.00	2.57[5]
(개인소득의 백분율)										
소득기준	–	40	L	b34	f30	–	L	b25/L	L	f5
재평가	–	w[15]	p	w	w	–	80w/20p	p/p	w16	17
연동	–	d	p	p	33w/67p	–	20w/80p	p/p	w16	d
확정기여										
기여율	9	–	–	–	–	11.8	–	–	–	
(개인소득의 백분율)										
상한										
(평균소득의 백분율)										
공적	–	147	117	96	없음	–	–	101	151	275[7]
사적/기업연금	257	–	–	–	–	–	없음	302	–	–
연금수급연령										
정상	65	65	65	65	63	65	65	60	65	65
(여성)					(59-63)[3]					
조기	55	60	60	60	62	63	55			
(여성)					(59-63)[3]					

* 제도변수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한 값이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의 개정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국가에서는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늘이고 급여를 산정하는 소득측정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정사항 등을 포함했다.
* 여성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남성의 그것과 다를 경우에만 표시했다.
* 조기연금 수급연령은 관련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표기했다.
* 여기서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미해당,	[a] = 연령에 따라,	[w] = 소득에 따라,
[y] =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지급률이 다름을 의미		
b = 최고소득 연수,	f = 최종소득 연수,	L = 생애평균소득
d = 임의연동,	fr = 법정 고정비율에 따른 재평가	p = 물가에 따른 재평가/연동
w = 평균소득에 따른 재평가/연동	GDP = 국내총생산과 연계	
DB = 확정급여,	DC = 확정기여,	NDC = 명목계정

1. 벨기에, 슬로바키아, 영국 - 최저연금저축 크레딧으로부터 산정한 최저연금.
2. 체코, 포르투갈, 미국 : 저소득자에게 높은 연금지급률이, 고소득자에게는 낮은 연금지급률이 적용됨.
3. 체코 : 자녀수에 따라 여성의 수급연령이 변동.
4. 핀란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연금지급률이 적용.
5.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 두 가지 상이한 제도를 종합한 자료.
6. 프랑스, 스웨덴 - 기업연금제도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높은 연금지급률이 적용됨.
7. 그리스 : 최대연금으로부터 산정한 유효 소득상한선임.

표 I.2. 연금제도의 변수와 규정의 요약 (계속)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제1층										
(평균소득의 백분율)										
자원조사	–	18[8]	27	–	–	–	–	–	–	–
기초	–	9	30	–	16	30	10	7.0/4.2[10]	31	40
최저	22	–	–	–	–	–			–	–
전체 수급권	22	27	30	22	16	30	39	26	31	40
(완전경력 근로자)										
제2층										
소득비례	DB	DB	없음	NDC	DB	DB	DB	없음	DB	None
형식	1.22	1.40	–	1.75	0.55	1.5	1.85[y][9]	–	1.75[11]	–
지급률										
(개인소득의 백분율)	L	L	–	L	L	L	L	–	L[14]	–
소득기준	w	fr	–	GDP	w	w	w	–	w	–
재평가	50w/50p	p	p[18]	p	p	p	w	–	w	–
연동										
확정기여	8	–	–	–	–	–	–	6.5[10]	–	–
기여율										
(개인소득의 백분율)										
상한										
(평균소득의 백분율)										
공적	220	–	–	370	150	160	215	–	–	–
사적/기업연금	220	없음	–	–	–	–	–	377	없음	–
연금수급연령										
정상	62	67	65	65	65	65	65	65	65	65
(여성)				(60)				60		
조기			65	60	60	60	57		60	
(여성)										

8. 아이슬란드 : 두 가지 상이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9. 룩셈부르크 : 장기 기여 기간에 대해 높은 연금지급률이 적용됨.
10. 멕시코 : 최저임금의 5.5%에 상당하는 정부기여금은 기초연금으로 간주하였음. 낮은 연금수준의 수치는 여성의 경우에 해당(여성은 남성보다 조기에 퇴직하기 때문)
11. 네덜란드 : 기업연금제도 간에 연금지급률이 상이함.
12. 노르웨이: 고소득자에게 낮은 연금지급률이 적용됨
13. 스페인 : 초기 가입기간과 최종 저소득기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지급률이 적용됨.
14. 네덜란드 : 소득은 기업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을 2/3, 최종 임금의 1/3을 평균한 임금으로 측정함.
15. 오스트리아 : 평균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재평가율도 소득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가정
16. 독일 : 공적연금의 기여율이 상승하면 재평가율과 사적연금에 대한 잠재적 기여율이 감소될 수 있음. 연동율도 기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감소될 수 있음
17. 그리스 : 재평가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금증가에 연동되고 있음.
18. 이탈리아 : 저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100% 물가에 연동하지만, 고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물가의 90%에서 75%까지 연동.

표 1.2. 연금제도의 변수와 규정의 요약 (계속)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제1층										
(평균소득의 백분율)										
자원조사	33	–	20	–	–	34	24	6	20	22
기초	18	–	–	–	–	–	–	–	15	–
최저	–	23	44	22[1]	30	–	18	28	15[1]	–
전체 수급권	33	23	44	22	30	34	24	28	30	22
(완전경력 근로자)										
제2층										
소득비례										
형식	점수제	NDC	DB	없음	DB	NDC/DB	DB	DB	DB	DB
지급률	1.05[w][12]	0.67	[w][2]	1.16	[y][13]	1.18[w][5,6]	[w/a]	2.0	[w][21]	[w][2]
(개인소득의 백분율)										
소득기준	b20	L	L	L	f15	L/f	L	L	L	b35
재평가	w	w[19]	25w/75p	w	p	w	w	50w/50p	w	w[22]
연동	w	p[19]	p/GDP[20]	50w/50p	p	w–1.6	50w/50p	p	p	p
확정기여										
기여율	2	7.3	–	9	–	4.5[5]	–	–	–	–
(개인소득의 백분율)										
상한										
(평균소득의 백분율)										
공적	219	230	없음	300	165	132	108	245	115	290
사적/기업연금	–	–	–	–	–	367	108	–	–	–
연금수급연령										
정상	67	65	65	62	65	65	65	65	65	67
(여성)		(60)					(64)			
조기			55		60	61	63			62
(여성)							(62)			

19. 폴란드 : 실질임금상승률에 연동. 최소한 물가상승률로 과거소득 재평가. 연동기준은 물가의 80%+ 임금의 20%였으나 2005년부터는 전적으로 물가에 연동
20. 포르투갈 : 저연금수급자에 대한 연동률은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 연금의 연동기준은 GDP 상승률이 높을수록 더 관대하게 적용.
21. 영국 :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지급률은 가장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률은 낮아진다.
22. 미국 : 60세를 기준으로 과거소득이 재평가됨. 60세에서 62세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지 않음. 62세에서 67세까지는 물가상승률로 과거소득을 재평가함.

출처: 각국의 관계당국에서 제공한 정보와 OECD 자체 계산

연금제도의 대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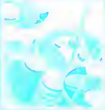
처음 두 개의 지표는 두 가지의 소득대체율(즉, 연금 급여와 개인별 소득의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과 기여금를 고려여부에 따라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대체율 모두 산정한다. 또한 25세에 처음 연금제도에 지급하는 경우와 기금수익률이 다른 경우에 대한 총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되지를 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도 하고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지표는 연금자산인데 역시 총(gross)과 순(net)으로 구분된다. 소득대체율과 달리, 연금자산은 연금수급연령, 연금의 연동기준 및 국가별 기대여명의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연금제도의 두 가지 핵심 목표 –적정성과 보험성 –사이의 균형관계는 연금급여 산식의 누진성 및 연금과 소득간의 연계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 두 가지 지표는 가중평균된 연금수준과 연금자산, 그리고 연금소득원의 구조이다. 이 두 가지는 연금제도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Pensions at a Glance 2007

정의와 측정

총 소득대체율은 총 연금수급액을 퇴직 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여기서는 중위수 소득에서의 소득대체율과 평균소득의 0.5배, 0.75배, 1배, 1.5배, 2배에서의 소득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연금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퇴직 전의 주소득원인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연금소득을 퇴직기간 동안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대개 소득대체율은 연금소득과 퇴직 전 최종소득의 비율로 표현된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한 지표는 개인별 생애평균소득(경제 전반의 소득증가와 보조를 맞추어 재평가된)의 비율로서의 연금수준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생애 근로기간 동안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과 동일한 비율관계에서 소득을 버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재평가된 생애 평균소득과 개인별 최종소득은 동일하다. 만약 사람들이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소득분포에서의 위치가 더 올라간다면 퇴직 직전의 소득은 생애평균소득보다 더 높게 될 것이고 개인별로 최종소득으로 산정한 대체율은 더 낮을 것이다.

평균소득 근로자에게 OECD 국가의 의무가입연금이 제공하는 총소득대체율은 평균 58.7%이다.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최상위권에 있는 룩셈부르크와 그리스는 9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낮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일본이고,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의무연금제도의 대체율은 대개 6개의 영어권의 국가들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평균소득 근로자의 경우 38.5%이다. 남부유럽의 5개 국가들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의 평균은 74.3%로 높은 편이다.

저소득자- 평균소득의 절반정도인 근로자-는 중간 또는 평균소득의 근로자 보다 더 높은 평균 73%의 소득대체율을 갖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저소득자를 노후의 빈곤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이 낮은 소득수준에 대한 소득대체율의 국가간 변동성은 평균소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금 변동성보다 훨씬 낮다. 저소득자들을 위한 가장 높은 총 소득대체율은 덴마크의 120%인데 이는 평생 저소득이었던 완전경력 근로자은 그들이 일을 할 때보다 퇴직 시에 더 높은 소득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소득대체율은 독일에서 보여지는데 절반정도 소득의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40%의 소득대체율을 받는다.

고 지급률과 연금관련 소득의 높은 상한선, 이 두 가지를 반영하는 그리스는 고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은 연금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낮은 상한제도를 가지고 있어 높은 소득자들의 지급률을 낮추는데 반해 그리스의 제도는 완전 경력 근로자들과 같은 비율에서 많게는 평균소득의 275% 까지 제공한다. 높은 소득자들에 대한 소득대체율의 국가간 변동성은 낮거나 평균소득근로자들의 변동성 보다 더 크다.

마지막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소득대체율이 남성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이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더 낮기 때문이다). 성별간 소득대체율의 차이는 특히 확정기여제도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 (멕시코와 폴란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이 65세인데 비해 여성의 정상연금연령은 60세이다. 이것은 여성이 개인별 연금계정에 적립하는 기간이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 여성이 연금적립액을 더 넓게 분산하여야만 하는, 보다 긴 퇴직기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1/3정도 적다. 멕시코에서는 남녀간 소득대체율의 격차가 폴란드보다 더 큰데, 이는 연금액을 계산 할 때 성별로 구분된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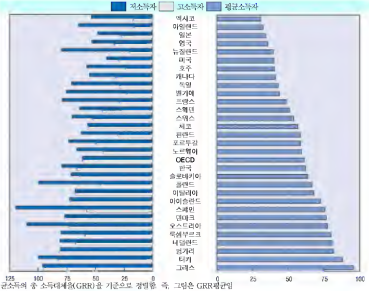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총 소득대체율

	중간값 소득	개인소득, 평균소득의 배수 0.5	0.75	1	1.5	2
남성						
호주	47.9	70.7	52.3	43.1	33.8	29.2
오스트리아	80.1	80.1	80.1	80.1	78.5	58.8
벨기에	40.7	57.3	40.9	40.4	31.3	23.5
캐나다	49.5	75.4	54.4	43.9	29.6	22.2
체코	54.3	78.8	59.0	49.1	36.4	28.9
덴마크	83.6	119.6	90.4	75.8	61.3	57.1
핀란드	63.4	71.3	63.4	63.4	63.4	63.4
프랑스	51.2	63.8	51.2	51.2	46.9	44.7
독일	39.9	39.9	39.9	39.9	39.9	30.0
그리스	95.7	95.7	95.7	95.7	95.7	95.7
헝가리	76.9	76.9	76.9	76.9	76.9	76.9
아이슬란드	80.1	109.9	85.8	77.5	74.4	72.9
아일랜드	38.2	65.0	43.3	32.5	21.7	16.2
이탈리아	67.9	67.9	67.9	67.9	67.9	67.9
일본	36.8	47.8	38.9	34.4	29.9	27.2
한국	72.7	99.9	77.9	66.8	55.8	45.1
룩셈부르크	90.3	99.8	92.1	88.3	84.5	82.5
멕시코	36.6	52.8	37.3	35.8	34.4	33.6
네덜란드	81.7	80.6	81.5	81.9	82.4	82.6

	중간값 소득	개인소득, 평균소득의 배수 0.5	0.75	1	1.5	2
남성 (계속)						
뉴질랜드	46.8	79.5	53.0	39.7	26.5	19.9
노르웨이	60.0	66.4	61.2	59.3	50.2	42.7
폴란드	61.2	61.2	61.2	61.2	61.2	61.2
포르투갈	54.3	70.4	54.5	54.1	53.4	52.7
슬로바키아	56.7	56.7	56.7	56.7	56.7	
스페인	81.2	81.2	81.2	81.2	81.2	67.1
스웨덴	63.7	79.1	66.6	62.1	64.7	66.3
스위스	62.0	62.5	62.1	58.4	40.7	30.5
터키	72.5	72.5	72.5	72.5	72.5	72.5
영국	34.4	53.4	37.8	30.8	22.6	17.0
미국	43.6	55.2	45.8	41.2	36.5	32.1
OECD	60.8	73.0	62.7	58.7	53.7	49.2
여성 (상이한 경우)						
이탈리아	52.8	52.8	52.8	52.8	52.8	52.8
멕시코	31.1	52.8	36.2	29.7	28.5	27.9
폴란드	44.5	46.2	44.5	44.5	44.5	44.5
스위스	62.6	62.8	62.6	59.1	41.2	30.9

출처: OECD 연금모형

소득에 의한 총 소득대체율



주: 국가별 평균소득의 총 소득대체율(GRR)을 기준으로 정렬함. 즉, 그림은 GRR평균임
출처: OECD 연금모형

StatLink *http://dx.doi.org/10.1787/546202021514*

정의와 측정

순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순 연금수급액을 순 퇴직 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는데 근로자와 연금수급자가 납부하는 개인별 소득세와 사회 보장 기여금을 고려한다. 순 소득대체율의 정의와 측정에서 기타 사항과 조건은 총 소득대체율과 같다 (앞의 지표를 볼 것). 여기서도 결과값은 중간값 소득과 평균소득의 0.5배, 0.75배, 1배, 1.5배, 2배에서의 완전경력근로자에 해당하는 순 소득대체율을 보여준다.

개인 소득세제(personal tax system)는 노령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연금수급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가 누진적일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다. 또한, 대부분의 소득세제에는 노인들에게 추가공제제도나 세금감면제도를 통해 연금소득 및 연금수급권자를 우대하고 있다. 따라서 순 소득대체율은 통상 총 소득대체율보다 더 높다.

평균(보통)소득자의 경우 OECD 국가들의 순 대체율은 평균 70%정도이고, 총 대체율보다 약 11% 포인트 높다. 총 대체율을 기준으로 볼 때와 순 대체율을 기준으로 볼 때의 국가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벨기에와 독일은 총 소득대체율보다 순 소득대체율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첫째, 사회보장기여금에서 연금소득 우대정책 때문이고 둘째로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 개인소득세에 대한 강력한 누진정책에 의해 근로 시 보다 퇴직이후에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현재의 매우 관대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정책을 점차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완전히 실시되더라도 순 소득대체율과 총 소득대체율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할 것이다.

벨기에와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뉴질랜드와 스웨덴은 총 소득대체율보다 순소득대체율이 더 낮은 쪽으로 내려간다. 이들 국가의 연금수입과 소득의 세율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소득절반정도의 저소득자의 순 소득대체율의 평균은 84%이다. 저소득자들(평균소득의 절반)의 순 소득대체율에 세금과 기여금이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자들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다. 이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은 평균소득자에 비해 세금과 기여금을 더 적게 납부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저소득자들의 퇴직소득은 소득세 경감선(공제, 감면 등) 아래에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연금과 소득세제하의 연금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추가적 특권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한다.

평균적으로 저소득자들의 총 소득대체율과 순 소득대체율의 차이는 11%이다. 벨기에와 체코는 순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이 훨씬 높다. 멕시코는 저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이 고소득자들에 비해 더 낮은데 저소득자들이 저연금 수급자들(같은 소득수준에 있는)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의 차이 또한 11% 포인트이다. 이것은, 고소득자들의 순 대체율이 평균 61%로 평균소득자나 저소득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소득세제는 연금제도의 누진성을 되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소득구간에서 고소득자가 가장 높은 대체율을 가지고 있는 터키에서 평균소득의 두 배인 소득자들의 순 대체율이 가장 높다. 당연히 정액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뉴질랜드와 아일랜드가 가장 낮은 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두 국가에서는 평균소득의 두 배 이상의 소득자는 퇴직전 순 소득의 1/4이하의 작은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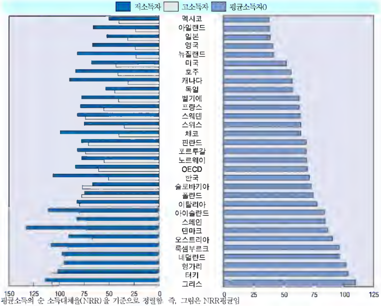
총 대체율과 순 대체율간의 차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5개 EU국가에서 중위수 소득자의 평균 순 소득대체율은 총 소득대체율보다 11% 포인트 더 높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그 차이는 더 적어서 순 대체율이 총 대체율보다 7% 포인트 높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 세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평균소득 근로자는 OECD 전체적으로 평균소득의 근로자들이 임금의 26.5%를, 영어권 국가들이 이보다 더 낮은 22%를 세금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데 비해 북유럽 국가들은 33%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은 96%의 순 대체율을 제공하지만 영어권 OECD 국가들은 퇴직 전 소득의 76%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순 소득대체율

	중간값 소득	개인소득, 평균소득의 배수				
		0.5	0.75	1	1.5	2
남성						
호주	61.7	83.5	66.2	56.4	46.1	40.8
오스트리아	90.6	90.4	90.6	90.9	89.2	66.4
벨기에	64.4	77.3	65.5	63.0	51.1	40.7
캐나다	62.8	89.2	68.3	57.4	40.0	30.8
체코	70.3	98.8	75.6	64.4	49.3	40.2
덴마크	94.1	132.7	101.6	86.7	77.0	72.2
핀란드	68.0	77.4	68.4	68.8	70.3	70.5
프랑스	62.8	78.4	64.9	63.1	58.0	55.4
독일	57.3	53.4	56.6	58.0	59.2	44.4
그리스	111.1	113.6	111.7	110.1	110.3	107.0
헝가리	96.5	94.7	95.1	102.2	98.5	98.5
아이슬란드	86.9	110.9	92.0	84.2	80.3	79.7
아일랜드	44.4	66.8	49.3	38.5	29.3	23.5
이탈리아	77.9	81.8	78.2	77.9	78.1	79.3
일본	41.5	52.5	43.5	39.2	34.3	31.3
한국	77.8	106.1	83.1	71.8	61.9	50.7
룩셈부르크	98.0	107.6	99.8	96.2	92.9	91.0
멕시코	37.9	50.3	37.8	38.3	39.0	40.0
네덜란드	105.3	97.0	103.8	96.8	96.3	94.8
남성 (계속)						
뉴질랜드	48.6	81.4	54.9	41.7	29.4	23.2
노르웨이	70.0	77.1	71.2	69.3	62.5	55.1
폴란드	74.8	74.5	74.8	74.9	75.0	77.1
포르투갈	67.4	81.6	66.0	69.2	72.2	73.7
슬로바키아	71.9	66.4	70.6	72.9	75.4	76.7
스페인	84.2	82.0	83.9	84.5	85.2	72.4
스웨덴	66.2	81.4	69.2	64.0	71.9	73.9
스위스	68.8	75.0	68.2	64.3	45.7	35.1
터키	103.4	101.0	102.9	104.0	106.4	108.3
영국	45.4	66.1	49.2	41.1	30.6	24.0
미국	55.3	67.4	58.0	52.4	47.9	43.2
OECD	72.1	83.8	74.0	70.1	65.4	60.7
여성 (상이한 경우)						
이탈리아	63.8	63.6	64.4	63.4	63.7	63.5
멕시코	32.2	50.3	35.7	31.7	32.3	33.2
폴란드	55.3	57.5	55.3	55.2	55.0	56.4
스위스	68.1	75.4	68.9	66.0	46.3	35.5

출처: OECD 연금모형

소득에 의한 순 소득대체율



주: 국가별 평균소득의 순 소득대체율(NRR)을 기준으로 정렬함. 즉, 그림은 NRR평균임

출처: OECD 연금모형

StatLink *http://dx.doi.org/10.1787/304061275274*

25세 진입 시 총 소득대체율

정의와 측정

총 소득대체율은 총 연금수급액을 퇴직 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여기서는 중위수 소득자와 개인소득이 평균소득의 05배, 075배, 1배, 15배, 2배인 경우의 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다루는 대체율은 근로자가 25세에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각국의 기본퇴직연령까지 근로할 경우의 대체율이다. 25세 이전에는 어떤 연금제도에도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제까지 각 근로자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기본퇴직연령까지 근로하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설정하였다 대다수 OECD국가의 연금수급연령은 65세이므로 이 가정의 결과로 완전경력기간은 45년이 된다 연금수급연령이 낮은 프랑스는 완전경력기간이 40년이 되는 반면,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은 연금수급연령이 높아서 완전가입기간이 47년이 된다. 장기적으로 남녀 간 연금수급연령의 격차를 유지하려는 4개 국가(표를 참조)는 여성의 완전가입기간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1년에서 4년 더 짧게 된다

실제로 연금가입기간은 기본가정에서 설정한 40년~47년 보다 짧다. 어떤 근로자들은 20세 이후에 근로를 시작하며 상당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벗어나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여전히 조기퇴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민감도 분석으로서 가입기간을 더 짧은 경우의 총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대안적 가정은 근로자가 25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가정에 의하면 완전가입기간은 40년이 된다. 여전히 프랑스는 더 짧아서 35년이 될 것이고 아일랜드, 노르웨이 및 미국은 42년이 될 것이다 다음 표는 이러한 가정에 의해 산정한 노령연금의 총 소득대체율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소득 근로자의 경우,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의 OECD 평균 총 소득대체율은 587% 인데 비해 25세에 노동시장 진입 시의 총 소득대체율은 평균 541%이다 평균소득 절반인 저소득자의 경우에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20세 진입 시에는 73%이고 25세 진입 시에는 692% 이다. 모든 근로자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수 소득자의 경우 20세 진입 시의 소득대체율은 608%인데 비해 25세 진입 시의 OECD 평균값은 56.3%이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과 미국은 20세와 25세 진입 시 총 대체율이 동일하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정액 연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미국에서는 최고 대체율은 35년 이후에 도달하기 때문에 5년간의 추가 기여는 그 기간이 최고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연금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분석에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연령은 20세 진입 및 25세 진입의 경우 모두 각 국가들의 정상연금수급연령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연금급여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기여기간에 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결과는 개인별로 25세에서 60세까지 노동에 종사할 경우 평균소득자의 대체율은 374%인데 비해 20세에서 60세까지 노동에 종사하는 평균소득자의 대체율은 51.2%이다. 프랑스에서 60세에 퇴직하는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표에서는 25세에서 65세의 가입기간에 대한 부가설명을 덧붙였다

이렇듯 더 짧은 완전가입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수급액이 더 긴 기간에 기초한 수급액보다 '더 나은'은 것일까? 첫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할 점은 이러한 모든 가정의 목표가 미래의 연금을 예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더 짧은 근로 기간은 분명히 최근 연금수급자들의 실적치에 더 근접한다 이것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는 지켜보아야 한다 OECD (2006)의 연구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축소되어 오던 몇몇 국가의 평균 연금수급연령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OECD,2005b 지표SS8-퇴직연령, 을 참조)

이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사실은 최근 많은 국가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기간을 가입기간(credits)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했다는 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육아기간, 고등 교육기간, 질병기간, 장애기간, 실업기간 등의 기간을 개인별 기여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완전경력기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양한 크레딧제도의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계층별 총 소득대체율 : 25세에 노동시장 진입 시

	중위수 소득	개인소득=평균소득의 배수				
		0.5	0.75	1	1.5	2
호주	45.9	68.7	50.3	41.0	31.8	27.2
오스트리아	71.2	71.2	71.2	71.2	69.7	52.3
벨기에	37.9	50.9	38.1	37.6	29.2	21.9
캐나다	49.5	75.4	54.4	43.9	29.6	22.2
체코	49.1	71.5	53.4	44.3	32.8	26.0
덴마크	78.2	113.9	85.0	70.6	56.2	50.0
핀란드	58.2	68.7	58.2	58.2	58.2	58.2
프랑스	37.5	63.8	42.5	37.4	34.0	32.3
독일	35.5	38.6	35.5	35.5	35.5	26.7
그리스	92.9	92.9	92.9	92.9	92.9	92.9
헝가리	66.8	66.8	66.8	66.8	66.8	66.8
아이슬란드	74.8	104.6	80.4	68.4	64.6	63.1
아일랜드	38.2	65.0	43.3	32.5	21.7	16.2
이탈리아	61.0	61.0	61.0	61.0	61.0	61.0
일본	34.4	45.5	36.5	32.1	27.6	24.9
한국	64.6	88.8	69.2	59.4	49.6	40.1
룩셈부르크	79.8	89.1	81.6	77.8	74.0	72.2
멕시코	31.5	52.8	35.2	30.8	29.5	28.8
네덜란드	76.7	78.6	77.1	76.3	75.5	75.1
뉴질랜드	46.8	79.5	53.0	39.7	26.5	19.9
노르웨이	59.0	65.6	60.2	58.2	49.1	41.5
폴란드	53.3	53.3	53.3	53.3	53.3	53.3
포르투갈	54.3	70.4	54.5	54.1	53.4	52.7
슬로바키아	48.8	48.8	48.8	48.8	48.8	48.8
스페인	81.2	81.2	81.2	81.2	81.2	67.1
스웨덴	60.5	75.9	63.5	57.2	60.5	63.1
스위스	58.2	57.7	58.1	55.2	38.6	28.9
터키	65.9	67.2	65.9	65.9	65.9	65.9
영국	32.6	51.9	36.2	29.1	21.2	15.9
미국	43.6	55.2	45.8	41.2	36.5	32.1
OECD 평균	56.3	69.2	58.4	54.1	49.2	44.9
여성						
이탈리아	45.7	52.8	52.8	52.8	52.8	52.8
멕시코	31.1	52.8	35.2	29.7	28.5	27.9
폴란드	38.1	46.2	44.5	44.5	44.5	44.5
스위스	57.8	62.8	62.6	59.1	41.2	30.9
부가설명:						
프랑스						
25-60 이력	37.5	63.8	42.5	37.4	34.0	32.3
25-65 이력	51.9	63.8	51.9	51.9	47.9	45.9

■ 투자수익률 변경시의 총 소득대체율

정의와 측정

8개 OECD 회원국 국가들이 의무적 연금 소득 제도의 일부로 확정기여(DC)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확정기여 제도 하에서 연금수급액은 결정적으로 투자되는 기여금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에 달려있다. 연금모형의 기본 가정은 확정기여 연금제도의 실질 수익률을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3.5%로 정한다.

여기에서 소득대체율은 연간 실질 수익률로 1%에서 6% 사이의 다양한 저수익률과 고수익률을 가정하고 계산한다. (이 수익률들은 기본가정 근처에서 신중하게 계산된 대칭식이다.)

연간 실질투자 수익률 3.5%는 역사적, 경험적인 표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1984년부터 1996년 까지 8개 OECD 국가들의 연금기금의 실질 투자 수익률은 연간 8% 였다(OECD, 1998, 표 V.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은 확정기여형 연금의 위험조정(risk-adjusted)후 기금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Bodie, 1995). 이 보고서의 수리계산에 기초가 되는 이 무위험 이자율은 2%로 가정되어 있다. 다른 연구자들은 몇몇 국가들에서 개인별 연금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높은 관리비용을 보다 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가정해야 하는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Whitehouse, 2000 and 2001의 참고문헌 참조). 반면, 다른 분석자들은 부담한 위험의 비용을 허용하고서도 무위험이자율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주식투자 프리미엄(equty premium)"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논문이 나와 있다(특히, Blanchard, 1993, Constantinides 외 1998; Jagannathan and Kocherlakota, 1996, 그리고 Mehra and Prescott 1985 참조).

다음의 그림은 4가지의 서로 다른 소득수준을 가진 근로자의 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은 확정기여형 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퇴직소득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는 실질 수익률의 상이한 가정 아래서의 대체율을 보여준다(수평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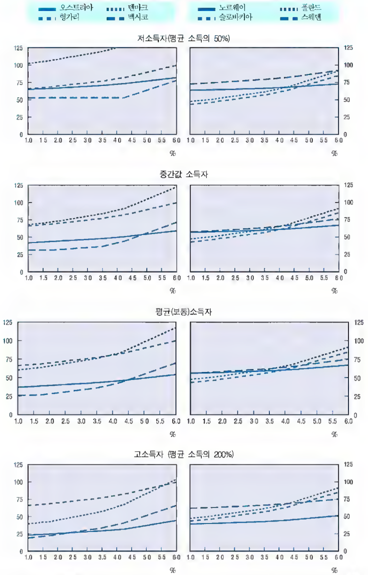
8개 국가들 중 연금수급액이 투자 수익률에 가장 인 강한 국가는 멕시코이다. 이는 다른 7개국이 상당한 규모의 공적연금제도(물론 이 제도의 연금액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를 가지고 있는 반면,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작은 최저연금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6%)이 높으면 중위수 또는 그 이상 소득의 멕시코 근로자들의 경우 수급연금액은 기본가정 수익률(3.5%)에 비해 실제로 두 배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저소득자의 경우 수익률이 4.5%이하로 떨어지면 최저연금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 수준 이상일 때만 연금 수급자들은 개인별 계정에 높은 수익을 볼 수 있기에 충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반대로 이들 개인적 확정기여 제도를 가진 8개국의 기여율 중 가장 낮은 곳은 노르웨이(소득의 2%)와 스웨덴(개인 2.5% 및 기업 2%)이고 이들 제도는 전체적인 연금급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은 총 대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덴마크,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 기여율이 9%에서 11% 사이로 보다 높기 때문에 연금액은 노르웨이나 스웨덴 보다 수익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익률을 3.5%에서 6%까지 늘리면, 모든 경우에 총 연금액이 5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호주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9%의 기여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부분에서 자산조사(means test)는 높은 수익률로부터 얻어진 확정기여 급여가 공적연금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서로 부분적으로 상쇄되고 있다.

호주, 덴마크, 멕시코의 3개국에서 수익률 가정에 따른 총 연금수급액의 민감도는 개인별 소득에 따라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는 3개국 모두 1층제도인 공적연금의 효과 때문이다.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소득자나 고소득자에 비해 수익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 모든 소득수준의 근로자들은 수익률 가정이 변동됨에 따라 모두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 연금에서 소득과 수익률에 따른 총 소득대체율



주: 수직축의 단위는 125% 소득대체율을 상한으로 한다. 덴마크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가장 높은 투자수익률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157%이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57341456784*

정의와 측정

소득대체율은 연금약정수준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이지만, 퇴직시점에서의 연금급여의 흐름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척도는 못된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연금급여가 얼마동안 지급되어야 하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결정하는 기대여명, 퇴직연령 및 연금급여의 연동기준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연금급여의 미래흐름의 총량을 측정하는 연금자산으로 알아볼 수 있다.

연금자산의 계산 시에는 2%의 단일 할인율과 각국가별 고유의 생명표를 적용한다. 비교는 예상 연금수급액(prospective pension entitlements)과 관련되기 때문에 2040년도의 사망률 추계치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연금자산은 개인별 연간총소득의 배수로 계산되고 표현된다. 여기서는 평균소득의 0.5배, 1배, 2배인 소득의 근로자들을 남녀로 분리하고 각 경우의 연금자산을 산정하여 보여주게 될 것이다.

연금자산은 각국의 의무가입 연금제도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에 상당하는 연금지급흐름을 사는데 필요한 일시금의 크기로 나타낸다. 일본을 예로 들면, 평균소득 남성의 의무가입 연금은 퇴직 시의 개별 소득의 5.7배의 가치가 있다. 평균소득 절반인 사람의 의무가입연금은 개인소득의 7.9배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의 연금제도가 저소득자들에 대한 대체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모든 소득 수준에서 최고의 연금자산을 제공한다. 평균소득자의 경우 남성은 19.3배이고 여성은 23.5배이다. 이는 OECD 평균인 남성 9.3배, 여성 10.9배의 두 배 수준이다. 평균소득자의 연금자산이 가장 낮은 곳은 멕국이고 그 다음 적은 곳이 멕시코이다.

지역적 편차를 살펴보면 평균소득자의 총 연금자산은 북유럽과 남유럽의 EU 15개국은 거의 동일하다. 지역간 평균 범위는 10.4에서 10.7이다. 멕미계 6개 OECD 국가의 평균소득자에 대한 연금자산은 평균 연간소득의 6.3배로 다른 지역에 비해 1/3가량 적다.

헝가리, 폴란드, 터키와 같이 기대여명이 짧은 국가들은 연금수급기간이 짧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급여수준이 더 높아 질 수 있다. 기대여명이 긴 스위스나 북유럽 국가들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대체율의 측정과는 달리 연금자산지표는 연금지급 여유(affordability)와 기대여명간의 연관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아래쪽에 그림과 표에서는 연금자산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 사이의 영향을 분리하여 보여준다. 왼쪽의 그림은 연금수급연령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남녀를 각각 분리하여 55세에서 70세의 남은 기대여명과 연금자산을 측정하는 연금률(annuity factor)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연금이 60세부터 지급된다면 65세 부터 급여가 지급되는 것보다 남성의 경우 17.5%, 여성의 경우 16.1% 만큼 수급액이 많아진다.

연금자산은 또한 연금연동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표에서는 기본가정인 2%의 실질 임금상승률을 사용하여 소득연동이 물가연동(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연동기준)보다 20% 더 높은 연금자산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분적으로 임금에, 부분적으로 물가에 연동하는 혼합 연동제(Mixed indexation)가 보다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앞서 기술한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들"을 볼 것). 표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사용할 때 물가연동제 보다 얼마나 더 높은 연금자산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보다 더 관대한 연동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 1/2년 더 긴 기대여명을 가지기 때문에 연금 수급기간이 더 길어 연금연동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자산은 또한 기대여명에 달려 있다. 사망률은 향후 십여 년간 더욱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2040년 사망률 기본가정을 적용할 때에 비해 현재의 사망률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연금자산은 남성의 경우 14.5%, 여성의 경우 12.1%가량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간 차이도 역시 중요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긴 기대여명을 가진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남성 12.3% 여성 8.3%가량 연금자산이 더 크다. 반대의 경우인 터키는 OECD 평균보다 14%가량 연금자산이 더 적게 산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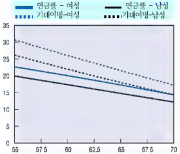
성별 및 소득계층별 총 연금자산

개인별 연간 총 소득의 배수

	남성			여성		
	0.5	1	2	0.5	1	2
호주	12.5	7.3	4.6	14.6	8.4	5.4
오스트리아	12.2	11.7	8.1	14.2	13.5	9.4
벨기에	8.8	6.2	3.6	10.2	7.2	4.2
캐나다	11.5	6.7	3.4	13.4	7.8	4.0
체코	130	81	4.8	15.3	9.5	5.6
덴마크	19.5	11.9	8.7	22.3	13.6	9.9
핀란드	11.2	10.0	10.0	13.2	11.8	11.8
프랑스	11.5	9.2	8.0	13.2	10.6	9.3
독일	7.2	7.2	5.5	8.6	8.6	6.5
그리스	14.3	14.3	14.3	16.6	16.6	16.6
헝가리	12.4	12.4	12.4	15.4	15.4	15.4
아이슬란드	17.7	11.8	11.0	20.0	13.3	12.3
아일랜드	11.5	5.8	2.9	13.7	6.9	3.4
이탈리아	10.0	10.0	9.9	10.7	10.7	10.6
일본	7.9	5.7	4.5	8.9	6.4	5.1
한국	13.9	9.3	6.3	16.6	11.1	7.5
룩셈부르크	21.8	19.3	18.0	26.6	23.5	22.0
멕시코	7.0	4.8	4.5	8.5	4.8	4.5
네덜란드	14.9	15.1	15.2	17.4	17.7	17.8
뉴질랜드	14.7	7.4	3.7	17.3	8.6	4.3
노르웨이	11.5	10.2	7.3	13.4	11.3	8.5
폴란드	8.4	8.4	8.4	8.9	8.6	8.6
포르투갈	10.5	7.9	77	12.3	9.2	90
슬로바키아	8.8	8.8	8.8	10.7	10.7	10.7
스페인	12.2	12.2	10.1	14.3	14.3	11.8
스웨덴	12.6	100	10.5	14.4	11.4	12.0
스위스	10.7	9.8	5.1	13.1	12.0	6.3
터키	9.2	9.2	9.2	10.7	10.7	10.7
영국	8.0	4.6	2.5	9.1	5.3	2.9
미국	7.9	5.9	4.6	9.2	6.8	5.3
OECD 평균	11.8	9.4	7.8	13.7	109	9.0

출처: OECD 연금모형

성 연령별 연금률과 기대여명



StatLink *http://dx.doi.org/10.1787/270401783055*

연동정책 및 기대여명에 대한 연금자산의 민감도

연동	물가	소득	80p/ 20w	67p/ 33w	50p/ 50w
남성	0	+21.7%	+3.9%	+6.5%	+10.1%
여성	0	+24.5%	+4.3%	+7.3%	+11.3%
사망률	2002	2020	2040	일본	터키
남성	−14.5%	−7.2%	0	+12.3%	−14.4%
여성	−12.1%	−5.1%	0	+8.3%	−14.1%

■ 순 연금자산

정의와 측정

순 연금자산은 퇴직자들이 그들의 연금에서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제한 연금급여흐름의 현재가치이다. 이것은 각 국가의 개인별 연간 총소득의 배수로 계산되고 표현된다. 비교 값으로 총소득을 사용하는 이유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으로부터 퇴직 시에 납부한 세금과 기여금의 효과를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연금에서 소득세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소득의 0.5배, 1배, 2배의 근로자에 대한 순 연금자산을 보여준다.

순 연금자산은 각국의 의무가입연금 제도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연금에서 개인별 소득세와 사회 보장 기여금을 제외한 것에 상당하는 연금지급흐름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일시금의 크기로 나타낸다. 그림은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한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을 비교하고 있다. 45도 각도의 선상에 있는 국가들은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이 동일한 국가들이다.

평균소득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8개 국가에서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이 동일하다. 슬로바키아와 터키의 경우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호주, 캐나다, 체코,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평균소득 근로자들은 기본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의 감면으로 인해 퇴직 시 과세될 만큼의 연금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호주와 포르투갈의 고소득자들의 경우 다소간 과세되는 공적연금을 지급 받게 됨으로써 순 연금자산이 평균소득자들의 총 연금자산보다 더 적다.

연금자산의 국가 간 순위는 순 연금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급격하게 바뀌는 몇몇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체코의 평균소득자의 경우 총 연금자산 기준으로 19번째 위치하지만, 순 연금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12위가 된다.

이들 8개국의 평균소득자들이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금과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 - 특히 5개 북유럽국가들과 오스트리아 - 의 퇴직자들은 상당한 세금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의무가입 연금 제도에서 제공하는 높은 총 대체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의 세금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제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은 총 연금자산 기준보다 순 연금자산으로 볼 때 더 낮은 순위에 위치하게 된다. 핀란드와 스웨덴을 예로 들면, 남성 평균소득자들의 총 연금자산의 순위가 공동 8위였지만 순 연금자산으로 하면 각각 18위와 20위로 떨어지게 된다. 총 연금자산을 기준으로 북유럽국가들은 6개 영미계 국가들보다 70%가 더 높지만 순 연금자산으로 비교하면 차이는 약 30%로 축소된다.

그러나 평균소득자들의 순위는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룩셈부르크가 또다시 모든 수준의 소득에서 가장 높은 순 연금자산을 가진다. 남성의 경우 평균소득자의 순 연금자산이 가장 낮은 곳은 영국이고 다음은 멕시코인데, 개인별 연간 소득의 약 5배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두 나라가 역전되어 멕시코가 가장 낮다.

저소득자들을 살펴보면, OECD 평균 순 연금자산이 개인별 연간 소득의 0.9배로 총 연금자산보다 낮다. 이것은 10개의 OECD 국가들에서 저소득자들이 수급하는 공적연금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과 그리스의 경우 이들 근로자들은 연금소득에서 사회보장기여금만을 납부하지만, 다른 7개 국가들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도 세금과 기여금 모두를 납부한다. 평균소득자들의 경우 총 연금자산과 순 연금자산의 차이가 약간 더 큰데 개인별 연간소득의 1.3배이고 두 배의 남성 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더 커서 1.6배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과 기여금의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저소득자들(평균소득의 50%)의 경우 6.6%이고 평균소득자들은 11.6%, 고소득자들(평균소득의 200%)은 16.4%이다.

성별 및 소득계층별 순 연금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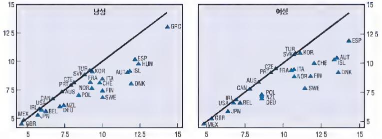
개인별 연간 총소득의 배수

	남성			여성		
	0.5	1	2	0.5	1	2
호주	12.5	7.3	4.3	14.6	8.4	5.0
오스트리아	11.0	9.0	5.7	12.8	10.4	6.6
벨기에	8.8	5.6	3.1	10.2	6.5	3.6
캐나다	11.5	6.6	3.3	13.4	7.7	4.0
체코	13.0	8.1	4.8	15.3	9.5	5.6
덴마크	13.4	8.0	5.3	15.4	9.2	6.1
핀란드	9.6	7.4	6.6	11.4	8.8	7.8
프랑스	10.8	8.1	6.6	12.4	9.3	7.6
독일	6.2	6.3	4.2	7.9	7.0	4.9
그리스	14.3	13.0	11.1	16.5	15.1	12.8
헝가리	12.4	10.8	8.9	15.3	13.4	11.0
아이슬란드	14.7	9.1	7.6	16.6	10.2	8.6
아일랜드	11.5	5.8	2.9	13.7	6.9	3.4
이탈리아	10.0	8.4	7.4	10.7	9.4	8.2
일본	7.2	5.3	4.0	8.2	5.9	4.5
한국	13.7	9.1	6.0	16.3	10.8	7.1
룩셈부르크	19.6	15.6	12.7	24.0	19.1	15.5
멕시코	7.0	4.8	4.5	8.5	4.8	4.5
네덜란드	13.5	12.3	10.5	15.8	14.3	12.3
뉴질랜드	12.2	6.1	3.0	14.3	7.1	3.6
노르웨이	10.1	8.3	5.6	11.8	9.7	6.6
폴란드	7.2	7.0	6.9	7.9	7.3	7.1
포르투갈	10.5	7.9	7.4	12.3	9.2	8.7
슬로바키아	8.8	8.8	8.8	10.7	10.7	10.7
스페인	11.0	10.1	7.9	12.9	11.9	9.3
스웨덴	9.5	7.2	6.8	10.9	8.2	7.8
스위스	10.1	8.1	4.2	12.4	9.9	5.2
터키	9.2	9.2	9.2	10.7	10.7	10.7
영국	7.9	4.5	2.5	9.1	5.2	2.8
미국	7.9	5.7	4.3	9.2	6.6	5.0
OECD 평균	10.9	8.1	6.2	12.7	9.4	7.2

출처: OECD 연금모형

성별 총 연금자산 *대* 순 연금자산 (평균소득자 기준)

순 연금자산 (개인소득의 배수)　　순 연금자산 (개인소득의 배수)



총 연금자산 (개인소득의 배수)　　총 연금자산 (개인소득의 배수)

주: 두 그림의 단위에서 연금자산은 개인별 소득의 15배를 상한으로 정했는데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두 그림에서 모두 제외되었고 그리스와 헝가리는 여성 그림에서 제외되었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237612383126*

정의와 측정

OECD 국가들의 연금제도는 특히 제도의 보험적 역할과 재분배적 역할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는 관점에서 다양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퇴직 전 소득과 퇴직 후 연금급여액 간의 연계성에 대한 강도는 여기서는 누진성 지수(progressivity index)라는 요약지표로 측정한다. 이 지수는 순수 기초보장 제도(pure basic scheme)인 경우 100%로, 순수 보험제도(pure insurance scheme)인 경우 0으로 점수화하는 식으로 고안되었다. 계산은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에 근거한다. 지니 계수가 높을수록 분포는 불평등하다. 산술적으로 보면, 누진성 지수는 100에서 연금수급권의 지니 계수를 뺀 다음 소득의 지니 계수(백분율로 표시)로 나눈 비율로 산정된다. 각각의 경우에 지니 계수는 소득분포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계산한다. 계산은 국가별 자료(구할 수 있는 경우)와 OECD 평균소득분포를 가지고 수행하였다.

"순수" 기초연금제도("pure" basic pension system)는 모든 연금수급자들의 과거 소득 이력이나 다른 소득원을 무시하고 동일한 정률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흔히 "데모그란트(demogrant)" 또는 "시민연금(citizen's pension)"이라고 한다. 상대적인 연금액이 소득과 무관하며, 대체율은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급여설계에 있어 정반대의 경우는 "순수보험(pure insurance)" 제도인데 모든 근로자들의 퇴직 시에 동일한 대체율을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제도가 기여율을 모든 근로자의 소득에 정률로 설정할 경우 이러한 순수보험모형이 된다. 소득, 재직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급률을 보장하는 소득비례제도 역시 순수보험모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벤치마크 - 순수 보험제도와 순수 기초제도- 가 국가간 연금급여 산식의 비교를 위해 마련된 "누진성 지수(index of progressivity)"의 기본을 이룬다. (이는 Musgrave와 Thin이 1948년에 고안한 누진효과 측정에 기초한 것이다.) 전자는 최고로 누진적인 반면, 후자는 대체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누진성이 없다. 높은 점수가 꼭 "좋은 것"일 필요가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높은 점수를 가진 국가는 낮은 점수의 국가들과는 단순히 다른 목적을 가질 뿐이다.

표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열은 총 연금급여의 지니 계수의 결과를 보여준다. 두 번째 열은 급여산식의 누진성의 지수를 보여준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처럼 순수 기초제도하에서의 지수는 물론 100%이다. 높은 누진 연금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는 호주, 캐나다, 체코 및 영국으로 지수가 65% 이상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퇴직소득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표 및 기초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는 아주 제한적으로 누진적인, 거의 완전한 비례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모두 누진성 지수가 10% 이하이다. 이 집단에는 명목계정연금제도를 가진 두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기여와 급여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속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누진성 지수는 36.9%이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는 상당하다. 영미계 국가들의 평균 지수는 82.7%로 이들 국가들의 제도가 상당히 누진적인 반면, 남유럽 국가들의 평균 지수는 10.2%로 소득과 연금급여 사이에 상당히 강한 연계관계를 보여준다.

연금수급액의 불평등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급여산식의 차이점이나 특정 국가에서 소득의 불평등성을 살펴야 하는데, 표에서는 국가별 소득분포 및 OECD의 평균소득분포에 기초한 결과를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은 선택된 국가들의 소득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OECD 평균소득분포와 개별국가의 소득분포를 사용하면서 자료가 완전한 18개 OECD 국가의 평균 누진성 지수는 약 37%이다. OECD 평균소득분포와 상당히 다른 소득분포의 국가 안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소득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인 26.9%보다 높은 32.7%인데, 이 때문에 개별 국가 자료를 사용하면 누진성 지수는 10%가량 더 높아진다. 벨기에는 OECD가 자료를 가진 18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공평한 소득분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벨기에의 연금제도는 국가별 자료를 사용하여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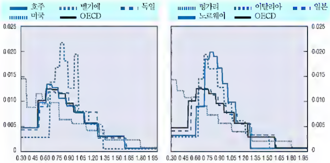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금급여산식의 누진성 지수는 연금제도에서 의무가입 연금부분만을 측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몇몇 국가들은 광범위한 사적 기업제도 및 개인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 제도를 고려하면 연금수급자의 소득분포는 더 넓어지게 된다.

연금 급여액 및 소득의 지니 계수
OECD 평균과 국가별 소득분포 자료

	OECD 평균분포		국가별 소득분포		
	연금지니계수	누진성 지수	연금지니계수	누진성 지수	지니 임금
호주	7.3	73.1	7.4	72.8	27.1
오스트리아	18.9	30.4			
벨기에	11.2	58.8	9.9	54.1	20.7
캐나다	3.7	86.6			
체코	8.7	68.0	8.7	66.6	25.5
덴마크	11.1	59.3			
핀란드	25.1	7.6	22.4	6.7	23.6
프랑스	20.5	24.6			
독일	20.0	26.7	19.5	25.7	26.3
그리스	26.5	2.6			
헝가리	26.9	1.3	33.4	0.6	33.5
아이슬란드	18.0	33.9			
아일랜드	0.0	100.0	0.0	100.0	29.2
이탈리아	26.4	3.1	22.8	3.7	23.1
일본	14.4	46.9	14.4	45.6	26.4
한국	12.3	54.8	14.2	51.9	29.3
룩셈부르크	22.2	18.6			
멕시코	19.0	30.3			
네덜란드	26.9	0.0	25.9	0.0	25.1
뉴질랜드	0.0	100.0	27.7		
노르웨이	17.1	37.4	13.9	36.9	21.2
폴란드	25.4	6.5	28.8	5.6	30.2
포르투갈	22.1	18.8			
슬로바키아	26.5	2.7			
스페인	22.1	18.8	25.8	16.9	30.8
스웨덴	23.7	12.9	20.7	10.2	22.7
스위스	12.7	53.3			
터키	25.1	7.8			
영국	5.1	81.1	5.1	82.3	28.9
미국	16.1	40.9	16.1	51.0	32.7
OECD 평균	17.2	36.9			
OECD 18개국	17.0	37.5	17.0	37.1	26.9

주: OECD 18은 국가별 소득분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18개 국가를 말함
출처: OECD 연금모형, OECD 소득분포 자료

소득분포 : OECD 평균 및 특정 국가



출처: OECD 소득분포 자료

StatLink *http://dx.doi.org/10.1787/237612383126*

정의와 측정

개인별 연금급여액과 소득간의 연관성은 총 개인별 연금을 총 경제전반의 평균소득(대체율 결과에서 처럼 개인별 소득이 아니라)으로 나눈, 상대연금수준(relative pension level)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것은 수급자의 연금액이 각국의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연금의 적정성(adequacy)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개인별 대체율이 아주 높다고 해도 수급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에 비하면 아주 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전반 평균소득의 50% 소득밖에 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의 대체율이 100%라고 할지라도 그 급여는 경제 전반 평균소득의 50%에 불과한 금액이 된다. 평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과 상대연금수준은 동일하다

여기서는 각국의 개인별 퇴직 전 소득과 연금 급여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연금수준을 사용한다. 평균소득의 0.5배에서 2배 사이에 있는 개인별 소득의 상대연금 수준을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OECD 회원국의 상대연금 수준을 수직축에, 개인별 퇴직 전 소득을 수평축에 보여주고 있다. 국가들은 각국의 연금 급여가 개인별 소득에 연계되는 (또는 연계되지 않는) 정도에 따라 집단으로 묶어 놓았다. 분류는 OECD 평균소득분포에 의해 가중된 소득범위 간 연금 수준 분포의 지니계수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계산 방법과 결과는 연금급여산식의 누진성에 대한 이전 항목에서 기술하였다.

첫 번째 5개국(패널 A)은 연금 급여액과 퇴직 전 소득간의 연관성이 적거나 없는 국가들이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연금 급여는 완전히 정률이다. 캐나다의 상대연금 수준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저소득자들의 경우 37%이고 평균 및 그 이상의 소득자들은 44%이다. 캐나다에서는 소득비례 연금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목표 소득대체율이 아주 낮고, 상한선이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득비례 연금 제도로 부터의 추가 소득이 있으면 자원조사에 의한 급여(resource-tested benefit)가 지급되지 않는다. 영국의 소득비례연금제도는 상당히 누진적인 산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연금제도도 있다. 호주는 상대 연금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평한데 이는 주로 자산조사(means-tested)에 의한 공적연금 제도의 결과이다. 또한 사용자가 확정기여 제도에 기여해야만 하는 소득에 제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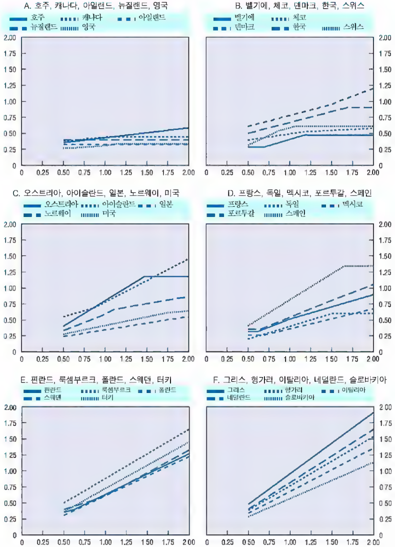
분류의 정반대에는 연금 급여와 퇴직 전 소득과의 연관성이 아주 강한 5개국이 있다(패널 F). 네덜란드의 경우 준 강제(quasi-mandatory) 기업연금제도의 적용소득에 상한선이 없다.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는 적용소득의 상한이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의 3배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해졌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최저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그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좁은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상대연금 수준 곡선이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다.

패널 E의 5개국은 패널 F의 국가들보다 퇴직 전 소득과 연금사이의 연관성이 약간 더 약하다. 이것은 저소득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혜택 때문이다.

나머지 절반의 OECD 국가들은 개인의 소득과 연금간의 연관성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와 연관성이 강하거나 아주 강한 경우의 중간에 해당한다. 패널 B와 C의 10개국은 맨 처음 집단의 국가들보다 연금과 퇴직 전 소득의 연관성이 더 강하지만 이들의 연금제도는 패널 F의 5개국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누진적인 산식을 가지고 있다. 체코, 노르웨이,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저소득자들을 위한 재분배는 평균 또는 고소득자들보다 가난한 근로자들의 퇴직 전 소득을 대체해주는 누진적인 급여 산식에 의한 결과이다. 아이슬란드는 목표 퇴직소득 제도를 통해서, 덴마크는 상당한 기초 및 목표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패널 D의 5개국은 연금 급여액과 퇴직 전 소득의 연관성 측면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저소득 범위에는 재분배적 연금 제도- 최저 및 목표제도를, 고소득 수준에는 강력한 소득-급여연계를 실시한다. 독일의 경우 최저연금제도는 없지만 가난한 퇴직자들에게 일반적인 사회부조제도를 통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퇴직 전 소득과 연금수급액의 연계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의 비율로서의 총 연금수급액



출처: OECD 연금모형

StatLink *http://dx.doi.org/10.1787/852105726472*

■ 가중평균: 연금수준과 연금자산

정의와 측정

소득계층별 대체율과 연금수준에 대한 계산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소득 수준에 있는 근로자들의 결과를 합친 각국 연금제도의 *종합적인 지표들(composit indicators)*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가중평균 연금수준(weighted average pension level)*과 *가중평균 연금자산(weighted average pension wealth)*이다. 이 지표들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의 0.3배에서 3배의 소득(결과 표에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을 가진 사람들의 연금급여액 계산으로 만들어진다.

각 개인별 소득의 수준은 소득분포의 중요성을 기초로 가중되어진다. 계산은 OECD 18개국의 자료에 기반한 평균소득분포를 사용한다. 소득분포는 편중되어 있다. 분포도의 최빈 점(또는 최고점)은 평균소득의 2/3 정도에 있다. 중위수값(근로자의 절반이 위쪽과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소득수준)은 대체적으로 평균소득의 80%와 85% 사이에 있다. 근로자의 2/3가 평균이하의 소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자들이 많고 고소득자들은 더 적으므로 지표의 계산에서는 고소득자들보다 비해 저소득자에게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중평균 연금수준(weighted average pension level)*의 측정은 소득분포와 연금 지급액의 추계를 결합하여 산정한다. 상대연금수준은 소득분포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소득범위의 개인소득으로 평균한다. 그 결과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의 백분율로 표기한 연금수급액의 가중평균이다.

이 지표는 표의 첫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은 57.5%이다. 여기에는 많은 국가 간의 차이가 다시 한 번 나타난다. 7개국의 공적연금제도은 평균소득의 40% 이하의 연금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는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이다. 그리스와 룩셈부르크는 이 분포의 다른 반대편에 있다. 이들의 가중평균 연금수준은 각각 95%와 87%이다.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 5개 국가는 평균연금수준이 75% 이상이다. 다음으로 연금수준이 70% 이하인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터키이다.

같은 가중치를 연금자산 측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표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은 남녀를 분리한 각각의 가중평균 연금자산을 표시하고 있다. 주어진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더 길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연금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의 마지막 열은 평균 연금자산의 규모를 2004년의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미화(USD)로 환산한 것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룩셈부르크가 최고의 연금자산을 가지는데 남성의 경우 평균소득의 19배이고 여성은 23배이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이는 남성의 경우 92만불(USD), 여성의 경우 110만불(USD)에 해당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남성 9.2배, 여성 10.7배이다. 네덜란드와 그리스가 각각 2위와 3위에 해당한다.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스페인의 연금자산은 평균소득의 11-12배의 근처에 가깝게 몰려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연금자산은 대략 미화 50만불 정도이다. 이 종합적 측정방법에 의하면, 가장 약한 연금제도는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영국 및 미국의 제도인데, 연금자산이 평균임금의 약 6배 수준으로 OECD 국가평균의 2/3 수준이다.

폴란드, 터키와 같이 기대여명이 짧은 국가들은 각각 8.2배, 9.1배로 보다 낮은 연금자산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평균 연금수준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주어진 기대여명에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연금자산을 제공한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연금자산 수준은 다른 보통의 OECD 국가들보다 이른 퇴직연령으로 인해 다소 높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가중평균 연금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연금자산은 평균수준인데, 이는 낮은 연금수급연령과 높은 기대여명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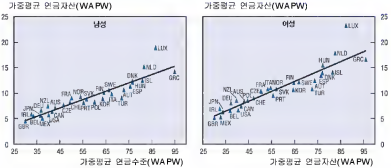
가중평균 연금수준과 연금자산

연금 수준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의 백분율, 연금자산은 경제 전반 평균소득의 배수로 표현됨, 미국 달러화 기준

	평균 연금 수준	평균연금 자산		평균 연금 자산 (USD)	
	남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호주	42.9	7.2	8.4	259,000	302,000
오스트리아	72.8	10.6	12.4	433,000	551,000
벨기에	36.7	5.6	6.5	248,000	318,000
캐나다	41.6	6.4	7.4	192,000	233,000
체코	46.7	7.7	9.1	63,000	77,000
덴마크	76.8	12.1	13.9	640,000	719,000
핀란드	64.1	10.1	12.0	396,000	462,000
프랑스	50.1	9.0	10.4	330,000	389,000
독일	36.9	6.7	8.0	342,000	439,000
그리스	95.1	14.2	16.6	306,000	358,000
헝가리	76.5	12.4	15.4	104,000	129,000
아이슬란드	81.0	12.5	14.1	493,000	525,000
아일랜드	32.5	5.8	6.9	217,000	259,000
이탈리아	67.7	9.9	10.8	271,000	293,000
일본	33.5	5.5	6.3	251,000	293,000
한국	63.8	8.9	10.7	213,000	265,000
룩셈부르크	86.7	18.9	23.3	920,000	1,144,000
멕시코	37.3	5.0	5.3	34,000	32,000
네덜란드	81.8	15.1	17.8	695,000	814,000
뉴질랜드	39.7	7.4	8.6	193,000	225,000
노르웨이	54.0	9.3	11.0	505,000	581,000
폴란드	60.1	8.2	8.6	66,000	69,000
포르투갈	55.4	8.1	9.5	131,000	148,000
슬로바키아	56.5	8.8	10.8	55,000	67,000
스페인	75.6	11.3	13.4	278,000	352,000
스웨덴	66.3	10.6	12.2	434,000	467,000
스위스	49.4	8.3	10.3	472,000	682,000
터키	72.0	9.1	10.8	89,080	105,000
영국	30.0	4.5	5.2	224,000	264,000
미국	40.2	5.7	6.7	173,000	206,000
OECD 평균	57.5	9.2	10.7	301,000	359,000

출처: OECD 연금모형, OECD 소득분포 데이터베이스

가중평균 비교 : 성별에 따른 연금 수준 대 연금자산



출처: OECD 연금모형, OECD 소득분포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10503277546*

정의와 측정

연금소득원의 구성은 위에서 방금 설명한 가중평균 연금자산의 지표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가중치는 소득분포에 기초한다. 각 연금의 구성요소가 의무 제도로부터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잠재적인 자원 이전에 기여도는 각 요소로부터의 가중평균 연금자산으로 계산된다. 각 연금 제도의 구성요소의 연금 자금에 대한 기여는 전체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왜냐하면 몇몇 국가에서 가중평균 연금자산은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며 (예를들면, 자원 조사 제도(resource-tested programme)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전 경력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이 측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소는 빈칸으로 남는다.

13개 국가에 기초연금제도가 있지안 노령자에 대한 자원이전의 관점에서 보연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기초연금안 있으므로 이 제도의 비중이 100%이다. 한국과 영국의 경우 기초연금이 연금수급권자들에 대한 전체 자원이전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기초연금은 자원이전의 40%, 캐나다와 덴마크, 노르웨이의 기초연금은 전체 연금약속의 1/3을 차지한다.

자원조사제도 또한 그 중요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호주는 이런 종류의 급여가 거의 전체 연금소득원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호주의 공적연금은 자산조사제도(means tested)이지안 자산조사는 현재 일부 공적연금을 받는 노령자들의 절반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도 자원조사급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원조사 급여가 현재 노령자의 소득제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안, 장기적으로는 그 역할은 공적비례연금이 보다 누진적인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이다(이는 최저 크레딧에 기초한 최저연금의 규모에 알 수 있음). 또한 모형에서는 미래에도 기초연금이 소득에 연동하여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안약 기초연금이 물가와 연동된다연 그 역할의 많은 부분이 자원조사급여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벨기에와 영국이 최저연금의 역할이 가장 큰 국가들인데, 두 나라 모두 최저크레딧(minimum credits)제도를 두고 있다.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의 최저연금안이 전체 연금소득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완전경력 근로자들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자원조사 및 최저연금제도 등 모든 제1층 제도들이 불완전한 기여이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가입이력 분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 역할을 예측하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위쪽의 그림은 전체 퇴직연금소득원에서 제1층과 제2층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제2층 제도나 의무가입 비례연금이 없으며, 영국은 대부분의 소득비례제도가 최저 크레딧과 관련된 급여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정반대쪽으로 10개 국가에서 제2층 제도가 완전경력 근로자의 연금소득원에서 99%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한다. 이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및 터키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제 2층의 목표대체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스위스와 미국은 공적제도의 급여 산식이 누진적인데, 이는 다른 국가들에서 제1층 제도가 수행하는 재분배적 역할을 상당부분 제2층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층 제도가 있는 국가들 중 8개 국가가 확정기여(DC)제도를 두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노령자에 대한 자원이전의 대부분을 이 확정기여제도가 맡고 있으며, 호주,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동제도가 전체 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외에 다른 모든 제도들은 소득비례제도 이거나 확정급여(DB), 명목계정 또는 포인트제도이다.

아래 그림은 제1층 및 제2층 제도를 통틀어 완전경력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의무가입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모두 11개 국가에서 민간부분 연금제도(private sector)를 의무가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제도가 평균 전체 퇴직소득 51%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적연금의 역할 비중은 11%(노르웨이)에서 84%(멕시코)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물론 다른 국가들의 경우 임의가입 개인연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에 관해서는 제2부의 개인연금에 대한 특별 장을 볼 것).

퇴직연금소득원의 구조

가중평균 연금자산에 대한 각 연금제도층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백분율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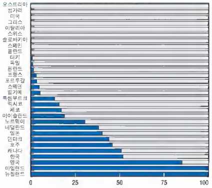
	제1층			제2층			합
	지원조사	기초	최저	공적	사적 확정 급여	사적 확정 기여	
호주	45.8					54.2	100.0
오스트리아				100.0			100.0
벨기에			5.41	94.6			100.0
캐나다	16.5	34.5		49.0			100.0
체코		17.2		82.8			100.0
덴마크	12.5	31.5				56.02	100.0
핀란드			1.5	98.5			100.0
프랑스	1.3		1.9	96.83			100.0
독일	1.1			98.9			100.0
그리스			0.1	99.94			100.0
헝가리				65.9		34.1	100.0
아이슬란드	5.7	13.3			81		100.0
아일랜드		100.0					100.0
이탈리아	0.1			99.9			100.0
일본		40.2		59.8			100.0
한국		51.95		48.1			100.0
룩셈부르크		13.36	0.1	86.6			100.0
멕시코		11.87	4.3			83.9	100.0
네덜란드		38.2			61.8		100.0
뉴질랜드		100.0					100.0
노르웨이		30.1	0.4	58.5		11.1	100.0
폴란드			0.3	48.8		50.9	100.0
포르투갈			3.5	96.5			100.0
슬로바키아			0.2	45.3		54.5	100.0
스페인			0.2	99.8			100.0
스웨덴			4.7	49	26.4	19.98	100.0
스위스	0.1			68.4	31.5		100.0
터키			0.8	99.2			100.0
영국	0.5	50.8	33.89	15			100.0
미국				100.0			100.0
OECD	2.8	1.9	17.8	58.7	6.7	12.2	100.0

1. 벨기에 최저연금제도 및 최저 크레딧 모두 포함
2. 덴마크: 사적 확정기여(DC)제도에는 준강제 기업연금(51.0%)과 특별연금(5.0%)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3. 프랑스 공적 연금제도에는 공적연금(59.3%)과 보완적인 기업연금(37.5%) 모두 포함
4. 그리스 공적연금은 주된 요소(73.0%)와 보충적인 요소(26.9%)로 이루어짐
5. 한국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의 일부로 개인별 소득보다는 평균소득 부분에서 나타남
6. 룩셈부르크 기초연금부분에 연말수당(end-of-the-year allowance)이 포함되어 있음.
7. 멕시코: 기초 요소는 확정기여 계정에 대한 정액의 정부 기여금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는 1997년부터 실질 최저임금의 5.5%에 상당한 금액임.
8. 스웨덴 사적 확정기여연금에는 의무가입의 개인연금(premium pension, 11.2%)과 확정기여 기업연금(8.7%)을 포함
9. 영국 최저연금은 공적소득비례제도의 최저크레딧을 의미

출처: OECD 연금모형

제1층, 재분배적 제도와 제2층, 보험적 제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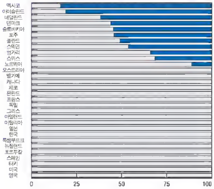
가중평균 연금자산의 백분율



StatLink *http://dx.doi.org/10.1787/313333516308*

의무가입 공적 연금 및 개인연금의 비율

가중평균 연금자산의 백분율



StatLink *http //dx doi org/10 1787/758801064205*

참고문헌

Blanchard, O.J. (1993), "The Vanishing Equity Premium", in R. O'Brien (ed.), *Finance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Vol. 7, Oxford University Press.

Bodie, Z.(1995), "On the Risk of Stocks in the Long Run", *Financial Analysts' Journal*, May-June, pp. 18-22.

Constantinides, G., J. Donaldson and R. Mehra (1998), "Junior Can't Borrow A New Perspective on the Equity Premium Puzzle", Working Paper No. 661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Jogannathan, R. and N. Kocherlakota (1996), "Why Should Older People Invest Less in Stocks than Younger Peopl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Vol. 20, No. 3, Summer.

Mehra, R. and E.C. Prescott (1985), "The Equity Premium: A Puzzl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5, pp. 145-161.

Musgrave, R.A and T. Thin (1948), "Income Tax Progression 1924-48",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6, pp. 498-514, December

OECD (1998),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Paris.

OECD (2004),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of Private Pensions*, Paris.

OECD (2005a), *Pensions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OECD (2005b),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2006), *Live Longer, Work Longer*, Paris

Whitehouse, E.R. (2000), "Administrative Charges for Funded Pensions: Measurement Concepts,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ssessment",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Studies*, Vol.120, No.3, pp. 311-361.

Whitehouse, E.R. (2001), "Administrative Charges for Funded Pensions: Comparison and Assessment of 13 Countries", *Private Pension Systems: Administrative Costs and Reforms, Private Pensions Series*, Vol.3, OECD, Paris.

제 2 부

연금개혁과 개인연금

제2부에서는 연금개혁과 개인연금에 대한 특별한 2개의 장을 제시하고 있다. 두개의 장 모두 국가적 논쟁이 되는 연금 정책의 중심적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OECD 연금모형을 사용한다.

*한눈에 보는 연금*의 기본 구조는 현재의 근로자들의 미래 연금수급권에 대한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십 년간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연금제도와 퇴직제도에 대한 개혁적 노력이 있었다. 첫 번째 특별한 장에서는 어떤 국가들이 어떠한 개혁을 했고 이것이 향후 연금급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수많은 개혁들은 연금제도에서 사적 부분의 역할을 증가시켜왔다. 두 번째 특별 장에서는 복잡한 개인연금 규정들의 범위를 밝히고 퇴직 이후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저축 노력들을 계량화한다.





1. 지난 10년간의 연금개혁 : 미래 급여에 미친 영향

지난 10여 년간 절반이 넘는 OECD 국가들이 각국의 연금제도의 구조에 변화를 주기위한 광범위한 개혁에 착수했었고 미래의 연금수급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작은 변화들을 꾀하여 왔다.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OECD 국가들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연금개혁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먼저 개혁이 방법의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부터 다룬다. 그 다음, 이러한 개혁들이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그 영향은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비교지표를 사용한 OECD 연금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공공 재정(public finance)에 연금개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1], 예를 들어 자산이나 소득분포에 퇴직소득 제도의 변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분명하게 고려한 연구는 매우 적다.[2]

네 가지 중요한 연금개혁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 째, 재정적 영향*(financial impact)*이다.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는 과거 세대와 비교해서 향후 급여가 얼마만큼 작아지게 될 것인가? 둘 째, 개혁의 분배적 영향*(distributional impact)*이다. 연금개혁으로 인해 얼마나 다른 그룹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셋 째, 연금소득원의 구성*(structure of pension system)*이다. 연금 제도에서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의 책임을 어떻게 재조정 할 것인가? 네 번째 연금개혁의 동기는 노동 장려*(work incentives)*의 증진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더 오래 일 하도록 장려할 것 인가 이다.

1.1.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 개관

표 II.1.1은 1990년대 이후 퇴직소득 제도의 주요한 개혁의 요소들을 5개의 중요 범주로 유형화하여 요약한 것이다. 17개 OECD 국가들이 이 기간에 일반적인 완전 경력 근로자의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나머지 13개국은 보다 적은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주었는데 예를 들면, 여성만의 연금수급연령 변화라든지, 조기 또는 늦은 퇴직에 대한 수급액의 조정 등이 그것이다. 아래의 1.2 절에서 17개 국가들 중 16개 국가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경험적 결과를 제시한다. 호주의 의무적 확정기여 연금의 도입에 대한 중요한 개혁은 분석하지 않았다[3].

연금 수급연령의 연장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남성 연금 수급연령은 65세이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에서 연금수급연령은 이미 67세가 되었거나 67세로 늘어나는 중이다. 덴마크, 독일, 영국은 수급연령을 연장하는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프랑스는 연금 수급연령이 60세로 가장 낮은 회원국이다.

호주, 벨기에, 포르투갈, 영국 등 몇몇 국가들이 여성과 남성의 연금수급연령을 동일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1. 지난 10년간의 연금개혁: 미래 급여에 미친 영향

표 II 1.1. 199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국가 퇴직 소득 개혁

	연금수급연령	퇴직유인효과 조정	급여산식의 연수 또는 자격요건 변경	기대여명 및/또는 재정안정성 연계	확정기여 제도	기타
호주	여성의 연금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개인연금의 대상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물림	공적연금의 유예에 따른 새로운 일시금 삼여		확정기여 제도의 연금 산정을 통합	공적연금에 추가로 의무적 확정기여제도 도입	공적 연금의 소득조사에서 더 낮은 환수율을 적용
오스트리아	조기 퇴직연령을 1.5년 연장 연금지급연령 62세에서 65세 사이 여성의 연금 수급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함	조기 퇴직에 대한 급여 삭감제의 입 및 조건의 증가, 조기 퇴직을 더 까다롭게 조정함	40년 중 최고 15년	재정안정성 요소의 도입을 논의중		연금지급률을 감액함, 고액의 연금에 보다 덜 관대한 연동을 적용
벨기에	여성의 연금 수급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함	62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연금 추가지급 근로기간과 신용기간을 다르게 계산함 일반적 연금수급연령에 사적 연금만 있을 경우 회계상 추가이득을 줌	60세의 조기 퇴직에 대해 기여 조건을 엄격하게 함			
캐나다						적립식 소득비례제도
체코	정상연금수급연령을 63세로 연장	조기/만기 퇴직에 따른 증액과 감액 변경				
덴마크	정상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			일반적인 연금연령을 기대여명과 연계함		
핀란드		63-67세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금률을 인상함	생애 평균 중 최종 10년	기대여명 배수 (2010년부터)		국가 연금 소득 조사의 기본 부분, 과거 소득의 더 높은 재평가 및 연금 지급의 더 낮은 연동률
프랑스		공적 연금 및 기업연금에서 조기/만기 퇴직에 대한 연금 급여 조정을 변경함	최저 기여기간 연장, 공적연금의 소득 산정을 최고 10년의 기간에서 최고 25년의 기간으로 변경	기대여명의 변화에 따라 최저 기여기간을 더 연장함		목표 최적 소득은 최저 임금의 85%, 재평가는 현재 두 가지 제도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물가에 의함
독일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감액		제도의 의존 비율이 악화되기 전으로 재평가 및 연동률을 삭감함	세금우대의 임의적, 확정기여제도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우대를 없애는 단계
그리스	연금수급연령을 58세에서 65세로 연장					

표 II 1.1. 199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국가 퇴직 소득 개혁 (계속)

	연금수급연령	퇴직유인효과 조정	급여산식의 연수 또는 자격요건 변경	기대여명 및/또는 재정안정성 연계	확정기여 제도	기타
헝가리	여성 55세, 남성 60세의 연금 수급연령을 모두 점진적으로 62세로 연장	연금지급률은 경력 초기 연도에 더 높다기 보다는 일률적으로 적용	순소득이 아닌 총 소득에 의한 연금 산정	확정기여 제도의 연금 산정을 통합	확정기여제도: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 기존 근로자는 임의적	최저 연금제는 폐지될 예정. 연금지급시의 연동은 보다 덜 관대해짐. 연금은 소득세의 대상이됨
아이슬란드	1990년 이래 특별한 변경 없음					
아일랜드					임의 퇴직저축에 유인효과제공	적립식 공적연금 기초연금의 확대
이탈리아	정상연금 수급연령을 남성 60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연장. 35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남성의 조기연금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명목연금률 산정에 의해 조기 퇴직 급여를 조정	장기 근무 연금에 대한 자격연수가 37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됨	명목 연금 산정을 통합		확정급여제에서 명목계정으로. 고액의 연금에 보다 덜 관대한 연동적용
일본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연금에 해당하는 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늘어남	부양비의 예상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 조정		연금 지급율 감소
한국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룩셈부르크	1990년 이래 특별한 변경 없음					
멕시코					의무적 사적 확정기여제도가 공적 확정급여제도를 대체	
네덜란드		조기 퇴직제도의 폐지를 계획중임	많은 기업연금제도들이 생애 전반의 최종 소득에서 평균소득으로			
뉴질랜드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자동등록제 및 유인효과 제도가 있는 임의 확정기여 연금제	적립식 공적연금
노르웨이					의무적인 사용자의 확정기여형 기여금 납부	적립식 공적연금
폴란드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 대한 조기 퇴직제도를 폐지		최종 20년 중 최고의 연속적 10년에서 생애전반의 평균 소득으로	공적 제도의 명목연금 산정 및 확정기여 제도의 연금 산정을 통합	신규 가입자 및 30세 미만 근로자는 확정 기여제도 의무가입	기초 연금제 폐지 확정급여제에서 명목계정으로
포르투갈	여성의 연금 수급 가능연령을 65세로 남성과 동일하게 함	만기 퇴직에 대한 증액 및 조기 퇴직에 감액을 도입	최종 15년 중 최고의 10년에서 생애전반의 평균 소득으로	급여에 기대여명 조정		고액의 연금에 보다 덜 관대한 연동적용
슬로바키아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62세로 연장		최종 10년 중 최고 5년에서 생애전반의 평균 소득으로	확정기여 제도의 연금 산정을 통합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 기존 근로자는 임의적인 확정기여제도	확정급여제도에서 점수제도로
스페인		만기 퇴직에 약간의 증액을 도입				

표 Ⅱ 1.1. 199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국가 퇴직 소득 개혁 (계속)

	연금수급연령	퇴직유인효과 조정	급여산식의 연수 또는 자격요건 변경	기대여명 및/또는 재정안정성 연계	확정기여 제도	기타
스웨덴			최고 15년에서 생애전반의 평균으로 (공적, 소득비례 제도)	명목 연금 및 확정기여 연금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명목 계정에 안정성 조정 있음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기여제도가 의무적임. 기업 연금이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기여제도로 전환됨	확정급여제도에서 명목 계정으로.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세 특권을 폐지
스위스	여성의 연금 수급연령이 62세에서 64세로 연장됨					필요한 이자율 및 의무적 기업 연금제도의 연금지급률을 낮춤
터키	연금수급 연령이 65세로 연장됨					연금지급률을 낮춤
영국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과 수급을 위한 신용보장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남	연금 유예 요청에 대한 증액이 늘어남. 일시금 옵션이 첨가됨			사용자는 확정기여 연금("이해관계인" -stakeholder)에 가입을 제공해야함	기초연금을 늘임 재산조사 보완을 확대. 소득비례연금의 누진성을 확대함
미국	완전 노령연금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남	조기/만기 퇴직 조정이 변경됨				

출처. Whiteford 와 Whitehouse(2006), 각국의 자료

있다. 이러한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장기적으로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만이 남녀 연금수급연령이 상이한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체코의 여성 연금수급연령은 자녀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남성 및 여성 둘 다 연금수급연령이 연장되는 국가는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이다.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은 **재정 안정성***(financial sustainability)*과 **퇴직 유인효과***(retirement incentives)*를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잘못도 아닌데 조기 퇴직을 강요당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이러한 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이 있을 것이다.

노동 연장에 대한 보상의 증진

Live Longer, Work Longer (OECD, 2006b)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조기 퇴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완전 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기여연수를 늘리는 방안을 도입했거나 늘이고 있다. 비슷하게는 다른 국가들은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금이나 상여금을 도입하거나 늘이고 있다.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을 낮추거나 근로자들이 연금을 받게 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총액으로 조기 연금급여를 줄이는데 목표가 있다. (Whitehouse, 2007a; Queisser and Whitehouse, 2006을 볼 것)

호주에서는 보다 오랜 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보상으로서 새로운 일시금 상여를 도입하였다. 핀란드에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고율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헝가리는 예전에 젊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율의 지급률을 줄여서 모든 근로자에게 단일한 수준으로 하였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미국은 모두 조기 퇴직에 대한 급여를 줄이고 보다 늦은 퇴직에 대한 급여를 늘였다. 영국의 경우 현재 공적 연금이 정상퇴직연령보다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준다.

퇴직 유인효과*(retirement incentives)*를 개선하려는 이러한 노력으로 **재정 안정성***(financial sustainability)*이 증가될 것이다. 다양한 연령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자산의 개선은 **사회적***(social)* 및 **분배적 효과***(distributional effect)*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급여산정 소득 기준의 변화

많은 소득비례 제도에서 최종 또는 가장 높은 몇 년간의 소득만을 반영하여 급여를 계산해 왔다. 1990년 이래, 7개의 OECD 국가들에서 급여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기간을 늘였다. 프랑스는 공적 연금에서의 기간을 최고 10년 소득에서 최고 25년 소득으로 바꾸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점진적으로 평균기간을 15년에서 40년의 최고소득 기간으로 늘여가고 있다.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모두 평생의 평균소득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가장 변화가 큰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예전에는 최종 10년 중에서 최고 5년을 소득기간으로 측정했지만 이제는 평생의 평균소득으로 바꿀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대부분 OECD 국가에 있는 22개의 비슷한 연금 제도들 중에서 17개 제도가 현재 평생의 소득을 반영하거나 비슷한 기간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다.

연금 급여산정 소득기간 변화의 영향은 근로자의 경력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리느냐에 달려있다(아래를 볼 것). 만약 전 경력기간동안 소득이 일정하다면 산정하는 소득의 변화는 연금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급격히 올라가는 근로자에게는 그 영향은 상당한 것이다.

소득 산정 기간을 늘이는 것은 연금 급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최고기간이나 최종 소득의 평균은 통상 생애 전체의 평균보다 더 높은데 후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초기 경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개선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사회적 영향**은 좀 더 복잡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급격히 소득이 증가하는 개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소득자인 경향이 많으며 대게 남성이다. 비숙련 근로자들은 대체로 실질 소득이 평생 일정하며 여성들도 마찬가지다(OECD, 2006B, 그림 3.4)

과거소득 재평가의 변경

OECD 국가들의 모든 소득비례 공적 연금제도는 과거소득을 연금 청구권이 생겼을 시점과 연금을 청구하는 시점 사이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재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퇴직 전 연동(pre-retirement indexation)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재평가(valorisation)”라고 칭한다.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의 소득비례연금은 과거 소득을 경제 전반의 임금상승률과 연계하여 재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몇몇 OECD 국가들은 소득 재평가를 하지 않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공적연금에서 일찍이 1986년에 물가 평가로 이행했고 1996년에는 기업연금도 옮겨갔다.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은 과거 소득을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혼합하여 재평가한다. 핀란드와 폴란드는 최근의 개혁으로 재평가 산식에서 물가와 소득상승률의 가중치를 변경하였다.

과거소득의 재평가는 연금 급여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평가 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보자: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이 2%이고 물가상승률이 2.5%라고 가정하고 명목소득의 연간 상승률을 4.5%로 적용한다. 20세에서 65세까지 일하는 완전 경력 근로자의 경우, 과거소득을 물가에 연동하여 재평가한 결과가 경제 전반의 평균 임금상승률로 재평가한 결과보다 퇴직 시 연금급여가 40%가량 더 적게 된다. 이것은 “복리”(compound-interest) 효과 때문이다. 물가로 재평가 할 때 근로자들의 과거소득은 임금의 변화로 재평가 할 때보다 경력의 매년을 잃게 되는 것이다.

역시 과거소득을 재평가 할 때 좀 덜 관대하게 평가하면 **재정 안정성**은 향상된다. **사회적 영향**은 연금 급여산정 기간을 연장할 때 일어난 영향과 반대로 나타난다(위를 볼 것). 물가연동으로 재평가 할 때 보다 급격한 연령-소득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소득 경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덜 잃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물가에 연동한 재평가가 소득에 연동한 재평가 보다 가입기간의 소득(급격한 연령-소득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 덜 중요한)에 대해 비중을 덜 주기 때문이다.

연금과 높아진 기대여명과의 연계

절반 정도의 OECD 국가들에서 확정기여 제도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개혁 또는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연

령, 연금급여를 조정하는 구조적 개혁이 제안되었거나 실행되어 왔다(Whitehouse, 2007b를 볼 것).

적립식이건 명목식이건 간에 확정기여제도는 기대여명에 따라 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정한다. 연금 자본은 개인별 계정에 적립되어 있다가 퇴직 시에 정기적 연금 급여, 연금으로 전환될 준비를 한다. 예상되는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대여명이 높을수록 연금 혜택이 적어질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이 그들의 공적 확정급여 연금제도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적립식 확정기여 제도를 도입했다. 1992년에 호주의 확정기여제도에는 원래 있던 공적 연금자산조사를 포함시켰다. 멕시코는 구 공적 연금제도를 1997년부터 확정기여제도로 완전히 대체했다. 다른 한편,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은 명목계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국가들의 제도는 모두 최소한 한 가지 요소 또는 일부 요소들을 기대여명에 따라 조정하였다.

독일은 점수제도의 급여를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을 반영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대여명이 늘어날수록 기여자 당 연금수급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연금 급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연금제도에 기여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기대여명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재정 안정을 위한 조정장치의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핀란드와 포르투갈의 경우 연금의 가치는 퇴직 시의 기대여명의 변화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또다른 조정 방법은 표준 퇴직연령 또는 기대여명의 변화에 따라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기여연수를 늘이는 것이다. 덴마크는 기대여명의 증가와 연금 수급연령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2003년의 연금개혁으로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기여연수와 기대여명을 연계하였다.

늘어난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급여를 줄이는 방안은 재정 안정성을 개선하게 될 것이지만 정반대의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대여명과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momic status),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과 자산의 연계가 잘 설계되었다(Brown과 McDavid, 2002년 45개국의 연구 조사를 볼 것). 이것은 연금 수급연령의 증가 또는 평균 기대여명의 증가에 기인한 급여의 축소가 저소득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동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더 오래 노동에 종사해야하기 때문에 퇴직 유인효과는 개선될 것이다.

확정기여제도의 도입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일부 OECD 국가들이 확정기여제도를 공적, 소득비례 연금 제도를 일부 대체하는 제도로서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부나 전부의 근로자들에게 공적,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남을 것인지, 또는 공적/사적 확정기여제도가 혼합된 제도로 전환 할 것인지를 선택권이 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Mattil과 Whitehouse 2007 등을 참고)

확정기여제도로의 전환은 연금제도의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사이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이다. 이것의 재정적 영향은 복잡하다. 이것은 부과방식 제도와 같이 기여자들로부터 급여수급자들에게로 직접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긴 해도 이 방식은 근로자들과 퇴직자들과의 세대 간 자원이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영향은 불확실 하다. 퇴직 유인효과는 일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사회적 영향은 제도의 구성, 특히 다른 공적 퇴직급여제도와의 상호관계에 달려있다.

지급 연금 연동의 변경

연동은 물가 또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많은 OECD 국가들이 연금급여를 소득연동에서 부분 또는 완전 물가연동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연금의 구매력을 유지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일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4]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같은 몇몇 국가들은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이 혼합된 복합적 지수를 사용하여 연금을 조정한다. 핀란드와 스위스에서도 한동안 이러한 유형의 조정을 사용하였다. 스위스의 연금은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이 동일한 가중지수로 증가한 반면, 핀란드는 최근의 개혁으로 지수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한 임금상승률에 연계된 독일의 연금연동은 향후에는 기여자들과 수급자들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의존 비율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높은 연금은 물가인상률에 적게 (75~90%) 인상되는 반면, 작거나 중간수준의 연금은 물가에 연동된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경우로 연금은 상한선을 두어 물가에 연동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연금은 고정된 양만큼 인상되며 포르투갈은 향후 낮은 연금이 높은 연금보다 더 많이 인상되게 될 것이다.

연금 인상정책은 일시적*(ad-hoc)* 정책 결정의 고전적인 사례이다. 비록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물가에 연동하고는 있지만, 연금 연동은 연금제도에 대한 강한 재정적 압박을 경감하는 비상수단으로 자주 정지되었다. 독일에서는 2004년에 새로운 연계방법이 도입되기 전에 몇 번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벨기에와 미국에서도 연동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적 연금이 물가인상률에 연동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늘릴 목적으로 임시적 변경이 있었다.[5]

지급연금의 연동을 좀 더 완만하게 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향상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정치적인 안정성에 대한 도전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적립식(Pre-funding) 공적 연금

부과방식 재정 의존에 반대하여 연금 부채의 적립식(pre-funding)이라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몇몇 국가에서는 공적 연금 준비금(public pension reserves)을 만들었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의 장기지속 준비금 외에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준비금을 도입했다(Palacios, 2002를 볼 것).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 급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연금 기여금

OECD 국가들의 최근 연금개혁 추세의 원인중의 하나는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높은 세금의 영향에 대한 고민이다. 표 II.1.2는 1994년에서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에 대한 기여금 비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금 의외인 것은 이 시기에 연금-기여금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증거가 별로 않지 않다는 것이다.

표 II.1.2. 1994년, 1999년 및 2004년의 연금기여율(근로자에 사용자를 포함)

	1994	1999	2004
호주		사적기여금만 있음	
오스트리아	22.8	22.8	22.8
벨기에	16.4	16.4	16.4
캐나다	5.2	7.0	9.9
체코	26.9	26.0	28.0
덴마크		사적기여금만 있음	
핀란드	18.6	21.5	21.4
프랑스	21.5	24.0	24.0
독일	19.2	19.7	19.5
그리스	20.0	20.0	20.0
헝가리	30.5	30.0	26.5
아이슬란드		사적기여금만 있음	
아일랜드		별도의 연금기여금 없음	
이탈리아	28.3	32.7	32.7
일본	16.5	17.4	13.9
한국	6.0	9.0	9.0
룩셈부르크	16.0	16.0	16.0
멕시코		사적기여금만 있음	
네덜란드	33.1	37.7	28.1
뉴질랜드		별도의 연금기여금 없음	
노르웨이		별도의 연금기여금 없음	
폴란드	–	32.5	32.5
포르투갈		별도의 연금기여금 없음	
슬로바키아	28.5	27.5	26
스페인	29.3	28.3	28.3
스웨덴	19.1	15.1	18.9
스위스	9.8	9.8	9.8
터키	20.0	20.0	20.0
영국		별도의 연금기여금 없음	
미국	12.4	12.4	12.4
OECD (21개국)	19.9	20.3	20

주: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OECD (1995b,2001,2006a)

21개 OECD 국가의 공적 연금 기여율이 개별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절반의 국가에서 기여율은 지난 10여 년간 약 20%가량으로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이고 소폭 증가한 곳은 체코와 프랑스이다. 헝가리, 일본,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는 기여율이 떨어졌다.

이 반직관적인 사실에 대한 몇 가지 잠재적 설명이 있다. 첫 째, 정부는 연금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일반 회계보다는 목적 기여금(earmarked contribution)에 전가하려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여율은 그대로 이지만 기여금의 근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상한선의 증가 등). 세 번째, 노령인구 구조의 구조가 아직 연금 지출의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이 지출을 통제하는데 성공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OECD의 사회 지출 통계(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표 II.1.3에서 보는 것처럼, OECD 국가들에서의 노령자 및 생존자 급여에 대한 평균적인 공적 지출이 1990년 GDP의 6.7%에서 2003년 7.7%로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핀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 오직 7개국에서만 지출이 줄어들었다. 아주 크게 증가한 국가들은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로 GDP의 3.5%에서 7.5% 사이이다.

표 II.1.3. 노령자 및 생존자의 연금에 대한 공적 지출, 1990-2003

	1990	1995	2000	2003	1990-2003의 변경사항
호주	3.7	42	45	41	0.4
오스트리아	11.9	128	128	132	1.3
벨기에	9.1	94	9.1	9.3	0.2
캐나다	4.3	48	44	4.4	0.1
체코	6.1	65	8.0	8.0	1.8
덴마크	7.4	84	7.1	7.2	-0.2
핀란드	8.1	6.8	5.9	6.4	-1.7
프랑스	10.9	122	12.0	12.3	1.4
독일	10.2	10.9	11.2	11.7	1.5
그리스	11.1	10.8	12.2	12.4	1.3
헝가리	n.a.	n.a.	8.0	8.7	n.a
아이슬란드	3.5	38	3.6	4.2	0.6
아일랜드	4.2	3.7	3.4	3.7	-0.5
이탈리아	10.2	11.4	13.7	139	36
일본	50	63	8.0	9.3	4.3
한국	0.8	13	15	1.4	06
룩셈부르크	96	10.3	7.8	6.5	-3.1
멕시코	0.6	08	0.9	1.2	0.7
네덜란드	7.0	6.1	5.6	5.8	-1.2
뉴질랜드	7.4	57	5.0	4.5	-2.9
노르웨이	7.6	75	6.8	7.4	-0.3
폴란드	5.3	96	10.9	12.4	72
포르투갈	54	79	8.7	10.5	5.1
슬로바키아	n.a.	66	6.6	6.5	6.5
스페인	8.1	92	8.8	8.4	0.3
스웨덴	9.3	107	100	10.8	15
스위스	5.8	69	6.9	7.2	1.3
터키	3.2	37	n.a.	n.a	n.a.
영국	5.3	60	5.9	6.1	0.8
미국	6.1	63	6.0	6.3	0.2
OECD	6.7	7.3	7.4	7.7	1.0

n.a.: 해당없음
출처: OECD 사회지출 통계

1.2. 몇몇 국가에서 연금개혁이 미치는 영향

퇴직소득 제도의 개혁은 그것이 하나의 "크고 결정적인" 것이든, 더 작은 일련의 변화들이든지 간에 종종 계수 범위와 국가 제도 규정들의 변경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제도적 정보에만 기초하여 국가 간의 이러한 개혁정책들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제1부에서 제시하였던 소득대체율, 상대 연금수준 및 연금자산 등 연금제도의 미시경제적 지표들을 개혁 전,후로 비교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미시경제적 방법들은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전망의 거시적 그림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분석에서는 지난 10년간 중요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던 16개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영국)

방법론

이 보고서에 나오는 용어 중에 "개혁 후"(post-reform)라고 표시된 결과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04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신의 모든 경력을 연금 계수와 규정이 정한 기간을 보낸 근로자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2004년 이후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변화를 항께 적용한 것이다.

개혁 전 시나리오는 다응과 같은 질문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2004년에 연금제도의 계수와 규정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러한 정형화된 접근 방법은 지난 10여 년 사이 다른 변화와 개혁 프로그랭의 효과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앙률과 경제적 변수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같고 같은 모형방법 또한 같은 것이 사용되었다(11쪽의 "보고서의 구조와 방법론" 항목을 창조).

여기서의 목표는 2004년에 퇴직하는 사랑들의 연금 급여를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몇몇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빈도는 상호적으로 계산되는, 복잡한 이전 전망과 함께 모형화 하는 것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연금 규정을 의미한다. 둘째, 현재의 퇴직자들의 상황은 소득분포 또는 퇴직연금 급여에 대한 행정적 자료보다는 미시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더 잘 측정되어진다.

이 접근방법은 두 개의 소득대체율 전망치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개혁 이전 제도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때, 2004년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연금수급액의 전망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전망치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할 때, 즉, 개혁 후 제도 하에서 2004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의 수급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미시경제적 비교이고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연금 약속의 지급여력(affordability)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지급 시 연금의 연동의 변화는 연금개혁 모형에서 연금자산의 계산을 통해 측정한다. 그러나 연금 제도의 계수의 연동에 대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모형화하기가 훨씬 어렵다. 방법론에 대한 항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몇몇 국가들은 이론상으로 퇴직안정앙의 가치 같은 중요 계수를 물가에 연동하기로 하였다. 전술한 것처렁, 40년에서 50년의 기간으로 연장된다면, 가난한 연금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은 비현실적으로 낮아져서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금 제도의 계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표 II.1.4. 연금개혁 전, 후의 몇몇 OECD 국가의 평균소득 근로자에 대한 총 소득대체율[1]

개인별 소득의 백분율

	남성		여성 (상이한 경우)	
	개혁 이전	개혁 이후	개혁 이전	개혁 이후
오스트리아	90.0	80.1	80.0	80.1
핀란드	66.3	63.4		
프랑스	64.7	51.2		
독일	48.7	39.9		
헝가리	57.7	76.9	52.7	76.9
이탈리아	90.0	67.9	80.0	52.8
일본	40.7	34.4		
한국	69.3	66.8		
멕시코	72.5	35.8	72.5	29.7
뉴질랜드	39.7	39.7		
폴란드	62.2	61.2	57.3	44.5
포르투갈	90.1	54.1		
슬로바키아	59.5	56.7		
스웨덴	78.9	62.1		
터키	107.6	72.5	102.8	72.5
영국	30.8	30.8		

1. OECD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상당한 연금개혁방안을 실행하여 왔음.
출처: OECD 연금모형

평균소득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계수 연동 정책의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개혁 전 및 개혁 후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유의하라.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1990년대 이후 연금개혁은 평균소득의 근로자들의 소득대체율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표 II.1.4.는 개혁 전과 후의 남성의 총 소득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은 남성과 다른 경우에 표시하였다. 평균소득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약 20%가량 급격히 상승한 헝가리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개혁을 통해 삭감되었다. 그렇지만 헝가리의 경우, 세제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헝가리 연금은 소득세를 제외한 기초소득에 의해 계산되어져 왔다. 따라서 헝가리의 소득대체율 상승은 모두 연금개혁 때문인 것은 아니며 세금의 변화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경우 연금개혁 전 후로 소득대체율의 변화가 없다. 뉴질랜드는 연금개혁이 단순히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린 것으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이다. 급여가 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소득대체율에 나타나지 않는다.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여성의 경우, 연금개혁 전후로 소득대체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격히 소득대체율이 줄어든 곳은 멕시코로 남녀모두 절반이하로 삭감되었다. 그렇지만 주목해야할 것은 개혁 후 제도는 1997년 이후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모든 현재의 근로자들은 최소한 개혁 전 제도에서 약속되었던 만큼의 급여를 보장받는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순이다. 물

표 II.1.5 연금개혁 전, 후의 몇몇 OECD 국가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순 상대 연금수준[1]

	남성		여성 (상이한 경우)	
	개혁 이전	개혁 이후	개혁 이전	개혁 이후
오스트리아	57.8	53.2	53.1	53.2
핀란드	44.6	44.8		
프랑스	42.8	42.1		
독일	39.7	32.6		
헝가리	52.5	58.4	42.9	58.4
이탈리아	55.9	46.7		
일본	32.2	26.9	51.1	36.3
한국	54.3	54.2		
멕시코	38.7	28.2		
뉴질랜드	41.7	41.7	38.7	28.2
폴란드	50.0	38.8	47.1	29.9
포르투갈	58.5	45.0		
슬로바키아	41.8	36.5		
스웨덴	44.7	42.8		
터키	77.2	52.0	73.2	52.0
영국	29.4	36.0		

1. OECD 국가들은 지난 10년간 상당한 연금개혁들을 실행하여 왔음. 순 상대 연금수준은 개인별 연금수급액(세금과 기여금을 제외한)을 세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임
출처: OECD 연금모형

론, 이러한 급여 삭감의 많은 부분이 연금제도가 이미 직면한, 향후 악화가 예상되는 재정 곤란 때문에 필요하다. 개혁 이전에 지급이 "약속된" 수준은 이미 실제로 지급 될 수 없게 되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급여의 적정성

표 II.1.5는 개혁 전후로 평균소득 절반인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한 상대 연금수준(경제 전반 평균소득의 부분으로서의 연금 급여)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소득대체율에 비해 급여 적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유용한 방법인데, 평균적인 생활수준 근로자들에 비해 저소득 연금생활자들이 얼마나 떨어져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퇴직자들의 빈곤 위험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된다.

결과를 살펴보면 16개 국가들 중 2개국에서만 평균소득 절반인 근로자들의 소득상황이 개혁으로 인해 개선되었다. 영국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급여가 29%에서 36%로 향상되었다. 이 향상은 서로 다른 소득집단에 대해 차별화된 소득대체율을 가지는 제2국가연금(the second state pension)의 도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수급액을 인상시킨다. 거기다가 1997년에 평균 임금의 18%였던 예전의 최저 소득 보장이 2004년에 21%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연금 크레딧에 의해 상당히 대체되었다. 헝가리는 여성 저소득 근로자가 더 많이 증가되었다. 이 증가는 여성의 연금 수급연령이 55세에서 62세로 늘어난 변경에 주로 기인한다. 확정급여제도 및 새로운 연금 제도의 확정기여제도 모두 연수가 늘어나 수급액이 늘어났다.

핀란드와 프랑스 한국은 저 소득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는데 개혁 전 후로 상대 연금 수준은 동일하다. 오스트리아의 여성 저소득 수급자도 동일하다. 1996년의 핀란드 연금개혁의 경우, 부분적으로 연금 소득조

사에 의한 연금 제도의 기본 요소는 다른 연금소득에 의해 전적으로 배제된 목적 국민연금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소득연계 연금제도에서 불충분한 수급액을 받는 가난한 연금수급자들에게 최저 연금수준을 보장해준다. 프랑스의 경우 순 최저 임금 85%를 밑도는 연금 급여를 완전 경력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한 2003년의 연금개혁 규정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비록 이런 방안들이 저소득 연금수급자들을 위한 상당한 인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득기준을 위한 기간의 연장과 1990년대의 기업연금제도의 변경을 통한 급여 감소분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

다른 모든 국가들은 개혁의 결과로 급여가 줄어들었는데 극빈층 수급자 까지도 줄어들었다. 특히 약 10% 또는 그 이상으로 상대연금이 줄어든 곳은 멕시코(39%에서 29%로), 폴란드(50%에서 39%로), 포르투갈(58%에서 45%로)이다. 독일은 40%에서 33%로 급여가 떨어졌다.

멕시코는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기여제도로 전환하면서 감소가 일어났다. 비록 모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그들의 개인 계정에 보조금을 받고 또한 최저연금제도가 있지만, 새로운 규정 아래서 퇴직하게 될 저소득 근로자들의 상대연금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폴란드에서는 개혁으로 인해 최저연금 수준의 변경이 없다. 그러나 평균소득 절반의 완전 경력 근로자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폴란드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던 구 연금 제도상의 정액 부분을 폐지했다. 따라서 평균소득 절반의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는 전적으로 구 재분배 제도에서 명목 계정과 적립식 확정기여제도가 혼합된 새로운 복합적 제도로 바뀌는 구조적인 개혁에 의한 것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최근에 합의된 연금개혁에서 65세 기대여명까지 미래 연금 조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국제연합과 세계은행의 사망률 통계에 의하면, 2006년의 포르투갈의 65세의 기대여명은 16.2년이다. 2050년에 기대여명은 20.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급여는 개인별 전체 경력을 기대여명과 연계하여 조정한 결과, 현재의 규정에 따른 가치의 81%가 된다. 그러나 최저 연금 때문에 평균소득 근로자 보다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가 덜 하락한다.

독일에서 급여의 축소의 원인은 (위에서 기술한) 연금 점수 가치 산정의 변경과 순 임금의 증가 및 순 연금 급여의 감소를 의미하는 EET 세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이다. 독일 연금 체계에서는 명백한 최저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 집단은 급여 감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유일한 안전망 급여는 사회 부조인데 이것은 보다 덜 엄격한 노령자를 위한 연금이라기보다는 근로연령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히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자산을 받는 원천이 없는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평균소득 절반의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은 사회부조 수준이상이다.

소득 기준 변경의 효과

연금모형에서는 개인 소득이 경제 전반의 평균 성장률(연간 실질 2%)에 따라 늘어난다고 가정한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당시 및 경력 전체 평균인 경제 전반의 소득 증가율에 따라 재평가한 상대적 개인소득으로 측정된다. 개인별 소득이 경제 전반 평균을 따라가기 때문에 재평가된 평균소득은 최종 소득과 같아진다.[6]

많은 국가들이 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소득기준을 변경시켜왔고 특히 소득기준의 기간을 늘렸다. 이와 같은 경우, 이러한 개혁의 효과는 기본 가정에 의한 연금모형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공적 연금 제도의 평균 기간이 1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 것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가 13.2% 삭감된 것으로 계산되어진다(가입기간 소득의 물가 재평가 때문). 포르투갈의 새로운 소득측정 방법은 25% 임금성장률과 75% 물가상승률을 혼합한 복합 지수로 생애 전반의 평균소득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기본 가정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기준(최종 15년의 임금)에 비해 27%의 급여가 삭감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득 기준은 광범위한 개혁안의 일부이며 이 계산은 종합적 효과에 연관이 없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에서 소득기준의 변경은 기본 가정의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평균기간이 짧은 기간에서 완전 경력으로 늘였다.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소득이 성장하는 개인들은 이 소득 기준의 변경으로 급여를 잃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평균보다 1%가량 소득이 증가하는 근로자들은 소득 기준의 변경으로 9.1%의 급여를 잃게 될 것이고 슬로바키아는 17.7%, 스웨덴은 13.2%를 잃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개혁을 효과를 살펴볼 때, 이러한 계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 가정은 경력기간 동안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보다 빠르게 소득이 증가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변화의 효과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7]

소득과 급여의 연관성

이 항목에서는 연금개혁이 소득과 급여의 연관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본다. 앞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퇴직자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서는 전체적인 소득 범위에서 보다 광범위한 재분배의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에서는 제1장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던 연금급여의 누진성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고안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제도는 100%의 점수로 하고 최대로 누진적인 것으로 한다. 예전 소득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완전 보험성 제도는 0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소득대체율을 지급하므로 누진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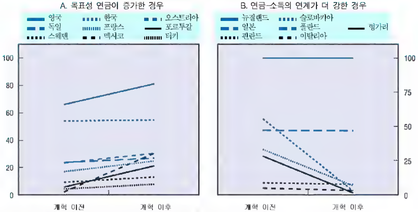
16개국의 개혁 전-후의 누진성 지수를 나타내는 그림 II 1.1.에서 연금개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금제도를 좀 더 누진적으로 바꾼 몇몇 국가들은 패널 A에 있다. 가장 누진적으로 많이 바뀐 국가들은 멕시코, 포르투갈, 영국이다. 멕시코는 정부 보조금과 최저연금의 조합의 결과이다. 포르투갈의 최저연금은 저소득자들의 급여 삭감을 보충함으로서 보다 누진적인 급여 구조에 일조하였다. 영국의 높은 재분배제도의 경우, 저소득자들의 연금 급여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 때문인데 이 규정들은 이전의 항목에서 다루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누진성이 조금 증가했다. 독일은 소득비례 연금급여가 삭감된 반면,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노후소득 안전망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성이 조금 증가한 경우이다.

예상대로, 급격하게 누진성이 하락한 국가들은 구 연금 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목계정 또는 적립식 확정기여제도로 대체한 국가들이다(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패널 B를 보라). 이 4개국의 개혁 후 누진성

1. 지난 10년간의 연금개혁: 미래 급여에 미친 영향

그림 II.1.1. 개혁 전과 개혁 후 급여산식의 누진성 지수

소득에 대한 지니 계수에 대한 연금수급액의 지니계수



주: 지수의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제1부의 '연금 급여산식의 누진성'항목을 참조
출처: OECD 연금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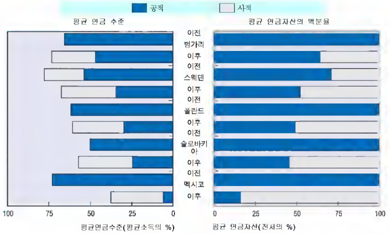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450527113232*

지수는 거의 0에 가까운데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급여와 소득의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 완전 보험 모형이거나 그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새로운 제도의 상당한 명목 계정 요소 및 의무적 확정기여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제도가 구제도보다 덜 누진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소득 계층에 지급하던 구제도의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저 소득 퇴직자에게만 해당하는 목적 연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개혁으로 예전에 존재하던 최저연금을 폐지했고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부조 급여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소득과 급여의 관계는 구제도에서도 이미 강력했다. 이는 개혁이 새로운 명목 확정기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준다. 구 헝가리의 제도에는 최저연금 제도가 있었지만 2009년 이후 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혁 이후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폴란드에서 누진성이 약화된 것은 기초연금 요소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났는데 슬로바키아는 연금 제도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재분배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구 슬로바키아 제도에서는 연금 급여액에 상한선이 있어 연금적인 소득을 경제 전반의 평균 소득 이상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비례적으로 작은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 모형에 이어 새로운 2층 제도가 뒤따르는데 이것은 두 요소 모두에서 소득과 급여의 연계가 강한 것이다. 소득비례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단일한 연금률로 귀결되는 연금 점수에 기초한다. 최저연금은 더 이상 없으며 그 대신 최저소득이 연금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최종적으로 명백한 확정기여요소가 소득과 급여를 강하게 연계한다. 누진성에 대한 관련 변경의 대부분은 구제도하의 상한제보다 약 3배정도 늘어난 연금적 소득의 상한선의 도입이다.

그림 II.1.2. 공적, 사적 균형의 변화



StatLink *http://dx.doi.org/10.1787/565066581031*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 제도의 균형 재조정

5개 OECD 국가들(헝가리, 스웨덴,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멕시코)가 공적 연금제도와 사적연금 제도의 균형을 재조정했다. 그림 II.1.2.는 개혁으로 인해 공적 및 개인연금의 원천이 평균 연금수준과 평균 연금자산(즉, 미래 연금 지급의 할인된 흐름으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급격한 변화는 과거 모든 연금제도가 공적 연금이었다가 지금은 약간의 공적 요소만 남아하는 멕시코에서 일어났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3개국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공적 제도로 시작했다가 혼합 제도로 옮겨간 경우이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연금의 절반 이상이 개인연금제도로 옮겨간 반면, 헝가리는 공적 제도가 여전히 전체 계정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

스웨덴은 이 집단에서는 좀 특이한 경우로 개인 사용자 기반 연금제도가 연금 제도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 이후 연금약속에서 개인연금 요소는 50%이하로 늘어났다. 이것이 새로운 의무적, 개인관리 확정기여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달성했다.

기대여명 변화의 조정

연금 제도에 확정기여 또는 명목계정 요소를 도입한 국가들은 기대여명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그들의 전통적인 확정급여 공적 제도에 기대여명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했거나 준비중이다. 이러한 조정의 효과는 정확히 제도의 구성과 기대여명을 연계하지 않는 퇴직 소득제도의 다른 부분들과의 상쇄효과에 따라 달라진다(Whitehouse, 2007b를 볼 것).

표 II.1.6.은 2002년과 2040년(국제연합/세계은행의 통계자료에서 파악한 연도) 사이의 사망률 추계의 변화

표 II.1.6. 기대여명 개선의 추계(2002-2040)가 몇몇 OECD 국가들[1]의 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

	65세의 총 기대여명			평균 연금 수준(평균 소득의 %)			평균 연금 자산(소득의 배수)		
	2002	2040	변화	2002	2040	변화	2002	2040	변화
호주	82.8	85.6	+15.5%	44.7	42.6	-4.7%	6.5	7.2	+10.8%
덴마크	81.0	84.5	+21.7%	87.1	79.3	-9.0%	11.3	12.4	+9.7%
핀란드	81.8	85.4	+21.5%	69.9	61.9	-11.4%	9.0	9.7	+7.4%
헝가리	78.9	82.7	+27.8%	79.6	73.4	-7.8%	10.3	11.9	+15.5%
이탈리아	82.3	84.9	+15.1%	73.1	65.0	-11.1%	9.4	9.5	+1.1%
멕시코	80.5	82.6	+13.7%	41.0	37.6	-8.3%	4.9	5.0	+2.0%
폴란드	79.7	83.4	+25.2%	74.6	60.7	-18.6%	8.2	8.3	+1.2%
포르투갈	80.8	84.4	+22.9%	67.9	56.3	-18.9%	8.2	8.3	+1.2%
슬로바키아	79.4	82.9	+24.2%	63.2	57.1	-9.7%	8.0	8.9	+11.3%
스웨덴	83.3	85.8	+13.4%	72.3	67.4	-6.8%	10.4	10.8	+3.8%

주: 기대여명의 변화는 65세에 기대여명의 추가적 백분율로 주어지는 것이며 65세의 전체 기대여명이 아님. 성별 구별없는 사망률에 근거함

1. 기대여명에 의한 조정을 도입한 OECD 국가들임

출처: OECD 연금모형,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구 데이터베이스

가 기대여명과 연금을 연계하는 몇몇 OECD 국가들의 연금급여에 어떠한 명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10개국에서 평균적으로 65세의 기대여명은 3.2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는 사망률의 수렴의 가정에 기초한다. 2002년에 가장 긴 기대여명을 가지고 있던 스웨덴은의 기대여명은 2.5년 남짓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모두 2002년 당시 65세의 기대여명이 80세 이하였던 중유럽과 동유럽 3개 국가들의 기대여명은 3.5년이 더 늘어났다.

기대여명과의 연계는 모든 경우에 평균 연금수준을 낮추게 될 것이다. 9개국에서 평균적으로 약 10%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연금자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금 제도의 모든 부분에 명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간에 평균적으로 약 7%정도 증가한다.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는 기대여명과 연금 사이의 매우 강력한 연계성을 반영하여 연금자산이 가장 작게 증가한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남아있는 공적 연금제도의 상당 부분이 기대여명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률의 개선에 따라 연금자산이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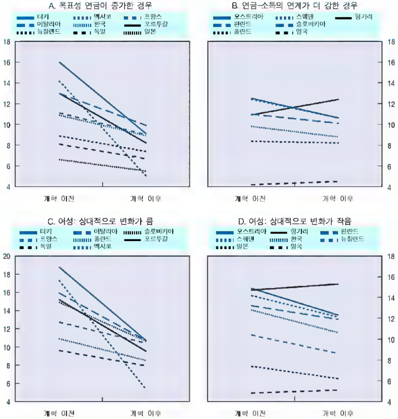
장기적인 연금 약정액의 축소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중요 목표 중에 하나는 공적연금 지출의 축소와 인구 노령화에 대하여 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표 III.1.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보다 덜 관대한 연동 그리고/또는 재평가, 퇴직연령의 변경, 소득기준의 변경과 같은 대부분의 통상적 연금 제도의 변경은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재정적 회계적 청산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금지급 약속의 가치는, 연금제도의 개혁 전과 후를 비교한다. 이 역시 실제로 지급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 단순히 연금 제도가 입법화 되었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개혁 전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급불능이 될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이 지표는 확고하며 장기적인 재정적 기초를 연금에 부여하는데 필요한 변화의 연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II.1.3. 개혁 이전과 이후의 평균 연금자산

경제 전반 평균소득의 배수



주: 그림에서는 가중평균 연금자산을 보여줌(소득분포를 반영한 가중치)
제1부의 "가중평균 연금수준 및 연금자산"을 참조할 것
출처: OECD 연금모형

StatLink *http://dx.doi.org/10.1787/837752045346*

연금자산의 가중평균지표에 기초하여 비교한다. 이것은 현재의 근로자의 연금지급 약속의 규모를 측정하는 가장 복잡한 방법인데 기대여명, 연금 수급연령, 지급연금의 연동의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산정 방법은 이 보고서의 제1부 연금 수준과 연금자산의 가중평균을 다룬 항목에서 기술하고 있다.

연금 지급 약속의 비용에 대한 개혁의 효과는 그림 II.3.에서 남성(패널 A와 B)과 여성(패널 C와 D)으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멕시코의 남성 근로자가 가장 큰 규모로 비용이 절감 된 것과 여성의 경우 그 범위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지난번에 논의 한 것과 같이, 확정급여제도가 지배적인 구제도에서 거의

전적으로 확정기여제도에 의존하는 새로운 제도로 옮겨간 것이 급여의 상당한 삭감을 초래했다. 여성의 감소가 더욱 큰 것은 구제도의 급여가 여성의 더 높은 기대여명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연금자산이 더 높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여성은 남성과 같은 퇴직연령을 갖게 되고, 남성과 여성의 확정기여제도로부터 연금자산을 동일하게 만드는, 성별에 특정된 사망률 표에 의해 연금액이 계산된다. 그러나 최저 연금 요소는 성별에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은 연금자산을 갖는다.

이탈리아는 개혁 후 남성과 여성의 연금 연령이 동일하지만 개혁 전에는 달랐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기대여명의 차이만을 기초로 했을 때보다 여성의 연금자산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다. 새로운 폴란드의 제도의 경우, 여성의 퇴직 연령이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기여금을 더 적게 적립하게 되고 퇴직 시에 낮은 급여를 받는다. 슬로바키아는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령이 동일하게 62세로 연장되지만 이 방법에 의한 비용의 감소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데, 연금수준이 다른 국가들만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급여 지급률의 삭감이 역시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연금 연수의 증가가 실제로 여성의 급여를 증가시켜주지만 더 높아진 퇴직 연령과 그에 따라 줄어든 여성의 퇴직기간으로 인해 연금 제도 개혁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연금자산은 감소될 것이다.

핀란드와 독일은 재평가와 개혁 후 연동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 연금자산은 여전히 남성보다 높지만 개혁의 결과로 조금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두 성별이 비슷해졌다.

가중평균 연금자산이 늘어난 유일한 국가는 영국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저소득 퇴직자들을 위한 소득대체율의 변화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기대여명이 더 높기 때문이다.

1.3. 결 론

1990년 이후 거의 모든 30개 OECD 국가들이 그들의 연금 제도에 약간이라도 변화를 주었다. 그중 절반이 넘는 국가에서 미래 퇴직 급여를 현저하게 변화시키게 될 중요한 개혁을 단행했다. 이 장에서는 최근의 연금개혁을 이루는, 여덟 가지의 다양한 변화들을 훑어보았다. 연금 연령의 연장과 같은 몇 가지는 상당히 눈에 띄면서 논쟁적인 것이다.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기준의 변경과 같은 다른 것들은 보다 복잡하고 기술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연금 제도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안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 그러나 과거의 세대에 비해 오늘날 근로자들의 연금지급 약속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6개국에서 남성의 평균 연금지급 약속이 연 소득의 10.7배에서 8.4배로 22%가 삭감되었다. 여성의 경우 감소가 더 커서, 연소득의 13배에서 9.7배로 25%가 감소되었다. 16개국 중에서 헝가리와 영국 두 나라만이 평균적으로 연금 지급약속이 증가하였다.

어떤 국가가 연금을 개혁하고 어떤 국가는 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10개국 중에서 1990년 연금에 대한

공적 지출이 가장 높은 6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 순) - 이 1990년 이후 연금제도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지출 상위 10개국 중 나머지 국가들은 이 기간에 퇴직소득 제도에 대해 거의 바꾸지 않았거나 전혀 바꾸지 않았다. 이들은 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으로 1990년 OECD 전체적으로 GDP의 평균 6.7%를 연금으로 지출할 때 평균 9.5%를 지출하던 국가들이다.

1900년 연금 지출이 **가장 낮았던** 국가들 중 당시에 이미 상당한 회계적 부당을 지고 있던 10개국이 중대한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여기에는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가 포함된다. 일본의 경우 인구분포 변화의 속도 및 규모의 결과로 변화가 요구되었는데 1990년 GDP의 5%였던 지출이 이미 2003년에 9.3%로 증가하였다. 한국, 멕시코 터키의 경우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았으며 다른 어떤 OECD 국가들보다 인구분포 상황 때문에 개혁이 필요했다. 한국의 인구 노령화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멕시코와 터키의 개혁 이전 제도는 매우 관대한 것이어서 평균 연금자산이 남성의 경우 연 소득의 15배, 여성은 18배였다. 이에 비해 OECD 평균은 각각 9배와 11배였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비록 현재의 연금 지출이 특별히 상당하지 않더라도 개혁이 필요했다.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평가는 재정적 기준으로만 할 수 없고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심오한 사회적 재분배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변화가 서로 다른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해답은 복잡하다.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과 같은 몇 개 국가들은 저소득자들에 대한 목적성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근로 촉진과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수급액과 근로중의 소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저소득자들을 위한 미래 퇴직소득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일, 일본,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평균소득 절반인 완전 경력 근로자들의 순 연금수급액이 개혁이전에는 전체적인 OECD 평균의 절반을 약간 밑도는 수준인 평균소득의 41%였다. 개혁으로 인해 이 수준이 32.5%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몇몇 국가들에서는 노령 빈곤이 부활할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한국, 뉴질랜드 및 영국은 연금개혁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을 보호하였다.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도전적이면서도 논쟁적인 문제인데 수많은 단기적 압박에 직면한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그러나 연금개혁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직 퇴직소득제도에 필요한 변경을 실시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미 이를 수행했던 국가들의 경험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주 석

1 이러한 접근의 예들은 Economic Policy Committee (European Union, 2005, 2006), Salomaki(2006) 및 Dang 등(2001)에 포함되어 있음

2 McHale(1999)가 하나의 예이다

3 이는 개혁이 사용자들에게 개인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인데 개인연금의 보장은 이미 개혁이전에 폭넓게 보장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의무적 부분과 개혁이전 시나리오의 공적 연금만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지도 모른다.

4 연금 지급의 연동은 흔히 초기 연도의 소득을 퇴직 당시의 물가와 임금상승률로 조정하는 "재평가"에 대한 논의와 혼동되는 것에 주의할 것.

5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실질 기초 연금은 7.9% 증가되었고 그 가치는 국가적 측정방법에 의한 평균소득의 15.9% 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06b, 표 5.1)

6 어떤 시점 i의 개인소득은 기준시점(w0) 소득의 배수로 표시할 수 있다. $w_i = w_0(1+g)^i$, w는 소득, g는 소득상승률(개인 및 경제전반)임. 소득상승률로 개인소득을 재평가하면, 각 시점별 개인의 소득은 $w_i = w_0(1+g)^i(1+g)^{R-i}$가 된다. 소득상승률이 불변이면, 최종소득과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은 동일하다.

7 OECD (2006b)의 그림 3.4 는 경제 전반 평균을 평균적으로 0.8% 상회하는 연간 경력 성장률을 적용하여 60-64의 노령자 남성의 평균소득이 25-29세의 평균소득의 136% 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연간 경력 성장률 0.3%를 적용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로 유지된다고 적용했을 때, 노령 근로자와 젊은 근로자의 소득비율은 112% 이다.

2. 미래 퇴직소득과 개인연금의 역할

퇴직소득제도의 국가 간 분석을 함에 있어서 노령자들에게 중요하고 커져가는 개인연금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등 11개 OECD 국가들이 노령자의 의무적 소득제공 제도의 일부를 사적 부분으로 옮겼다. 이중 6개국-오스트리아, 헝가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사적 부분과 연결된 시기가 1990년대 이후였다. 의무적 개인연금이 확산되는 것과 함께 9개 OECD 국가들에서 임의적 개인연금이 노동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개인연금을 다른 이 장의 2.1절에서는 임의제도 및 의무제도 모두에서 의무적 개인 퇴직 소득 제도의 확대를 살펴본다. 2.2절에서는 개인연금 제도의 성격의 변화를 알아본다. 개인연금은 전통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이였고 수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근무 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 방식이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확정급여방식은 사라져가고 확정기여형(DC)방식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확정기여방식의 연금 급여는 개인과 사용자의 기여금의 가치, 기여금이 벌어들이는 투자수익 및 퇴직급여의 흐름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적립식 퇴직 소득 자본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2.3절과 2.4절은 퇴직자들을 위한 의무제도와 임의제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의무 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임의 연금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퇴직저축"의 부족분 ("retirement-savings" gap)의 척도로 측정한다.

2.5절에서는 퇴직저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의 소득 비율을 산정한다. 2.6절과 2.7절은 근로자들의 기여연수와 연금제도에 투자되는 자금의 수익률이 얼마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2.8절에서는 퇴직저축이 거의 전적으로 의무적인 국가들과 임의 저축이 더 중요한 국가들 사이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다.

2.1 개인연금의 가입률(coverage)

표 II.2.1.은 각국에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의 비율과 평균적인(또는 전형적인) 기여율에 대한 자료를 함께 나타낸다. 확정급여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기여율에 대한 자료는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각 국가에서 개인연금의 중요한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정보도 나타내고 있다.

불행하게도, 개인연금 보장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장기 저축 시장에서의 기관들의 차이

표 II.2.1. 개인연금 제도의 유형, 가입률 및 평균 기여율

	가장 큰 제도			두 번째로 큰 제도		
	제도유형	가입률	기여율	제도유형	가입률	기여율
호주	MO/P	>90%	9%			
오스트리아	VO	35%	1.5-2%	VP	10%	–
벨기에	VO	40-50%	1-5%			
캐나다	VO	39%	8.5%	VP	50%	–
체코	VO/P	40%	2.8%			
덴마크	MP	>90%	1%	QMO	>80%	10.8-17%
핀란드	VP	15%	3%	VO	7%	2%
프랑스	VO	10%		VP	8%	
독일	VO	57%	2-4%	VP	13%	2-4%
그리스	VO/P	미약함	–			
헝가리	MP[1]	58%	8%	VO/P	31%	5%
아이슬란드	MO	>90%	10%			
아일랜드	VO/P	52%	c.10%			
이탈리아[2]	VO	8%	2.35%	VP	2%	–
일본[3]	VO	45%				
한국	VO	미약함				
룩셈부르크	VO	20%	–	VP	5%	4%
멕시코	MP	31%	6.275%			
네덜란드	QMO	>90%	–			
뉴질랜드	VO	20%	–			
노르웨이	MO	>90%	2%	VO	45%	–
폴란드	MP1	49%	7.3%	VO/P	미약함	–
포르투갈	VO	4%	3%	VP	1.5%	–
슬로바키아	MP1	45%	9%	VP	27%	5.4%
스페인	VP	40%	–	VO	10%	–
스웨덴	MP	>90%	2.5%	QMO	>90%	2%
스위스	MO	>90%	7-18%			
터키	VO/P	미약함	–			
영국[4]	VO	43%	c.9%	VP	16%	–
미국	VO	47%	c.9%	VP	17%	

M= 의무제도
O= 기업연금제도(사용자 기반)
P= 개인연금제도(개개인 기반)
QM= 준 강제 제도(집단적 합의에 의한 적용)
V= 임의제도

주: 확정급여형 기업별 제도가 있는 국가들에서의 기여율은 확정기여제도를 위한 것이다(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1. 이들 국가들에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지만 기존의 근로자는 선택적이다. 따라서 적용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0% 향하게 될 것이다.
2. TFR로 알려진 퇴직금 제도는 퇴직저축 제도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여율은 신규 근로자는 6.91%이고 기존의 근로자는 2.41%이다. 재정적 퇴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퇴직금 제도는 역시 일본과 한국에서 중요하다.
3. 이것은 세제 적격(tax-qualified) 연금 제도, 피고용자 연금 기금에 적용되거나 둘다 적용되는 것을 나타낸다.
4. 이 제도들은 국가 제2 연금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제도의 급여의 일부는 의무적 퇴직 소득 제공의 요소이다.

출처: OECD 개인연금 통계, 유럽 연합 사회보호 위원회(European Union,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5), Copeland(2006); Schembari (2004), Palacios 와 Pallares-Miralles (2000); 정부 보험국(Government Actuary's Deaprtment,2005, 2006), 각국의 관련 기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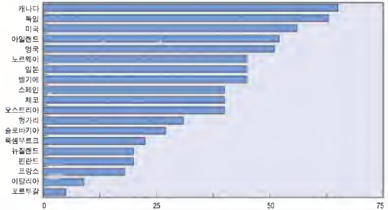
로 인해 비교하기가 어렵다. 표 II.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출처들과 추정값들은 예비적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표에서는 11개 OECD 국가들의 의무적(또는 준 강제적) 개인연금을 보여준다. 이들 중 8개국의 개인연금은 확정기여 방식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준 강제적 기업연금 제도의 가입자 97%가 확정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나머지는 확정기여제도이다).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의 의무 기업연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둘 다 의무적 기여 수준, 법정 이자율 및 법정 연금지급률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들 제도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이해되기에 확정기여제도보다는 확정급여 제도(그리고 다른 종류의 소득비례 제도)에 가깝다.

의무적 및 준 강제적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은 통상 피고용자의 90% 이상이다. 그러나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젊은 근로자 및/또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은 이 새로운 개인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었다. 일부 기존 근로자들은 공적, 소득비례 제도 또는 공적/사적인 확정기여 혼합제도로의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들 제도의 적용률은 45%에서 60% 사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1]

이 장의 나머지에서는 임의적 개인연금제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데 임의적이란 말은 고용주가 기업연금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거나 개인들이 개인적 제도에 반드시 가입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표 II.2.1.의 개인연금 가입률에 대하여는 국가 간 차이를 분명한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II.2.1.에서 요약하였다. 독일,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 4개국에서 임의적,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넘는다. 이는 주로 사용자 제공 제도 때문이지만 이들 4개국에서 개인별 연금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II.2.1. 임의 개인연금의 가입률



주: 표 II.2.1.의 주를 볼 것

출처: OECD 개인연금 통계; 유럽 연합 사회보호 위원회(European Union,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5); Copeland(2006); Schembari (2004); Palacios 와 Pallares-Miralles (2000); 정부 보험국(Government Actuary's Deaprtment,2005, 2006); 각국의 관련 기관들

StatLink *http://dx.doi.org/10.1787/000011070715*

벨기에, 일본, 노르웨이에서 임의 개인연금은 근로자의 45%가 가입되어있다. 이 그림의 나머지 부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자의 10% 또는 그 이하가 임의적, 기업별 개인연금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이다.

모두에 밝힌 바와 같이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측정하는 것은 정밀하지 않은 작업이다. 임의 개인별 개인연금의 가입률에 대한 자료는 특히 구하기 어렵고 기관별 차이점이 임의 기업별 연금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표 II.2.1에서 자료의 원천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호주, 벨기에, 일본, 뉴질랜드의 개인별 연금의 가입률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2.2. 임의 개인연금 제도의 유형

한눈에 보는 연금의 초판에서는 캐나다, 영국, 미국 등 3개국의 기업 확정급여 연금제도의 가입자를 위한 연금수급액을 모형화 하였다. 이들을 선택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기업 연금의 보장범위가 넓다는 것, 둘째, 퇴직소득의 제공에서 이미 개인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3개국의 다양한 사용자 제도의 규정과 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가 용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3개국에서 근로자들 위한 개인연금 부문이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기여제도로 전환되었고[2] 보다 제한적인 변화가 아일랜드에서 있었다.

캐나다

캐나다의 통계를 보면 기업별 연금 보장범위는 1980년대 초부터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1980년대 55%였던 근로자 가입비율이 2000년에는 42%로 줄었다. 여성의 가입률은 같은 기간에 37%에서 39%로 조금 늘었다(Morissette와 Johnson, 2003). 기업연금 제도에 대한 조사를 보면 확정기여제도의 보장이 아주 작은 범위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과 2003년 사이에 180%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확정기여제도의 가입자는 1995년에 9%에서 2003년에 15%로 늘었다. 민간 부분의 경우, 확정기여제도는 가입자가 10년 전 14%에 비해 24%로 늘었다.

이것은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기여제도로의 전환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전통적인 기업연금 대한 집단적 개인연금(등록 퇴직저축 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또는 RRSPs 라고 함)을 제공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기업연금 보장의 축소를 상쇄하는 정도는 적당한 자료가 부족하여 밝혀낼 수 없었다(Schembari, 2004).

아일랜드

연금 위원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기업연금의 가입자 수는 거의 30%가량 증가하였다. 확정기여제도의 가입자 수는 63%가량 증가했지만, 확정급여제도의 가입자는 18%밖에 늘지 않았다. 게다가 확정급여 가입 증가분 대부분이 공적 부분이었다. 민간 부운(공식적으로 기금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정의)의 확정급여제도의 가입자 수(넓게)는 고작 5% 늘어났다. 확정기여 제도로 적용되는 민간 부운에서의 기업연금 가입자 비율은 1999년 40% 이하에서 2005년 50%로 증가하였다.

영국

민간 부문의 확정급여 기업연금 제도가 상당히 감소되었다. 1988-89년에는 가입률이 영국 전체 근로자의 23%에 달하다가 2002-03년에는 약 12%가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공공 부문의 확정급여 제도의 근로자 비율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가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확잠을 반영하여 19%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사적 기업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숫자가 1994-95년의 공적 제도의 적용 숫자보다 떨어졌음을 의미한다(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06a).

정부 보험국(Actuary's Department 2006)에 따르면, 민간 부문에서 확정급여 제도의 가입자 수가 2000년 4백8만 명에서 2005년에는 3백7만 명으로 떨어졌다. 민간 부문에서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제의 감소세는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 부문 확정급여제도의 가입자 42%가 신규 가입자에 가깝다. 2003-04년에만 25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폐쇄 제도(closed plans)를 떠났고(퇴직하기 위해 또는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개방 제도(open schemes)를 떠난 사람은 5만 명이다. 이 30만 명의 감소는 한 해 동안 전체 가입자의 14%가 탈퇴한 것에 해당한다.

미국

다른 어느 국가들 보다 미국에서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제도로 전환이 먼저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1980년까지 기업연금 제도의 32%가량이 확정기여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비율은 이후 15년간 두 배로 늘어나 1995년에 64%가 되었고 2003년에는 71%로 늘어났다(미국 노동부).

개인연금소득원의 구성의 변화

확정급여 제도를 통한 기업연금 제도에서 확정기여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단계에 도달하였다. 많은 근로자들이 아직도 확정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점점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많은 제도들이 신규 가입자들 받지 않기 때문에 확정급여 제도의 가입은 점차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처럼 확정급여 기업연금 제도가 지배적인 국가들에서는 정부 강제 또는 규정의 결과에 기인한 이러한 경향은, 산업 연관 합의의 결과인 준 강제 제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연금의 기본구조는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 고려하여 전망하는 것이다. 각 국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개인들이 위에서 논의한 확정급여 제도에 속하고 근로 기간 전제를 확정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정기여 연금제도에 중점을 둔다.[3]

2.3. 의무적 소득대체율과 연금저축의 부족분(savings gap)

그림 II.2.2 에서는 다시 한번 완전 경력의 평균소득자의 총 소득대체율의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소득의 31%인 영국부터 96%인 그리스까지의 범위를 보여준다(제1부 "총 소득대체율"을 볼 것). OECD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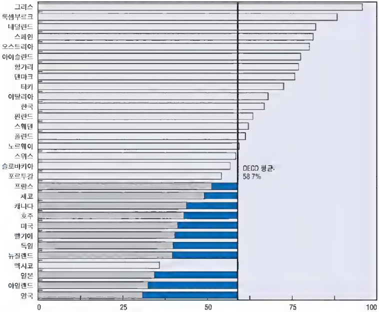
국의 평균 총 소득대체율은 거의 59%이다.

뒤에 나오는 분석은 의무적 평균 소득대체율 이하인, 그림 하단의 11개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전체적인 총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OECD 평균과 일치하게 하는데 필요한 임의적 개인연금 저축의 수준은 어떤가? 이것은 분명히 독단적인 목표이지만 주로 의무적 퇴직 제도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OECD 국가들의 상대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해 볼 수 있다. 국가별 의무 소득대체율과 OECD 평균과의 차이는 "연금저축 부족분"(retirement-savings gap)라고 부르기로 한다.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어권 6개 국가,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의 4개국 또한 일본만이 의무 총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 이하이다.[4]

영국의 경우 OECD 평균 수준까지 도달 하려면 전체적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8%가량 끌어 올려야 한다. 프랑스는 분석한 11개국 중에서 가장 작은 소득대체율 격차를 보이는데 7.5% 이다. 11개국 전체적으로 평균소득자의 경우 의무 소득대체율은 40.6%이고 평균적으로 퇴직저축 부족분은 18.2%이다(평균소득자의 OECD 평균 총 소득대체율 58.7%임).

그림 II.2.2. 퇴직저축 부족분

의무 연금 제도에서 평균소득자에 대한 총 소득대체율과 OECD평균 소득대체율의 차이



출처: OECD 연금모형

StatLink *http://dx.doi.org/10.1787/000033132132*

2.4. 의무적 소득대체율과 개인연금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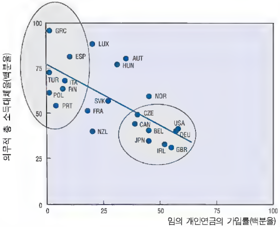
의무 연금제도를 임의적 개인 퇴직연금제도로 만듦으로서 더 낮아진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각 개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림 II.2.3은 표 II.2.1.과 그림 II.2.1.의 개인연금 적용범위의 증거와 그림 II.2.2에서 보여준 평균소득자들을 위한 의무 소득대체율 추계를 조합한 것이다.

첫째 집단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등 주로 남부 유럽 국가들과 핀란드[5], 폴란드의 집단으로 이들의 임의 개인연금의 적용 범위는 10% 이하이다. 이들 국가들은 평균소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가진다(비율에 기초한 기준). 이들 7개국의 평균 총 소득대체율은 71%으로 OECD는 전체로는 59% 이다.

두 번째 8개국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의무 소득대체율이 보다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져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집단의 절반이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라는 사실이다. 벨기에, 체코, 독일, 일본은 개인연금 가입과 의무 연금제도의 규모 사이의 관계가 비슷하다. 이들 8개국의 평균소득자에 대한 의무 소득대체율은 38% 정도이다.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영국 등 많은 정부들이 임의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증가시키려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 임의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50% 이상이 되지 않는 다면 의미가 없다. 국제적 경험에 미루어, 개인연금 강제의 유일한 방법은 개인연금 가입률을 절반 이상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다(표 II.2.1).

그림 II.2.3. 의무 연금의 추계치와 임의 개인연금 가입률의 평균



주: 회기분석 결과 가입률= 67.8(10.6) – 0.692(-.176) X 총 소득대체율 (괄호안은 표준오차). 둘다 1%에서 유의함. R2값은 0.434. 두 집단은 높은 의무적 소득대체율을 가진 국가들과 낮은 개인연금이 적용되는 국가들임. (본문 참조)
출처: 표 II 2.1에서 적용 자료는 기업 개인연금 제도를 의미함. OECD 연금모형에서 평균소득자들의 총 소득대체율
StatLink *http://dx.doi.org/10.1787/000060622602*

2.5. 퇴직저축 부족분의 보충방안

연구 대상이 된 11개 국가들에서 의무 연금제도에서 평균소득자들에 대한 총 소득대체율은 소득의 평균 40.6% 이다. 이들 국가들의 연금제도는, 표 II.2.2의 1열과 2열에서 나타난 것처럼 OECD의 개인 소득의 상대적 평균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개인연금 저축에 18.1%의 추가적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정급여 기업연금 제도가 서서히 소멸된다는 것은 이들 11개 국가들에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들이 주로 또는 유일하게 퇴직저축 부족분을 보충하는 확정기여 제도에 가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2.2에서는 OECD 평균 연금과 같은 소득대체율에 도달하기 위한 기여율(확정기여 계정에 투입되는 소득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각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2.의 3열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구 중인 11개 국가들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각기 다르다. 8개국에서 정상 연금연령이 65세이고 프랑스는 60세, 헝가리는 62세 그리고 미국에서는 67세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정상 연금연령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기본가정에 의하면, 각 개인들의 기여기간은 40년에서 47년 사이가 될 것이고, 표 II.2.2의 4열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표 II.2.2. 퇴직저축 부족분의 보충

필요 기여율의 계산

	(1)	(2)	(3)	(4)	(5)	(6)	(7)
	의무 GRR(%)	GRR 부족분(%)	연금수급 연령	기여연수	적립액	연금률	기여율(%)
호주	43.1	15.6	65	45	64.3	16.5	4.0
벨기에	40.4	18.3	65	45	64.3	16.4	4.7
캐나다	43.9	14.8	65	45	64.3	16.4	3.8
체코	49.1	9.6	63	43	60.4	16.6	2.6
프랑스	51.2	7.5	60	40	54.8	19.3	2.6
독일	39.9	18.8	65	45	64.3	16.0	4.7
아일랜드	32.5	26.2	65	45	64.3	15.7	6.4
일본	34.4	24.3	65	45	64.3	17.6	6.7
뉴질랜드	39.7	19.0	65	45	64.3	16.2	4.8
영국	30.8	27.9	65	45	64.3	16.0	6.9
미국	41.2	17.5	67	47	68.3	15.3	3.9

주: GRR= 총 소득대체율. 실질 투자 수익률은 연간 3.5로 가정. 완전 기여 경력은 20세에서부터 정상연금 수급연령까지로 정의함. 연금 산정은 세계은행/국제연합의 2040년의 사망률 추계를 사용함

출처: 소득대체율(1열과 2열)은 OECD연금모형에서 추출함. 일반적 연금 수급 연령에 대한 정보는 이 보고서의 각 국가별 연구를 참고
기여연수(4열)는 기본 가정에 의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인 20세와 정상연금수급연령의 단순한 차이임
적립연금액의 산정(5열)은 $K=e^{rt}\frac{e^{(g-r)T}-1}{g-r}$ 의 식에 의함. K는 연금액, g는 연간 실질 소득 성장률, r은 실질 투자 수익률, T는 기여기간임. 이 공식의 산출에 대하여는 Queisser와 Whitehouse(2006)의 박스 2에서 설명되었음.
연금률의 산정(6열)은 생존함수 si 에 의함. si는 $\prod_{i=R}^{100}(1-\lambda_i)$, Π는 산출 연산자, λ는 연령에 따른 사망률, I는 지수, R은 퇴직연령이다. 따라서 연금률(annuity factor) A는 $\sum_{i=R}^{100}S_i(1+z)^{-i}$가 된다. Queisser와 Whitehouse(2006)의 박스 2를 참조.

출처: 필요 기여율(7열)은 소득대체율 부족분(2열)를 적립 연금액(5열)으로 나누고 연금률(6열)을 곱합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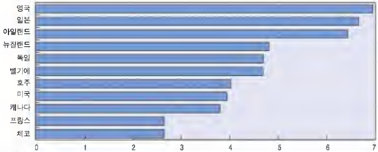
경우에는 45년이 될 것이다. 5열에서는 각 기여금의 단위에 대한 퇴직 시의 연금 적립금과 기여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적립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 45년의 기여기간을 가질 때 퇴직 시의 적립금액은 연간 기여금의 64.3배가 된다. 기여금의 45 단위와 연금의 적립금의 64.3 단위의 차이는 복리효과 때문이다. (표 II.2.2의 결과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기본 가정에 의한다: 연 2%의 실질 소득 상승률 및 연 3.5%의 실질 투가 수익률).

국가별 기대여명과 함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또한 연금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산점에는 "연금률(annuity factor)"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6열의 연금률은 연금 연령과 기대여명을 고려한, 연금 지급 흐름의 현재가치로 제시된다.

표 II.2.2.의 마지막 열은 퇴직저축 부족분을 줄이기 위해 평균소득자가 개인연금 제도에 투입해야하는 소득의 백분율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또한 그림 II.2.4.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퇴직 소득 부족분이 가장 크고 기여율을 가장 많이 올려야 한다. 일본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4퍼센트 포인트로 영국보다 낮지만 표 II.2.2.의 높은 연금률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대여명이 더 길다. 일본의 필요 기여율은 영국의 6.9%에 비해 6.7% 이다. 프랑스는 소득대체율 격차가 가장 낮지만 정상퇴직연령이 60세이고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기대여명이 높기 때문에 표 II.2.2에서 가장 높은 연금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65세 또는 그 이상의 정상 퇴직연령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 기여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체코의 필요 기여율은 2.6%이다.

그림 II.2.4. 퇴직저축 부족분의 보충

OECD 평균 총 소득대체율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평균소득자의 전체 이력 기여율



출처: OECD연금모형. 표 II.2.2를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000061850525

2.6. 기여밀도와 퇴직저축 부족분

한눈에 보는 연금에서 의무 연금제도를 비교하는 기본 가정에 의하면, 완전 경력 근로자는 노동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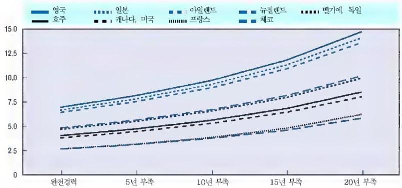
20세에 진입하고 각국에서 정한 정상연금수급 연령에 이르기 까지 내연 기여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론을 논한 장에서 설명하였다. 사람은 대개 임의 연금제도에 가입할지 일지의 여부와 얼마만큼의 기여금을 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 연금제도에서 근로자들은 제도의 선호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근로자들은 기여금의 액수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셋째, 육아와 실업을 위한 크레딧 제도를 통하여 의무 연금 제도는 노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적 개인연금 제도의 기본 가정으로서의 기여금의 완전 경력은 의무제도의 그것보다 비현실적이다.

그림 II.2.5.는 사람들의 기여 연수가 퇴직저축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즉, 전체적으로 의무 소득대체율에 임의 소득대체율을 더 하여 OECD 평균 의무 소득대체율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여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좌측에는 완전 기여이력(20세부터 정상 연금수급연령까지)의 필요 기여율을 나타내는데 위의 표 II.2.2.와 그림 II.2.4.에서 나온 결과들을 다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다음 단계는 기여이력에서 5년이 부족한 상황 즉, 25세 까지 개인연금 제도를 시작 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준다.[6] 그림의 중간에 10년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국의 필요 기여율은 경우 완전 이력의 7%에 비해 거의 10% 가까이 증가한다. 기여기간에서 20년이 부족하게 되면 퇴직저축 부족분의 보전을 위해서 기여율은 거의 15%가 되어야 한다. 아일랜드와 일본의 필요 기여율은 영국의 기여율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벨기에, 독일, 뉴질랜드의 경우, 완전 경력자의 필요 기여율은 약 4.6%이고 10년 부족의 경우 6.7%, 20년부족의 경우는 10%이다.

그림 II.2.5. 기여 밀도와 퇴직저축 부족분

기여 연수에 따라 OECD 평균 총 소득대체율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여율



주: 부족한 기여연수는 경력의 시작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출처: OECD 연금모형. 자세한 것은 표 II.2.2.의 주를 볼 것

StatLink *http://dx.doi.org/10.1787/000072758576*

2.7. 실질투자수익률과 퇴직저축의 부족분

퇴직기간동안 확정기여 연금의 가치는 기여금의 총액은 물론 결정적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 달려있다. 그림 II.2.6.에서는 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실질 수익률 3.5%와 관련하여, 실질 수익률이 변화함에 따라 퇴직저축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기여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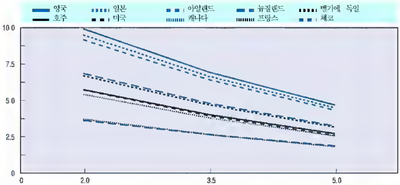
확정기여 연금의 소득대체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실질 수익률과 실질 임금상승률의 차이이다. 그림 II.2.6.의 분석에서는 실질 임금상승률이 2%로 일정하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였다. 그다음에 투자수익률이 2%로 실질 임금상승률과 같은 낮은 경우를 살펴보고 5%의 높은 투자 수익률의 경우도 함께 고려한다. 이 낮은 수익률 및 높은 수익률의 시나리오는 기본 가정 근처에서 대칭식을 이룬다.

아일랜드, 일본과 영국은 퇴직저축 부족분이 가장 커서 기본 가정에 의할 때 평균 6.7% 정도 이다. 투자수익률이 낮을 경우 자연적으로 개인은 기여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들이 퇴직소득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2%일 때 9.5%의 기여율이 필요하다. 반면에, 수익률이 높을 때는 상쇄에 필요한 개인연금 제도의 기여율은 낮아져서 필요한 기여율은 4.5% 가 된다.

이 단위의 반대편에는 체코와 프랑스가 있는데 이 국가들의 필요 기여율은 저 수익률일 때 3.7%, 기본 가정일 때 2.6%, 고 수익률일 때 1.8% 이다.

그림 II.2.6. 투자에 대한 수익률과 퇴직저축 부족분

투자 수익률에 따라 OECD 평균 총 소득대체율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기여율



출처: OECD 연금모형, 자세한 것은 표 II.2.2를 볼 것

StatLink *http://dx.doi.org/10.1787/000081617754*

2.8. 임의 개인연금을 포함한 총 소득대체율

임의 개인연금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기여할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기여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OECD 연금모형은 의무 연금 및 임의 연금 모두에서 전체적인 소득대체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11개국에서, 호주부터 모든 국가의 임의 연금 가입률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표 II.2.1.).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가입률은 20% 안쪽으로 이들 제도는 미래 퇴직소득 제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확정급여 제도, 일시금 및 혼합제도가 일반적이며 확정기여 제도는 적은 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기여율에 대한 자료는 가입률의 대한 정보보다 구하기가 더 어렵다. 표 II.2.1.에서 밝혀진 예비적 증거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기여율은 8.5%, 영국과 미국은 약 9%, 아일랜드는 10%였다. 체코의 평균 기여율은 2.8%로 보고되었다.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기가 더 어려웠다. 독일의 경우 기여율을 4%로 가정하였는데 이것이 적당한 공적 보조금을 끌어올 수 있는 최대치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벨기에의 기여율을 4.25%로 가정했는데 이는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인 1~5%의 상위에 해당한다(표 II.21.). 임의 개인연금 분석에서 가정한 기여율은 표 II.2.3.의 마지막 열에 나와 있다.

표 II.2.3.의 첫 번째 열은 특정 7개 국가의 평균소득자들에 대한 의무적 총 소득대체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소득대체율은 OECD 전반적인 평균이 59%인데 비해 영국 31%부터 체코 49%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표 II.2.3.의 다음 열은 임의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완전 경력의 기여기간(20세에서 국가별 일반 연금 연령까지)과 10년과 20년의 공백기간이 있는 기여이력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추정 기여율은 소득의 10%인 아일랜드이다. 완전 경력의 기여는 총 소득대체율을 32.5%에서 73.3%로 늘이게 되는 데 이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이다. 1010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즉, 30세에서 65세까지 기여하는 경우에도 의무 소득대체율에 임의 소득대체율을 더한 전체 소득대체율은 61.7%가 된다. 20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전체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진다.

표 II.2.3. 평균소득자에 대한 소득대체율

의무 연금 제도에 임의 연금 제도를 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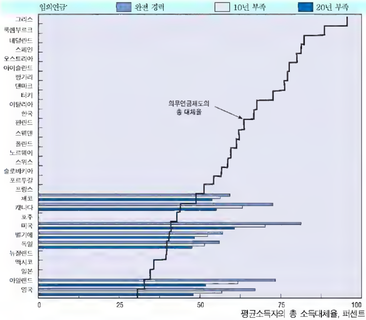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백분율)				가정된 소득대체율
	의무제도만	임의제도			
		20년 부족	10년 부족	완전 경력	
벨기에	40.4	48.3	52.3	57.1	4.25%
캐나다	43.9	55.0	63.2	72.6	8.5%
체코	49.1	53.7	56.3	59.3	2.8%
독일	39.9	47.5	51.4	56.0	4%
아일랜드	32.5	51.8	61.7	73.3	10%
영국	30.8	47.9	56.8	67.0	9%
미국	41.2	60.7	70.2	81.2	9%

주: 영국의 결과지는 각 개인들이 공적 연금 제도(예전에는 Serps-국가소득비례 연금제도, the state earning-related pension schemes, 현재는 S2P- 제2 국가 연금, sates second pension)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만약 각 개인들이 적용제외 된다면 전체적인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질 것인데 왜하면 S2P 급여는 적용제외에 따른 사회 보장 기여금의 리베이트를 위한 이익으로 선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OECD 연금모형

그림 II.2.7.은 임의 연금제도의 기술적 소득대체율과 나머지 OECD 국가들의 의무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림에서 검은 선은 그림 II.2.2.에서 나온 자료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다. 완전 경력의 임의 기여기간은 밝은 회색으로 표현 되었는데, 이들을 가진 국가들의 전체 소득대체율은 보다 큰 의무 연금 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전체 소득대체율에 비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 10년의 기여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벨기에와 독일의 전체적인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이다. 독일과 벨기에는 살펴본 다른 5개국보다 기여율이 더 낮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임의 연금제도는 개혁 이전과 개혁 이후 사이의 소득대체율 부족분을 보완한다.

그림 II.2.7. 의무 제도와 임의 제도에서 평균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



출처: OECD 연금모형

StatLink *http://dx.doi.org/10.1787/000101177147*

2.9.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

OECD의 대략 12개 국가에서 의무 연금 (대게는 공적 연금)제도의 목표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임의, 개인연금 제공을 위한 상당한 "공백"을 남겨 놓고 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개인연금이 넓게 적용되

고 있는데 대략 근로자의 절반정도가 개인연금에 기여하고 있다(구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에 의하면). 그러나 이것은 개인연금 적용에서 중요한 잠재적 격차를 남긴다. 많은 경우 이것은 퇴직저축 에 대한 요구가 고소득자들 또는 중상 소득자들에게 집중된다는 단순한 사실의 결과일 것이다. 저소득자들이 사회안전망 제도에서 적정한 퇴직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면,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적용률에 대한 자료가 생애 전반의 적용률에 대해 "일시적 포착"이라는 점과 기여금이 개인의 퇴직 소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 포착으로 적용률이 50%가 넘었다는 것이 노동인구의 절반이 그들의 전체 생애 노동기간동안 매년 기여금을 납부 했다는 것인지 또는 모든 노동인구가 생애 노동기간의 절반을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 정책의 함축적인 의미는 그 정책의 목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려는데 있는지 또는 사람들의 생애동안 더 많은 기여기간을 가지게 하려는 데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퇴직을 위한 임의 저축을 장려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세금우대를 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비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저축의 상당 부분이 세금우대 없이도 일어났기 때문이다. 세금 우대는 보다 고 소득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경향이 있다.

개인연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사람들의 자연적인 관성에 대한 행동 경제학적 직관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축이 필요하다는 "가벼운 강박관념"이 국가적인 수준으로 도입될 것인데 첫 번째로 뉴질랜드의 키위저축 제도(KiwiSaver plan)이다. 영국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개인연금 적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서 이러한 방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논의하고 있다.

OECD는 연금 정책의 이러한 혁신사례를 앞으로 출간될 한눈에 보는 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회원국들의 연금 정책의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주 석

1 이러한 개혁에 대하여는 Mattı와 Whitehouse (2007) 및 Whitehouse 외 (2007)를 볼 것
2 Gustman과 Steinmeier(1992) 및 Disney와 Whitehouse (1992)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변화를 각각 "폭주(stampede)" 라고 부른다
3 이 장의 부록에서는 확정급여제도의 몇몇 자료를 제시한다
4 멕시코의 경우, 상당한 비공식적 분야는 많은 근로자들이 의무 연금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의무적 개인별 계정에 기초한 새로운 연금 제도는 개혁 당시 노동시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구 연금제도에서 약속한 연금의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였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퇴직저축 부족분의 문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5. 핀란드에서는 상이한 직업군에 9개의 소득비례 연금 제도가 있는데 그중 4개는 민간 부문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잘 정비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정부기관의 일부로 간주되는 중앙 연금 보장 기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6.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리 이자는 경력의 말기 보다는 경력 초기에 기여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된다.(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의 임금상승률을 넘어서는 투자 수익률이 제공되었을 경우)

부 록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제도를 포함하는 총 소득대체율

이 장의 2.2 절에서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제도가 어떻게 확정기여 제도로 대체되는지 특히 민간부문 근로자들에게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임의적, 사용자 제공 연금 제도의 적용률을 가진 절반 이상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눈에 보는 연금의 초판에서 캐나다, 영국, 미국의 3개국에 대해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제도를 포함한 소득대체율 산정을 살펴보았다. 이 부록에서는 이들 3개국의 정보를 갱신하고 거기에 아일랜드의 정보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표 II.A2.1에서는 모형에 사용된 확정급여제도의 중요 변수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연금 제도의 변수와 규정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는 상이한 제도 사이에 주목할 만한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값을 취하는 것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표 II.A2.1. 확정급여 기업연금제도를 설명하는 변수와 규정들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소득 기준	최종 소득	최종 소득	최종 소득	최종 소득
연금지급률	2%	1.67%	1.25%	1.5%
통합	저 연금	기초 연금	적용제외	–
보전	없음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없음
연동	물가상승률의 절반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없음

주: 캐나다에서 통합은 소득에 대한 연금률이 1.3% 공적 연금의 상한선에 대해 일 때와 2% 이상일 경우를 의미한다. 아일랜드는 기초 연금 이상의 소득일 때만 확정급여 연금이 생긴다고 가정했다. 영국의 기업연금은 국가 소득비례 연금제도/제2국가연금 제도(Serps/S2P)에서 적용제외 된다고 가정했는데 각 개인들은 이러한 급여에 선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변수들은 적용제외가 허용된 최저 급여이다. 하단에 "보전"이라고 이름붙인 행은 퇴직 전에 직업을 바꾸는 조기 탈퇴자에 대한 급여의 조정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OECD (1995a)에 기초한 OECD 사무국,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2005),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2006), Mitchell과 Dykes (2000).

표 II.A2.2.는 연금 제도의 요소들에 흩어져 있는 기술적 소득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경우에, 근로자들은 경력의 전부가 기업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하며 4개 요소 모두 경력기간이 동등하다고 가정했다.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연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직업 변경시점과 퇴직 시점 사이에 최종

소득에 기초한 권리에 대한 보전이 불충분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기업연금제도의 평균소득 근로자는 공적 연금 제도의 정점에서 26%의 초과 소득대체율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초과 소득대체율의 일부가 목표제도의 감소된 지급급여액을 상쇄하여 소득 보전을 보장하게 된다.

영국의 결과는 국가 연금제도의 적용제외에 대한 규정에 의해 복잡해진다. 각 개인은 제2 국가연금제도에 의해 15.6%의 소득대체율을 잃게 되지만 기업연금제도에 의해 37.4%를 추가로 얻게 된다. 아일랜드의 기업연금은 영국보다 더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이는데 기초 연금에 의해 적용되는 소득 이상만 공적 제도의 급여와 통합되기 때문이다.

표 II.A2.2. 평균소득자의 기술적 소득대체율

의무 연금에 임의적 확정급여 기업연금제도를 더함

	목표제도	기초 연금 제도	공적 연금	기업연금	전체
캐나다	4.6	14.4	25.0		43.9
	0.0	14.4	25.0	26.4	65.8
아일랜드		32.5			32.5
		32.5		17.4	49.9
영국		15.2	15.6		30.8
		15.2		37.4	52.6
미국			41.2		41.2
			41.2	30.6	71.8

주: 영국의 기업연금 제도는 국가 연금 제도의 적용제외 라고 가정

출처: OECD 연금모형. OECD(2005), 제2부, "임의적, 기업연금"을 볼 것

참고문헌

Brown, R.L. and J. McDaid (2002),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Mortality", *North American Actuarial Journal*, Vol. 7, No. 2, pp. 24-43.

Copeland, C. (2006), "Retirement Plan Participation and Retirees' Perception of their Standard of Living", Issue Brief No. 289, Employee Benefits Research Institute, Washington DC.

Dang, TT., P. Antolin and H. Oxley (2001), "Fiscal Implications of Ageing: Projections of Age-related Spending", Working Paper No. 305, Economics Department, OECD, Pari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various year), *Private Pension Bulletin: Abstract of Form 5500 Annual Repor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6a), *Second Tier Pension Provision 1978/79 to 2003/04*, London.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6b), The Abstract of Statistics for Benefits,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Indices of Prices and Earnings:2005 edition* , London.

Disney, R.F. and E.R. Whitehouse (1992), *The Personal Pension Stampede*, Report No. 42, Institute of Fiscal Studies, London.

European Union, Economic Policy Committee(2005), "The 2005 Projections of Age-Related Expenditure (2004-2050) for EU-25 Member States: Underlying Assumption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European Economy*, Special Reports No. 4/2005.

European Union, Economic Policy Committee(2006), "The Impact of Ageing on Public Expenditure: Projection for EU-25 Member States on Pensions, Health Care, Long-term Care, Education and Unemployment Transfers (2004-2050)", European Economy, Special Reports No. 1/2006.

European Union,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5), *Privately Managed Pension Provision*, Brussels.

Fujisawa, R. and E.R. Whitehouse (2007), "The Role of Tax System in Old-Age Supprot: Cross-Country Evidenc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Paris. 출간예정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2005),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2004: *Twelfth Survey by the Government Actuary*, London.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2006),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2005: *Twelfth Survey by the Government Actuary*, London.

Gustman, A. and T. Steinmeier (1992), "The Stampede towards Defined Contribution Plans: Fact or Fiction?", *Industrial Relations*, Vol. 31, pp. 361-369.

Mattil, B. and E.R. Whitehouse (2007), "Individual Incentives to Switch between Public and Private Pension Scheme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Paris. 출간예정

McHale, J. (1999), "The Risk of Social Security Benefit Rule Changes: Some International Evidence", Working Paper No. 703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ss.

Mitchell, O.S. and E.I. Dykes (2000), "New Trends in Pension Benefit and Retirement Provisions", Working Paper No. 2000-1, Pension Research Council,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Morissette, R. and A. Johnson (2003), "Are Good Jobs Disappearing in Canada?", Research Paper No. 239, Analytical Studies Branch, Statistics Canada, Ottawa.

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 Funds (2005), *Annal Survey*, London.

OECD (1995a), *Private Pensions in OECD Countries: Canada*, Paris.

OECD (1995b), *The Tax/Benefits Position of Production Workers: 1991-1994*, Paris.

OECD (2001), *Taxing Wages: Income Tax,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Cash Family Benefits 1999-2000*, Paris.

OECD (2004), *OECD Classification and Glossary of Private Pensions*, Paris.

OECD (2005a), *Pensions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OECD (2006a), *Taxing Wages*, Paris.

OECD (2006b), *Live Longer, Work Longer*, Paris.

OECD (2007), *Benefits and Working Incentives*, Paris

Palacios, R.J. (2002), "Managing Public Pension Reserves Part II: Lessons from Five Recent OECD Initiatives", Pension Reform Primer seri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0219, World Bank, Washington, D.C.

Palacios, R.J. and M. Pallares-Miralles (2000), "International Patterns of Pension Provision", Pension Reform Primer serie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0009, World Bank, Washington, D.C.

Pension Board (various years), *Annual Report*, Dublin.

Queisser, M. and E.R. Whitehouse (2006), "Neutral or Fair? Actuarial Concepts and Pension-System Deign",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40, OECD, Paris.

Salomaki, A. (2006), "Public Pension Expenditure in the EPC and the European Commission Projections: An Analysis of the Projection Results", European Economy Econmic Paper No. 268,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Schembari, P. (2004), "Pension Plans in Canada", Pension and Wealth Research Paper No. 1, Statistics Canada, Ottawa.

Whiteford, P. and E.R. Whitehouse (2006), "Pension Challenges and Pension Reforms in OECD Countr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22, No.1, pp 78-94.

Whitehouse, E.R. (2000), "Administrative Charges for Funded Pensions: Measurement Concepts,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ssessment",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Studies*, Vol.120, No.3, pp. 311-361.

Whitehouse, E.R. (2001), "Administrative Charges for Funded Pensions: Comparison and Assessment of 13 Countries", *Private Pension Systems: Administrative Costs and Reforms, Private Pensions Series*, Vol. 3, OECD, Paris.

Whitehouse, E.R. (2006), *Pensions Panorama: Retirement-Income Systems in 53 Countries*, World Bank, Washington, DC.

Whitehouse, E.R. (2007a), "Pension Incentives to Retir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Paris. 출간예정

Whitehouse, E.R. (2007b), "Life-Expectancy Risk and Pensions: Who bears the Burden?",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Paris. 출간예정

Whitehouse, E.R., B. Mattil and R.J. Palacios (2007), "Rebalancing Retirement-Income Systems: The Role of Individual Choice under Mixed Public/Private Pension Provision", *Fiscal Studies*, 출간예정

제 3 부

국가별 연구 (Country Studies)

제3부에서는 30개 국가의 퇴직 소득 제도에 대한 자세한 기본 정보를 살펴본다. 여기에는 연금 수급연령과 기타 자격 요건들, 급여수급액 산정 규정, 조기 및 만기 퇴직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제2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특별 장에서 살펴보았던 개혁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국가별 연구는 각 국가별로 정형화된 그림과 표들로 요약하였다.





한 눈에 보는 연금

서 론

국가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작성원칙에 따르고 있다.

첫 번째는 연금제도의 규정과 특성을 상세히 기술한다.*

- 수급요건(Qualifying conditions) : 연금 수급(또는 퇴직)연령 및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 급여산정(Benefit calculation) : 소득비례제도, 강제적 사적연금제도 및 자원조사에 의한 제도 등 연금체계를 구성하는 각 제도의 규정에 의함.
- 조기 및 만기퇴직(Early and late retirement) : 근로자가 일반적인 연금 수급연령 이전에 퇴직할 경우와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과 조건들 (이것은 한눈에 보는 연금 첫 번째 판에서 제공된 정보의 연장임)
-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Pre-reform scenario) : 1990년대 이후 중대한 연금개혁을 단행했거나 작은 일련의 연금개혁을 이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을 다룬 장에서 설명했던 개혁 이전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규정들을 설명한다.

이번 판에서는 개인별 소득세와 사회 보장 기여금에 의한 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지면 관계상 다루지 않았다. 각국의 연금수급자들의 세제와 사회 보장 기여금 규정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눈에 보는 연금 (OECD, 2005) 초판과 Fujiswa 와 Whitehouse (2007)을 보라. 근로자에 대한 세제에 대한 정보는 Taxing Wages (OECD, 2006)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연금 변수와 최저 임금과 같은 기타 관련 계수의 값은 각국의 통화 및 평균소득의 비율로 표기한다. (OECD가 평균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최근의 변경사항에 대한 논의는 표 0.1.의 값과 관련된 본문을 볼 것)

결과 요약 표는 의무 연금 제도의 각 소득계층별로 상대연금액, 소득대체율, 연금자산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이 보고서의 제1부에서 다양한 지표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볼 것) 이들은 총(gross) 기준과 순(net) 기준

* 이 모형은 독신이며, 완전경력 근로자가 정상수급연령에 연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유의 할 것. 각 제도들은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간(예를 들어, 육아 또는 실업) 또는 결혼한 부부를 독신 단위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복잡한 규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기서 제시된 모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으로 표시하는데, 후자는 근로중일 때와 연금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다. 중대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표에서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에 따른 동일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연금개혁에 대한 특별 장을 볼 것)

결과 요약 그림은 총 상대연금액을 연금제도의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한다(그림의 첫 번째 행). 이들 제도에 대한 기술은 가능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별 특별한 제도는 국가별 연구 본문에 정리되어 있다. 차트의 범례에 표준 약어를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다.

- SA :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 목표제도(Targeted) : 자원조사에 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득보장제도.
- 최저연금제도(Minimum) : 소득비례연금제도 내의 최저연금.
- 기초연금제도(Basic) : 적용기간(coverage) 또는 거주기간(residency) 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
- 소득비례연금제도(Earnings-related) : 전통적인 확정급여제도 뿐만 아니라 명목계점 및 점수 제도를 포함한 모든 공적 소득비례연금제도.

그림의 두 번째 행에는 총 기준 및 순 기준 값으로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의 상대연금액 및 소득대체율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그림에서는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표준척도를 사용하여 소득대체율은 125%, 상대연금액은 평균소득의 2.5배까지 표기한다. 어떤 경우에 연금 급여가 이 최대치를 초과하면 이 수준으로 상한선을 정한다.

호 주

호주의 연금체계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적노령연금제도와 사용자 전액부담의 의무가입 기업연금인 퇴직연금 보장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두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의 제도는 주로 확정기여 제도이다.

수급요건

노령연금은 남성의 경우 65세부터 지급된다. 여성의 수급연령은 현재 62.5세로 2013년부터 점차 65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퇴직연금 보장제도의 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최저연령은 현재 55세로 2025년까지 6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급여산정

확정기여제도

퇴직연금보장제도는 1992년에 도입되었다. 산업별 기금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연금 또는 사용자를 위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기업연금제도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기여한다. 의무기여율은 2002~03 납세연도 이후 9%로 정해져 있다.

사용자는 월 AUD 450 이하(연 AUD 5,400)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내줄 필요가 없지만 이들 근로자들에 기여하는 것을 선택 할 수도 있다. (이 수준이 과거에 상향된 적이 없음을 참고). 퇴직연금보장이 적용되는 소득에도 한도가 있는데,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근로자 봉급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회계 연도 2003-04년의 각 분기당 한도는 30,560이고, 2004~05년의 각 분기당 한도는 32,180이다. 이 한도는 평균소득의 2 1/2배 정도로 물가에 연동된다.

퇴직연금보장의 청구단계(withdrawal stage)가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 확정급여 기업연금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확정기여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가입자는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이나 어떤 식의 소득흐름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확정급여제도가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서, 퇴직연금보장의 적립금을 물가연동의 종신연금(price-indexed annuity)으로 전환한다. 종신연금의 산정은 호주의 사망률을 기준으로 한다.

목표제도

노령연금의 가치는 격년으로 조정되고 격주로 지급된다. 2003년 9월, 최저 기본 연금액이 격주에 AUD

453 였는데, 2004년 3월 AUD 464로, 2004년 9월에는 AUD 471로 인상된다. (모든 값은 달러로 반올림되었다.) 이렇게 하면, 평균 과세연도의 연 급여액은 AUD 12,241이며, 이는 평균소득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노령연금은 다른 소득원천에서 나오는 연간소득이 "자유범위(free area)"라고 하는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된다. 이 금액은 매년 7월 조정되며, 2004년 상반기 AUD 120, 하반기 AUD 122이었다. (이 또한 격주로 산정함). 따라서 과세연도 2004년의 금액은 AUD 3,172 또는 평균소득의 6.5% 정도가 된다. 인출비율은 40%이다. 호주에는 또한 자산조사 제도(assets test)가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90% 이상은 자산조사보다는 소득조사에 의해 급여 감액의 영향을 받고 있다(그래서 본 모형에서는 소득조사가 결정적이라고 가정하였음). 연금수급자의 1/3 정도가 자산조사(means test)로 급여가 감액되고, 따라서 부분적으로 노령연금이다. 나머지 2/3의 연금 수급자는 최대노령연금을 수급한다.

노령연금액은 물가에 따라 인상되지만 필요한 경우 특별 추가인상으로 호주 방식으로 정의(이는 OECD 분석에서 사용된 소득 기준과는 약간 다른 개념)된 세전 남성의 총 평균 주당소득의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기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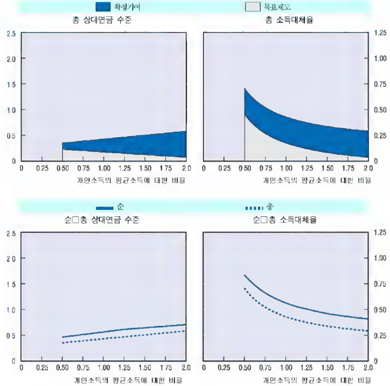
퇴직급여(퇴직보장급여를 포함)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은 현재, 55세(60세로 연장되는 중)에 퇴직하거나 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가능하다. 노령연금에는 조기 퇴직이 없다.

만기 퇴직

퇴직연금을 65세 이후로 연기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70세에 이르기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보장 제도의 규정에 의해 퇴직연금 기여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노령연금 또한 65세 이후로 연기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연금 보너스 제도는 노령연금 청구를 연기하고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적격 가입자들에게 1회에 한하여, 비과세 일시금을 지급한다. 연금 상여는 적격 가입자가 청구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때 지급된다. 청구자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고 법정 규정에 의해 최소한 12개월을 근로하여야 하며, 매년 최소 960 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금 상여금은 최장 5년까지 연금화 할 수 있다. 연금 상여금액은 연기하는 첫 번째 연도의 기본 연금수급액의 9.4% 이다. 상여액은 첫 2년 동안은 그 금액의 4배, 3년째는 9배, 4년째는 16배, 5년째는 25배가 된다. 최대 5년의 연금 상여는 최대 노령 연금수급액의 1년 치의 2.35배에 해당한다.

연금모형 결과: 호주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40.8	35.4	39.2	43.1	50.8	58.5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50.4	46.3	51.4	56.4	64.4	70.7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47.9	70.7	52.3	43.1	33.8	29.2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61.7	83.5	66.2	56.4	46.1	40.8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8.2	12.5	9.0	7.3	5.5	4.6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95*	*146*	*105*	*84*	*64*	*54*
순 연금자산	8.2	12.5	9.0	7.3	5.3	4.3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95*	*146*	*105*	*84*	*62*	*50*

오스트리아

연금 제도는 저소득 수급자를 위한 소득조사에 의한 보충 급여(top-up)를 가진 확정급여 공적 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수급요건

정상 수급연령은 남성은 65세이다. 여성의 경우 현재 60세이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될 것이다. 적용조건은 과거 30년 동안 180개월(15년) 또는 일생동안 300개월(25년)이다. 보완적으로 180개월 동안 기여기간이 있으면 (가입기간이 아니어도 됨) 가능하다. 가입월수는 납부월수(고용 또는 임의 납부) 또는 일정 기여만 납부하는 보충(즉, *Ersatzzeiten*이라 하는 인정월수) 월수가 있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현재 연금급여의 지급률은 매 가입기간에 대하여 소득의 1.96%(2006년:1.88%)이지만 2009년까지 1.78%로 서서히 줄어들 예정이다.

급여산정의 평균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짧은 연수의 최고 소득에서 2028년 40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 소득 상승률보다는 물가에 가까운 조정이지만 재평가 절차가 복잡하다. 새로운 재평가 절차가 아직 논의중에 있다. 여기에 의하면 완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의 소득을 소득상승률에 의하여 재평가한다.

기여는 평균소득의 약 147%인 EUR 48,300의 상한까지 납부한다.

최근에는 지급 연금을 중위수 연금까지 물가에 의해 조정하여, 그 이상의 연금에는 평균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절대 증가분과 같은 정액으로 증액하였다. 2006년에서 2009년 까지, 연금은 2004년의 1일 기여금의 상한선인 EUR 115 x 15 =1,725의 15배까지 완전히 물가에 연동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모형은 이런 사정이 계속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목표제도

독신은 월 EUR 653, 부부는 EUR 1,015의 최저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재산조사에 의한 부가급여(top-up, Ausgleichszulage)가 있으며, 연 14회 지급한다. 안전망 소득의 조정은 임의적으로, 모형에서는 평균소득에 의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조기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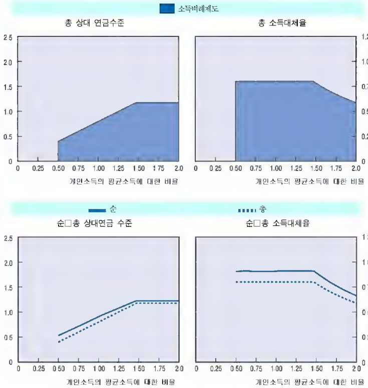
현재 남성은 62세부터 여성은 60세부터 퇴직이 가능한데, 37.5년간의 기여 또는 인정기간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2017년부터는 여성의 최저 조기 퇴직 연령 또한 62세로 늘어나게 된다. 65세 이전의 연금은 연금이 조기 청구된 년도에서 매년 4.2% 감액된다.

만기 퇴직

65세와 68세 사이에 퇴직하는 경우 연금액은 1년에 4.2% 증액되며 68세 이후에 증액은 없다. 따라서 연금 청구를 유예하고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는 근로자는 연금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근로와 연금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득에 제한이 있다. 65세 이하의 연금 수급자가 EUR 323.46(2005년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연금은 완전히 유예된다. 65세 이상이면 근로 소득과 연금 수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허용된다.

연금모형 결과. 오스트리아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지난 10년 동안, 1997년, 2000년, 그리고 2005년에 중요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연금모형에서는 1997년 이후 이러한 개혁들의 누적된 효과를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혁 이전의 연금지급률은 연간 2%였다. 소득 기준은 최고 15년의 소득으로 물가에 의해 재평가 되었다.

조기 퇴직연령은 남성의 경우, 2000년에 60세에서 2003년에 61.5세로 늘어났다. 여성은 55세에서 56.5세로 증가했다. 1997년의 개혁에서 매년 2%의 조기 퇴직 연금 감액제도가 도입되었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 5	0 75	1	1 5	2
총 상대 연금수준	68.1	40.0	60.1	60.1	117.7	117.7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79.3	53.2	71.5	90.9	122.8	122.8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8.1	80.1	80.1	80.1	78.5	58.8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90.6	90.4	90.6	90.9	89.2	66.4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2.0	12.2	12.2	11.7	10.8	8.1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40	142	142	135	125	94
순 연금자산	9.5	11.0	9.8	9.0	7.7	5.7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1.0	128	11.5	10.4	8.8	66

연금모형 결과: 오스트리아,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76.5	45.0	67.5	90.0	132.2	132.2
(평균소득의 백분율)	68.0	40.0	60.0	80.0	117.5	117.5
순 상대 연금수준	87.4	57.8	78.7	99.5	135.0	135.0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79.2	53.1	71.5	90.8	122.6	122.6
총 소득대체율	90.0	90.0	90.0	90.0	88.2	66.1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80.0	80.0	80.0	80.0	78.4	58.8
순 소득대체율	99.9	98.3	99.6	99.5	98.1	73.0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90.5	90.3	90.5	90.5	89.1	66.3
총 연금자산	13.7	13.7	13.7	13.7	13.4	10.1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6.4	16.4	16.4	16.4	16.1	12.1
순 연금자산	10.6	11.9	10.8	10.3	9.3	7.0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2.9	14.8	13.2	12.6	11.4	8.5

벨기에

연금 제도는 두개의 요소가 있는데 최저 연금제가 있는 소득비례 공적 제도와 자산조사 안전망이다.

수급요건

2004년 규정에 의하면 기여기간이 34년이면 60세에 연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2005년 부터는 35년으로 증가할 것이다. 완전경력자는 20세부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모형에서는 60세부터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남성의 정상 수급연령은 65세이다, 여성은 2004년 63세이나, 2006년에 64세, 2009년에는 65세가 된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독신 수급자의 완전 소득대체율은 60%이며, 피부양 배우자가 있으면 75%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연간 연금지급률은 60/45 = 1.33% 이다. 산정 소득은 생애 평균소득이며, 가입기간의 소득은 물가에 의해 재평가된다.

위의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완전 소득대체율(full replacement rate)로 지급되며, 기여기간이 이보다 적으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2004년의 경우, 연금 소득의 상한선은 EUR 41,564.11(평균소득의 117% 정도)였다.

연금의 지급은 특정 상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 인상된다. 복지 조정(adaptations to well-being)이라 하는 임의적 실질 증액도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증액이 최저 연금 또는 최장 지속 연금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2년 마다 모든 연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매년 한번 씩 지급될 수 있는 추가 지급("휴일" 및 "보충" 수당)이 있다. 이 금액은 독신 연금수급자에게는 EUR 505,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연금수급자에게는 EUR 631을 상한으로 한, 월간 연금액과 같은 금액이다.

최저연금제도

저소득 및/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연금수급을 위해 설계된 최저 연 크레딧(minimum annual credit)이 있다. EUR 13,956 (평균소득의 41% 정도에 해당)이하의 연소득이 이 수준으로 조정된다. 최저 크레딧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저 15년동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독신자인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EUR 11,959.67

의 유효 최저 연금이 주어지는데 평균소득의 34% 정도가 된다).

또한 최저 소득비례 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완전기여조건(full contribution condition)은 독신자는 EUR 10,191.95 (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EUR 12,735.92)이다. 독신자의 경우 이 금액은 평균소득의 29% 정도이다. 급여액은 완전경력 이하일 경우, 총 가입기간의 2/3 이상이면 이 최저금액의 비례가 된다. 다른 경우에 연금 급여액은 단순히 급여 산식의 적용을 통하여 얻어진다(이 때는 최저연금에 비례하는 "수준 상승"은 없게 될 것이다).

최저 연금은 특정 상품을 제외한 물가에 연동된다. 급여액은 이전 조정이후 누적 인플레이션이 특정 수준(2%)을 초과하는 경우 2%씩 증액된다.

수급자는 여기에 기술한 최저연금과 최저 연 크레딧에 따라 산정한 연금 중 많은 연금을 수령할 것이다.

목표제도

노령자를 위한 안전망 소득은 혼자 사는 수급자에 대해서 EUR 7,889.28(평균소득의 225)이며,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노인은 EUR 5,259.48 이다. 여기서의 연동 또한 특정 재화를 제외한 물가에 연동된다.

조기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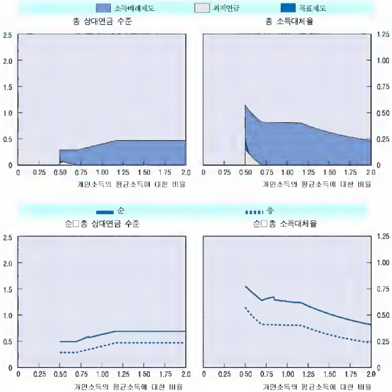
조기 퇴직은 60세부터 가능한데, 2004년에는 34년의 기여기간을 필요로 했고 2005년에는 35년으로 늘었다. 연금 산정에는 수리적 감액은 없지만 짧은 경력기간 때문에 불완전한 연금이 될 것이다. 조기 퇴직 연금과 근로 소득이 결합되는 기회를 제한하는 소득조사가 있다. 이 소득 조사는 정상 수급 연령 이후 적용되는 소득조사(아래 내용을 볼 것)보다 더 엄격하다.

만기 퇴직

정상 퇴직 연령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62세 이후 또는 기여기간이 44년 넘는 경우 상여 연금이 보장된다. 정상 퇴직연령 이후 근로를 하는 경우, 완전 연금을 얻기 위한 경력의 공백에 포함되는데 이용되거나 연금액을 연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데 산정에는 최근 45년간의 경력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제한선 이내에는 연금과 (정상 퇴직연령 이후)의 소득을 합치는 것이 가능하다. EUR 12,556.68(독신의 경우) 또는 EUR 17,267.48(피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는 연금 감액은 없을 것이다. 독신자의 경우 이 금액은 평균소득의 38%에 해당한다. 이 제한 이상이면, 연금액은 제한선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될 것이다. 실제 소득이 이 제한선보다 15%를 넘어가는 경우에 연금은 완전히 유예될 것이다.

연금모형 결과: 벨기에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평균소득의 백분율)*	34.6	28.6	30.7	40.4	47.0	47.0
순 상대 연금수준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56.9	49.3	52.8	63.0	69.2	69.2
총 소득대체율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40.7	57.3	40.9	40.4	31.3	23.5
순 소득대체율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64.4	77.3	65.5	63.0	51.1	40.7
총 연금자산	6.2	8.8	6.2	6.2	4.8	3.6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7.2*	*10.2*	*7.3*	*7.2*	*4.1*	*3.1*
순 연금자산	5.9	8.8	6.2	5.6	4.1	3.1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6.9*	*10.2*	*7.3*	*6.5*	*4.8*	*3.6*

캐나다

연금 제도는 소득조사에 의한(income-tested) 급여가 부가될 수 있는 보편적용 및 정률의 급여 그리고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제공한다.

수급요건

노령 보장(OAS) 기초연금은 거주기간에 따라 18세부터 거주기간 1년에 최대 40년까지 최대연금의 1/40씩 쌓인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소득비례 연금제도에 있어서, 완전연금에는 4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지만 1년의 가입으로도 수급권이 발생한다. 정상수급연령이 65세이지만 조기연금을 60세부터 청구할 수 있다.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2004년 노령보장 연금(OAS)의 평균 급여수준은 CAD 5,376이고, 완전 연금 수준은 CAD 5,592.75이다. 완전 연금은 평균 임금의 14.4% 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의 가치는 물가에 연동된다.

세제에 의해서 "환수(claw-back)"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득조사가 이 연금에 적용된다. 2004년의 기초연금은 연간 CAD 59,790을 초과하는 소득은 15%씩 감액된다. 이 기준은 평균소득의 154%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물가에 연동된다.

목표제도

보장성 소득 보조금(GIS)이 기초 OAS 연금에 추가된다. 결합된 급여액은 2004년에 최대 CAD 12,239.67였다. 독신자의 경우 기초 연금과 보조금 급여의 결합액은 평균소득의 31.4% 였다.

GIS는 기초 연금 이외의 소득에 의해 50%씩 감액된다. 목표 급여수준은 물가에 연동된다.

소득비례 연금제도

소득비례 연금과 급여는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CCP)/퀘벡연금제도(Qu□bec Pension Plan-QPP)에 의해 제공된다. CPP와 QPP는 크게 보아서 비슷한 급여를 제공한다. 제도는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5%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한다(최저 소득 연수의 15%를 제외함). 가입 중 소득은 경제전반의

소득에 따라 재평가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연금을 받으려면 40년의 기여기간이 있어야 하고 근로 이력이 짧으면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2004년 최대 소득비례 연금은 월 CAD 814.17 (평균소득의 1/4 정도) 이었다.

연소득 CAD 3,500 미만인 사람은 납부대상이 아니다. 기여금에 적용되는 상한은 2004년 CAD 40,500(평균소득의 96%) 이었다. 상한선은 평균소득에 따라 증가하지만, 기여금의 하한선은 명목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퇴직 이후 소득비례 연금의 가치는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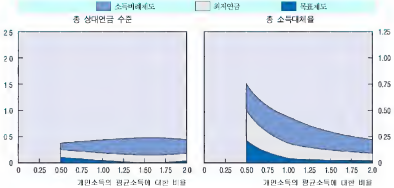
조기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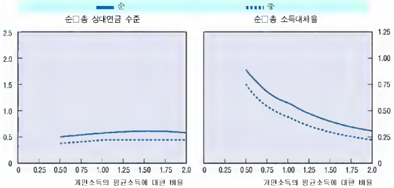
소득비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60세부터 조기 퇴직이 가능한데, 매년 6%의 감액률을 가진다. 다른 두 공적 연금(기초연금 및 자산조사제도)에서는 조기 퇴직이 불가능하다

만기 퇴직

65세 이후 소득비례연금에서는 연금의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의 매년 6%의 증액률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초 연금과 소득조사 급여는 유예할 수 없다. 후자의 소득 조사는 소득을 포함하며, 전자는 고소득에 대한 환수와 소득을 포함한다.

연금모형 결과: 캐나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평균소득의 백분율)*	42.1		40.8	43.9	44.4	44.4
순 상대 연금수준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55.3	50.1	53.9	57.4	58.0	58.0
총 소득대체율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49.5	75.4	54.4	43.9	29.6	22.2
순 소득대체율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62.8	89.2	68.3	57.4	40.0	30.8
총 연금자산	7.6	11.5	8.3	6.7	4.5	3.4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8.8*	*13.4*	*9.7*	*7.8*	*5.3*	*4.0*
순 연금자산	7.5	11.5	8.3	6.6	4.4	3.3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8.7*	*13.4*	*9.6*	*7.7*	*5.2*	*3.9*

체 코

공적 연금제도에 기초 요소(basic element)와 누진적인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소득비례요소가 있다. 또한, 이 제도에는 기초연금이 있다.

수급요건

표준 퇴직연령은 점차로 증가하여 1953년생 이후 남성은 63세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자녀가 있는 경우 59~63세이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함) 자녀가 없는 경우 63세이다. 최소한 25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지만 15년을 기여한 사람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액은 월 CZK 1,310이며, 소득의 8%에 해당한다. 기초급여에 대한 단독으로는 법정 연동장치는 없다. 다만, 지급되는 전체 연금은 최소한 물가와 실질 임금상승률 1/3의 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아래 참조).

소득비례연금제도

소득비례 연금제도에서 매 기여 기간 소득의 1.5%를 부여한다. 소득은 1985년으로부터 전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이지만 점차 30년에 이르게 될 것이다(2015년). 가입기간의 소득은 경제 전반 평균소득의 성장률로 재평가 된다.

산식은 누진적인데 첫째로 월 CZK 8,400은 100%, 여기서부터 CZK 20,500까지의 소득 30%, 그 이상 수준은 10%를 대체한다. 100% 대체하는 첫째 기준은 평균소득의 48%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지만, 두 번째 기준은 평균소득의 117%이다.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법적인 연동장치는 없지만, 이 기준들은 매년 변경되었다.

지급되는 연금에서 소득비례부분에 대한 특별한 법정 연동장치는 없다. 다만, 전체 연금 급여(정액 및 소득비례 부분)는 최소한 실질 임금상승률 최소 1/3 이상의 실질 성장률을 부가한 물가 인상률에 따라 조정한다.

최저연금제도

월간 최저 연금급여의 전체 가치는 CZK 2,170으로 최저소득비례 연금 CZK 770과 기초부분 CZK 1,400으로 이루어진다. 이 조합된 최저 연금은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동되며 그 가치는 평균소득의 12.4% 이다.

사회부조

노령자들은 일반적 사회부조 제도 및 이와 관련한 현물급여의 적용을 받는다. 독신 가구의 목표 안전망소득은 월 CZK 4,300 또는 평균소득의 26.4% 이다. 이는 개인적 필요 금액인 CZK 2,360에 가구의 필요금액 CZK 1,940을 더한 금액이다.

조기 퇴직

정상 연금연령에 도달하기 3년 전에 즉, 남성은 60세 여성은 56-60세에 25년의 기여기간을 가졌다면 퇴직할 수 있다. 기여 연수에 연금지급률을 곱한 전체 연금요소는 조기 퇴직의 매 90일 마다 0.9%씩(연간 3.6%) 영구적으로 감액된다. 이것은 완전 경력 근로자의 경우, 조기 퇴직에 따른 연금 수준(소득대체율이라기 보다는)의 감액으로 3.6/64.5 (15% 곱하기 43년) = 5.6% 에 해당하는 액수 이다.

만기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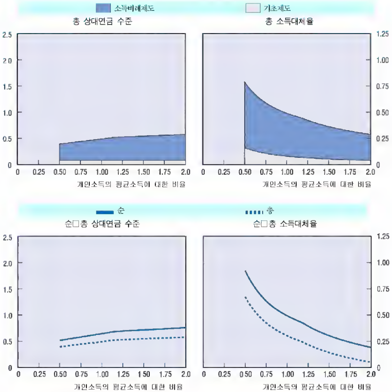
정상 연금수급연령을 넘어서 연금 청구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체 연금 요소(위의 조기 퇴직 부분을 볼 것)는 유예하는 기간의 매 90일 마다 1.5% 씩 늘어난다(연 6%). 퇴직의 유예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은 없다. 근로의 계속과 연금 수급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 읽을거리

Hemming, P. and E.R. Whitehouse (2006), :Assessing the 2005 Czech Proposals for Pension Reform", Working Paper No. 496, Economic Department, OECD, Paris.

OECD (2006), "Ensuring Fiscal Substainability: Assessing Recent Proposals for Pension Reform", Chapter 2 of *OECD Economic Surveys: Czech Republic*, OECD, Paris

연금모형 결과: 체코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46.2	39.4	44.3	49.1	54.6	57.8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60.6	51.7	58.1	64.4	71.6	75.8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54.3	78.8	59.0	49.1	36.4	28.9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70.3	98.8	75.6	64.4	49.3	40.2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8.9	13.0	9.7	8.1	6.0	4.8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0.5*	*15.3*	*11.4*	*9.5*	*7.0*	*5.6*
순 연금자산	8.9	13.0	9.7	8.1	6.0	4.8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0.5*	*15.3*	*11.4*	*9.5*	*7.0*	*5.6*

덴마크

공적 연금(*folkepension*)은 기초 부분과 소득조사 연금보충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자산조사 보충연금급여는 재정적으로 가장 불리한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된다. 개인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두 제도, ATP (덴마크 노동시장 보충연금-the Danish Labour Market Supplementary Pension)와 SP(특별 연금 저축 제도-the Special Pension saving scheme)가 있다. 여기에 필수 기업연금제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90%가량에 적용되는 집단 협상의 일부로 논의되었다.

수급요건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65세(1939. 7. 1. 이전 출생자는 67세)이며, 완전 국가노령연금은 40년의 거주가 요구된다. 기간이 짧으면(최소 3년 거주) 비례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노동시장 보충연금(ATP)과 특별 연금저축제도(SP)의 완전수급에는 완전경력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ATP 제도는 1964년에 도입되었고, SP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다.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완전한 기초연금액은 월 DKK 4,648 또는 연 DKK 55,776으로 평균소득의 1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득조사가 있는데 연 DKK 237,000(평균소득의 3/4 정도)를 초과하면 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이 수준 이상의 소득에는 30%씩 공제된다.

목표제도

완전 보충연금은 독신자의 경우, 월 DKK 4,679 또는 연 DKK 56,148 (평균소득의 17.7%)이다. 이 금액은 기초 연금액을 제외한 ATP, SP, 기업연금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원을 조사한다. 보충연금은 소득이 독신자의 경우 DKK 52,300 (평균소득의 16.5%)을 초과하면 공제된다. 독신의 공제율은 이 기준 이상의 소득의 30이다.

공적 노령연금과 결합되어 DKK 6,200(2005년)의 새로운 보충연금급여가 도입되었다. 보충 연금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1년에 한 번 지급된다. 급여는 자산조사 방식으로 극빈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목표제도이다.

공적 노령연금(기초연금과 연금보충액)과 보충 연금급여는 평균소득에 의해 매년 조정된다. 조정은 이전 2년 동안 인상된 임금 상승지수에 근거한다. 명목소득성장률이 연 2%를 초과하면 2% 이상의 소득 초과분에

대해 최대 0.3%를 사회지출 적립금(social-spending reserve)에 할당한다. 따라서 연금과 기타 사회급여의 연동은 적립금의 총합보다 낮게 증가하는 임금에 의한다.

기업연금제도

이 제도는 사회파트너 간에 합의된 완전적립 확정기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거의 보편적용이며, 기여는 보통 소득의 9%~17%에 있다. 2006년에 덴마크 근로자의 대부분에게 기여율이 10.8%로 올랐으며 모형에서는 이 비율을 기여율로 사용하였다. 급여는 보통 종신연금으로 인출된다. 현재의 기여 또는 새로운 제도에 가점된 이자율은 1.5%이다. 다만, 이 제도는 "이익참여(with-profit)" 기준으로 운영하여 연금이 자산의 수익률과 기금의 경험 사망률에 의하여 증가한다. 또한 많은 제도가 일시금을 허용한다. 2000년부터는 종신연금 산정에 남녀공통의 사망률 표를 사용한다.

확정기여제도 (ATP)

전형적으로, ATP제도는 이연 종신연금(deferred annuities)을 지급한다. 기여금은 사용자가 2/3, 근로자가 1/3씩 나누어 부담한다. 기여금의 액수는 근로시간을 반영한다. 근로시간에 따른 기여금 구간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	<39	39-77	78-116	>116
기여액, DKK/월, 2006년까지	0	74.55	149.10	223.65
기여액, DKK/월, 2006년부터	0	81.30	162.60	243.90

따라서 민간부분의 정규직 근로자는 2005년에 DKK 2,684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1996년부터 적용된 명목 금액이다. 기여금 액수는 사회 상대자들(social partners)이 단체 협상의 일부로 그 금액을 결정할 때 조정된다. 지난 20년간 기여금은 평균소득과 보조를 맞추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단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연금모형에서 기여금은 평균소득을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어쨌든 2006년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9%였다.

2002년까지 납부한 연령과 관계없이 매 기여금 DKK 396마다 67세부터 연금 급여 DKK 100을 수급한다. 여기에 적용된 이자율은 4.5% 정도였다, 2002년부터는 명목 이자율 1.5%가 가정되었다. ATP는 "이익참여(with-profit)" 제도로 실제로 수익률이 4.5% 와 1.5% 를 각각 초과하면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모형에서는 ATP 제도가 다른 OECD 국가의 적립식 확정기여 제도에서 가정한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을 가정한다.

ATP 제도는 재정 상태가 허락하는 한, 지급되는 연금과 수급권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상여금을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2002년 이전과 이후의 기여금 추정 이자율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모형에서는 물가에 완전히 연동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확정기여제도 (특별 연금제도, SP)

근로자, 자영자, 실업 및 질병 급여 수급자는 이 의무적 개별 퇴직저축제도에 소득의 1%를 납부한다. 최근에 투자는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5년부터 가입자는 기금관리자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에서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선은 없다. 급여는 65세에 지급된다. 65세에 계정 잔액이 DKK 15,000 미만이면 일시금이 지급된다. DKK 15,000과 DKK 120,000 사이에서는 첫해에 잔액의 1/10, 그 다음해에 1/9..... 이런 식으로 지급된다. 65세 계정 잔액이 DKK 120,000 이상이면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한 금액으로 매월 지급된다.

경제 정책적 협상의 일부로, SP제도의 기여금은 소비와 취업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중단되었다. 모형은 장기적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SP제도의 기여금이 재개된 것으로 가정한다.

조기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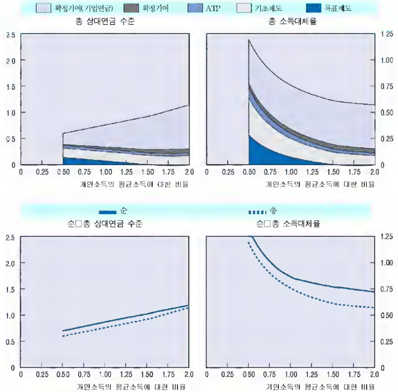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근로자들 중 주당 12시간에서 30시간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조기 퇴직제도가 있다. 수급자는 주당 최소 7시간 또는 평균 주당 노동시간의 1/4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부분 연금은 감액되는 매 시간만큼의 정액으로 계산된다. 2004년에 그 금액은 대략 시간당 DKK 71이었다. 1999년부터, 연금 수급자는 연금 공제의 대상이다.

조기 퇴직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정상 연금수급연령인 65세가 되면 일반적인 노령연금으로 전환된다.

만기 퇴직

공적 노령연금을 최대 10년까지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예되는 연금의 연간 증가분은 유예하는 기간에 대한 연금 수급 당시의 평균 기대여명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국제연합의 인구 추계에서 66세의 기대여명이 18.7년이다. 그렇다면, 65세부터 유예되는 1년의 증가분은 1/18.7 = 5.3% 가 된다.

연금모형 결과: 덴마크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평균소득의 백분율)*	71.0	59.8	67.8	75.8	91.9	114.2
순 상대 연금수준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81.6	69.9	78.3	86.7	102.2	118.6
총 소득대체율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83.66	119.6	90.4	75.8	61.3	57.1
순 소득대체율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94.1	132.7	101.6	86.7	77.0	72.2
총 연금자산	13.2	19.5	14.4	11.9	9.4	8.7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5.2*	*22.3*	*16.5*	*13.6*	*10.7*	*9.9*
순 연금자산	8.9	13.4	9.8	8.0	6.1	5.3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0.3*	*15.4*	*11.2*	*9.2*	*7.0*	*6.1*

핀란드

소득조사에 의한 국가 기초연금과 비슷한 규정의 직업군별 법정 소득비례 연금제도, 이렇게 두 층의 연금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은 민간부문 피고용자를 위한 제도(TEL)를 포함한다.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제도는 일부 미리 적립되지만 공공부문 제도는 (미래의 연금기여금 증가에 의한 수지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완충기금에 의하여) 부과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2005년 핀란드에서는 중요한 연금개혁이 도입되었다. 여기서 표현된 규정들은 모든 개혁들이 완전히 정착화 된 장기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수급요건

국민연금은 거주심사가 있고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연금소득에 따라 공제된다. 국민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완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성인으로서 거주기간이 40년이 되어야 하고 거주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지급된다. 국민연금의 조기 퇴직은 62세부터 가능하다.

소득비례 연금제도에서 퇴직 연령은 63세부터 68세까지 유동적이다(2005년부터). 또한 조기 퇴직은 62세부터 가능하며 연금은 68세 이후로 유예 할 수도 있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2005년부터 지급률은 18~52세는 표준소득의 1.5%, 53~62세는 1.9%, 63~67세는 4.5%가 된다. 20세부터 65세 퇴직 시까지 근로하는 완전경력 근로자의 경우, 총 생애지급률이 표준소득의 77.5%가 된다. 산정소득은 생애 평균소득에 기초한다. 연금 산정 시 피고용자의 연금 기여금은 공제 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전체 총소득과 연관되어 제시되었다는 것에 유의하라.

가입기간의 소득은 경제전반의 소득과 물가를 혼합한 것에 맞추어 재평가된다. 2005년부터 임금상승률은 80%, 물가는 20%의 가중치를 준다. 소득비례연금은 퇴직 이후에는 소득 20%, 물가상승률 80%의 산식을 사용하여 인상된다.

2010년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급여는 기대여명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게 될 것이다. 산정에는 시간차가 있는 사망률 자료를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2003-07년 자료의 결과에 기초한 연수와 2004-08년 평균의 자료를 비교한 데이터가 2010년에 사용된다. 2002년에서 2040년 사이 세계은행/국제연합의 사망률 추계는 65세의 기대여명이 16.8년에서 20.4년으로 증가될 것을 암시한다(성별 구별 없는 사망률 추산). 조정은 연간 2%의 할인율을 사용한 연금산정 공식을 취한다. 이 조정에 따르면 2040년까지 개혁 이전 규정에 의한 액수의

88.6%로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 계수(life expectancy coefficient)는 62세 연령의 각 동일집단(cohort)에서 계산된다.

기여금 하한이 없고 기여금과 표준소득에 상한이 없다. 그러나 연금 보험을 위한 최저 소득 제한은 있다.

최저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의 변수는 지방자치 단체마다 달라진다. 첫 번째 지자체 집단에서 2004년의 독신 연금수급자의 완전 기초연금의 월 급여는 EUR 496.38 이었고 두 번째 지자체 집단에서는 EUR 475.73이었는데 이는 평균소득의 5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소득과 일정 소액의 차이에 50%를 감액하는데 2004년의 소액은 연간 EUR 559였다. 다른 연금소득이 월 EUR 1,016.96 또는 EUR 975.58 을 초과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지자체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 모형에서는 국민연금을 위해 높은 값을 사용했음을 유의하라.

2005년부터는 63세 이후에 증가된 소득비례 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수급액을 산정할 때 제외될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 자산조사의 변수 및 지급 연금은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된다. 실제로는 각각 분리된 결정에 의해 증가한다. 모형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음에 유의하라.

조기 퇴직

국민연금 제도에서 조기퇴직은 62세부터 가능하다. 2005년부터는 65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은 매달 0.4%씩 영구적으로 감액된다.

소득비례 연금제도에서도 조기 퇴직은 62세부터 가능한데 63세까지 조기퇴직 급여는 매달 0.6%씩 감액된다. 63세 이후에는 급여 감액은 없다.

만기 퇴직

2004년까지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 연금은 연기된때부터 매달 0.6%씩 증액되었다.

2005년부터는 만기 퇴직에 따른 증액분은 소득비례 연금에서 68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매달 0.4% (연간 4.8%)로 줄어들었다. 63세에서 68세 사이에는 조정이 없는데 이 연령대에서 연금지급이 가속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과 근로소득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5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은 이후, 소득은 68세 까지 연간 1.5%의 비율로 추가적 연금수급권이 증가한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1990년 이후 다양한 연금 제도의 규정들이 몇 가지 변경되었는데 1990년 규정들에서 사용된 모형은 아래와 같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65세이다. 조기연금 수급연령은 60세이다.

개혁이전에 국민연금의 기초부분은 자산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1990년 금액은 매달 FIM 390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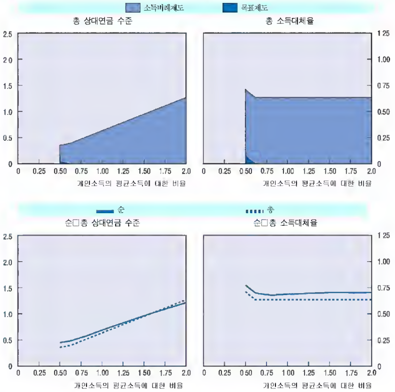
추가적 연금 소득조사 급여는 독신자의 경우 매달 FIM 1,824였다.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달라지는데 이 금액은 헬싱키의 금액이다.)

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은 채로 1994년에 적용되는 변수를 추산하기 위해 1990년 기초 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의 비율을 사용하여 1994년의 기초 연금과 연금 소득조사 연금 수준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는 각각 EUR 1,054 및 EUR 4,907이다.

소득조사제도는 1990년에 매 기여연도에 대하여 1.5%의 선형 지급률을 적용하였다. 소득비례제도의 진입 연령은 현재는 18세인 것에 반해, 23세였다(즉, 23세 이전엔 적립이 없음). 65세부터 적립이 없다.

지급 연금의 연동과 가입기간 소득의 재평가는 모두 소득과 물가 50:50의 비율에 의한다. 1996년부터, 연금 연동은 65세부터 소득 20%, 물가 80%로 변경되었다. 65세 이하의 과거 소득과 수급연금에 대해서는

연금모형 결과: 핀란드



50% 소득, 50% 물가의 연동이 유지되었다.

소득 기준은 각각의 직업에서 최종 4년의 소득중 중간 2년의 소득에 의한다(즉, 최종 4년 중 최고 및 최저 소득을 제외한다). 1993년 까지 피고용자의 연금 기여금은 없었다. 표준소득은 1996년까지 총 소득이었는데, 표준 소득은 피고용자 연금 기여금을 제외한 소득으로 다시 정의 되었다(위를 볼 것).

개혁 이전 소득비례제도의 조기 퇴직 감액은 매달 0.37%에서 0.5% (연 4.44%-6%)이었는데 수급자의 출생 연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조기 퇴직의 국민연금의 감액률은 매달 0.5%였다.

연금 유예에 따른 증액률은 소득비례연금 및 기초/국민연금 모두 매달 1%였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3.9	35.6	47.6	63.4	95.1	126.9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59.8	44.8	54.5	68.8	96.2	121.2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63.4	71.3	63.4	63.4	63.4	63.4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68.0	77.4	68.4	68.8	70.3	70.5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0.0	11.2	10.0	10.0	10.0	10.0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1.8*	*13.2*	*11.8*	*11.8*	*11.8*	*11.8*
순 연금자산	7.6	9.6	7.9	7.4	6.9	6.6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9.0*	*11.4*	*9.3*	*8.8*	*8.2*	*7.8*

연금모형 결과: 핀란드,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6.9	35.5	50.6	66.3	97.8	129.3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62.3	44.6	56.5	71.0	98.0	122.4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66.9	71.1	67.5	66.3	65.2	64.7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70.9	77.0	70.9	71.0	71.6	71.1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1.7	11.7	11.2	11.0	10.8	10.8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3.3*	*14.0*	*13.4*	*13.2*	*13.0*	*12.9*
순 연금자산	8.4	10.1	8.6	8.1	7.5	7.0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0.0*	*12.1*	*10.3*	*9.7*	*8.9*	*8.4*

프랑스

연금제도는 소득비례 공적 연금제도와 점수 제도에 의한 의무 기업연금제도가 있는 2층제도이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에는 최저연금도 있다.

수급요건

완전국가연금은 기여기간이 과거엔 37.5년이었는데 2008년에는 40년이 될 것이다. 2008년과 2012년 사이 기여기간은 점차적으로 41년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2012년 이후 최저 기여금은 기대여명에 따라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연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 기간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 될 것이다. 정상수급연령은 60세이다. 모형은 완전 경력이 20세부터 60세까지로 가정한다. 최저연금은 공적, 소득비례연금제도와 수급요건이 동일하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국가연금은 완전경력(40년의 기여기간이 될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후에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한다. 한 분기 미 기여기간 당 급여는 1.25%씩 감액되며 1년의 미 기여기간의 경우 5%씩 감액된다.

가입기간이 완전경력 이하인 경우 목표 소득대체율이 비례적으로, 그리고 빠진 기간 (또는 65세 이전 납부예외 연도 수) 만큼 감액된다.

소득 기준은 최고의 소득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물가에 따라 재평가 된다. 2008년 이후 부터는 소득이 25년 이상의 평균이 될 것이다. 현재는 20년 정도이다.

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연수의 제한과 물가와 보조를 맞추는 재평가 정책 때문에 프랑스 공적 연금제도에서의 소득대체율은 근로자의 경력 전체를 통하여 소득 구성의 시기에 아주 민감하다. 기본 가정 중에서 근로자의 경력에서 실질 소득성장률이 2% 지속된다는 것과 OECD 산정방법이 생애 재평가 평균소득을 참고소득으로 이용한다는 사실과 합치면 계산된 소득대체율은, 증액부분이 최초 경력의 절반에 주로 집중되는, 프랑스에서 관찰된 소득 상황에 따라 산정한 것보다 적다.

적용소득에 상한선이 있는데, 2004년에는 EUR 29,7124였다. 이는 대략 OECD 기준으로는 평균소득과 동일한 것이지만 국내적 기준으로는 평균소득의 142%가 된다. 지급 연금은 물가에 연동된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EUR 6,706 이다. 이것은 OECD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23% 에 해당한다.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38년의 기여기간(2008년에는 40년, 그 이후에는 더 높아짐)이 필요하고, 최저연금은 기간에 비례한다. 완전경력자는 공적연금급여 외에 강제 기업연금제도가 있어 노령 부조제도를 수급하기는 어렵다. 최저연금의 가치는 물가에 연동된다.

의무적 기업연금제도

ARRCO 제도는 민간부문 근로자 대다수에게 적용된다. “cadres(전문직, 관리직 근로자)”에는 다른 규정에 의해 AGIRC 제도에 적용되며, 다음 규정은 비전문직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실제로 기여가 많더라도 급여는 공적연금 제도의 상한제로 소득의 6%만 받는다. 공적연금제도 상한선 1~3배 사이에서 급여는 소득의 16%를 받는다. 따라서 ARRCO 상한선은 공적연금제도 상한선의 3배이며 EUR 89,136이다. (cadres를 위한 AGIRC 제도의 상한선은 없음에 유의).

매년 적립된 점수는 기여금의 값을 연금 점수의 비용으로 나눈다. 퇴직 시 적립된 점수는 점수 값으로 곱해서 연금급여로 전환된다. 2003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연금 점수의 값은 EUR 1.0698 이며, 2004년도의 연간 액수를 EUR 1.0839로 보았을 때, 2004년 4월부터는 EUR 1.0866 이었다. 연금 점수의 비용은 2004년도에 EUR 12.362였다.

연금점수의 비용과 가치의 인상은 사회파트너 간의 합의에 의한다. 2008년까지 유효한 현재의 합의에 의하면 연금점수 비용은 소득에 따라 그리고 연금점수 값은 물가에 따라 인상한다. 모형에서는 이 점수와 비용사이의 차이가 계속될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초기 가입기간을 물가에 재평가함으로써 급여가 소득에 의한 재평가보다 낮게 된다. 기본가정에 의하면 감액률은 소득 재평가로 연금수급액의 69%가 된다.

이 두 변수에 대한 인상정책이 지급 연금의 경로(여기서의 의미는 “연동”)와 수급사유 발생 시와 수급당시 사이의 연금수급액 차이(소득비례연금제도의 “재평가” 과정과 유사) 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제도

65세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소득이 있는데 연 EUR 7,053이다. 이 급여는 소득과 연동하여 조정되며 평균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3년 개혁에 의하여 2008년부터 최저임금 (OECD 기준 평균소득의 40% 정도에 해당) 완전경력자는 순 최저임금의 최소한 85%에 상당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 최저 전체소득에서 주당 35시간 순 최저임금의 85%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있다. 2004년 이 순 최저임금은 EUR 11,086 이었으며 2004년의 목표 최저 금액은 EUR 9,423이며, 이 정책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공적, 소득비례연금 제도의 50% 소득대체율 목표는 변경되지 않았다. 소득 기준은 확장되어 왔는데 최고

10년부터 최종적으로 최고 25년까지로 확장될 것이다. 가입기간의 소득에 대한 물가 재평가는 1987년에 도입되었으므로 개혁 이전과 개혁 이후의 시나리오 모두 물가 재평가를 가정한다. 37.5년에서 41년(또한 그 이상)으로 연장되는 수급요건 기여기간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퇴직 이후 지급연금의 연동은 1998년부터 물가에 의하게 되었다.

ARRCO 제도를 살펴보면, 이 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1996년에 있었다.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연금 점수 비용은 평균소득을 따라 인상되었고 연금점수 값은 물가에 따라 인상되었다. 1996년에 연금점수 비용은 EUR 9.30이었고 2004년에는 EUR 12.36 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33% 증가된 것이다. 점수 값은 1996년은 EUR 0.98을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2004년에는 11% 인상된 EUR 1.08이 되었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1996년에 생긴 연금 비용과 값에 대한 관계는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는데 2004년의 점수 값(개혁이 없다고 할 경우)은 EUR 1.08이 아니라 EUR 1.30이다. 개혁 이전의 경우, 연금 점수의 비용과 값은 모두 평균소득을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하였다.

조기 퇴직

조기 퇴직은 고용 기금(FNE)에서 관리하는 별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된다. 조기 퇴직은 57세부터, 그리고 노동 조건과 관련된 특정 환경의 경우 56세부터 가능하다. 소득대체율은 대략 80%정도이다. 정상 연금수급연령(또는 근로자가 완전 정규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65세까지의 연령)에서 개인은 공적 연금으로 전환된다. FNE 급여의 기간은 공적 연금에서 완전히 인정된다.

기업연금 제도에서도 조기 퇴직은 가능한데 종종 퇴직 연령이나 기여연수, 또는 둘 다 연계하여 감액된다. 40년 가입하고 60세에 퇴직하면 감액 없이 퇴직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이 40년에 모자라면, 연금은 아래의 표에 나온 것처럼 퇴직 연령 또는 미가입기간에 연계하여 보다 우호적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61세에 퇴직하면 연금은 완전 연금액의 83% 로 감액된다. 그러나 39년간 기여경력이 있고 61세에 퇴직하는 개인의 경우, 단지 1년의 미가입기간이 있으므로 감액은 96%에 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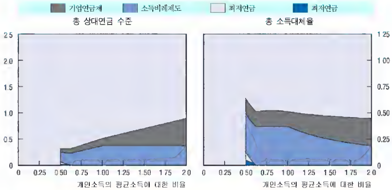
퇴직 연령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미가입 기간						5	4	3	2	1
계수	0.34	0.50	0.57	0.64	0.71	0.78	0.83	0.88	0.92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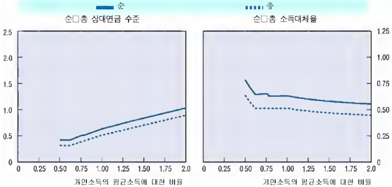
만기 퇴직

만약 가입자가 60세가 지나고도 계속 노동을 하고 완전 연금의 수급요건에 도달했다면(이는 40년의 가입기간이 될 것이며 2008년 이후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공적 연금제도에서는 매 추가되는 근로 연수마다 3%씩 급여를 증액한다. 퇴직을 유예하는 기간만큼 ARRCO 점수도 계속 누적된다.

노동과 연금수급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일상적 직업을 그만두면 지급된다.

연금모형 결과: 프랑스


기업연금제
소득비례제도
최저연금
최저연금
총 상대연금 수준
총 소득대체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순
총
순□총 상대연금 수준
순□총 소득대체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프랑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43.5	31.9	38.4	51.2	70.3	89.4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54.6	42.1	50.2	63.1	83.8	103.1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51.2	63.8	51.2	51.2	46.9	44.7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62.8	78.4	64.9	63.1	58.0	55.4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9.2	11.5	9.2	9.2	8.4	8.0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0.6*	*13.2*	*10.6*	*10.6*	*9.7*	*9.3*
순 연금자산	8.2	10.8	8.6	8.1	7.2	6.6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9.5*	*12.4*	*9.9*	*9.3*	*8.3*	*7.6*

연금모형 결과: 프랑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5.0	32.5	48.5	64.7	87.7	110.5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67.3	42.8	60.1	78.1	101.3	123.9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64.7	64.9	64.7	64.7	58.4	55.3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77.4	79.8	77.7	78.1	70.1	66.6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1.6	11.7	11.6	11.6	10.5	10.0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3.4*	*13.5*	*13.4*	*13.4*	*12.1*	*11.5*
순 연금자산	10.2	11.0	10.3	10.0	8.7	8.0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1.7*	*12.7*	*11.8*	*11.5*	*10.0*	*9.2*

독 일

법정 공적 연금 제도는 단일한 층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비례적인 부과방식(PAYG) 제도이다. 연금 산정은 연금 점수에 의한다. 저소득 연금수급자를 위한 사회부조 안전망이 있다.

수급요건

1952년에 태어났거나 그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5년 이상 65세부터, 35년 이상 63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5년 미만의 가입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평균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납부 1년에 1점을 부여한다. 적정 평균소득은 대략 국민 계정의 평균소득과 일치한다. 저소득이나 고소득에 대한 기여는 비례적으로 작거나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2004년 기준, 연소득 EUR 61,800까지 기여금이 부과된다. 상한선은 대략 적정 평균소득의 210%에 해당한다. 2004년의 적정 평균소득은 EUR 28,973이며 OECD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한다.

퇴직 시, 매년의 연금 점수를 합한다. 연금 점수의 합에 "연금점수 값(pension-point value)"을 곱하는데 2004년도 기준 그 금액은 EUR 313.56 이다. 연금점수 값은 새로 퇴직하는 사람과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자에게 유효하다. 이것은 매년 시작하는 점수의 총 임금에 따라 인상되는데 두 가지 추가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요소는 법정 연금 제도, 보조적 임의 기업연금 제도, 그리고 개인연금 제도의 기여율의 변화를 조합한 것이다. 기여율이 증가하면 연금 점수 값은 감소하여 조정될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소위 안정성 요소라는 것으로 연금 점수의 값을 제도의 의존율, 즉, 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여금 납부자의 비율과 연계한 것이다.

이들 요소는 연동 규정에 통합되었는데 이 연동규정은 현재 19.5%에서 22%인 기여율의 증가를 제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연금수급자/기여납부자 비율의 증가는 평균소득보다 낮은 연동을 가져올 것이다. 장기적으로 연금 점수 값의 조정은 평균소득의 증가율보다 18%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점수 및 연금 점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적정 평균소득은 구 동독지역(new Länder)에서 약간 다르다.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임금이 비슷하게 됨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사회부조

저소득자들을 위한 사회 부조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연금 수급자들에게도 적용된다. 2004년의 구 서독

지역(Western Länder)의 사회부조 금액은 주거비, 연료비를 위한 평균 급여를 포함하여 연간 EUR 7,932였으며 이는 평균소득의 1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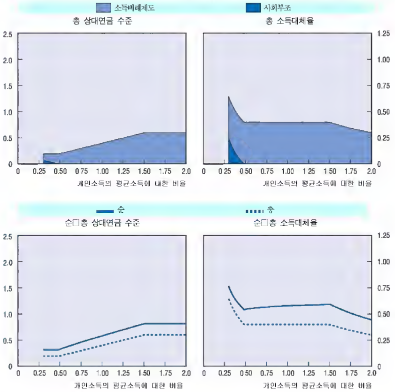
조기 퇴직

1952년 출생자나 그 이후 출생자들은 35년의 가입기간이 있으면 63세에, 퇴직 전 8년의 기여기간이 있으면 즉시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65세 이전에 퇴직하게 되면 급여는 조기 퇴직의 연간 3.6%의 감액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65세에 퇴직한 사람과 비교 할 때 연금수급액이 상당히 작아지는데 이는 2년의 무 근로 기간과 추가적인 연금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기 퇴직

65세 이후로 연금을 유예하면 추가 노동에 대하여 매년 6%의 증액을 받는다.

연금모형 결과: 독일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개혁이전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모형은 기여금 인상 조정과 안정성 요소를 배제한 연금 점수 값을 취했다. 개혁 전 시나리오에서는 연금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허용하는데 구 세제에서 연금의 완전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의 전환을 기본 가정으로 하였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33.9	20.0	29.9	39.9	59.9	60.1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51.0	32.0	46.0	58.0	81.2	81.5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39.9	39.9	39.9	39.9	39.9	30.0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57.3	53.4	56.6	58.0	59.2	44.4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7.2	7.2	7.2	7.2	7.2	5.5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8.6*	*8.6*	*8.6*	*8.6*	*8.6*	*6.5*
순 연금자산	6.2	6.6	6.3	6.0	5.6	4.2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7.3*	*7.8*	*7.4*	*7.0*	*6.6*	*4.9*

연금모형 결과: 독일,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41.4	24.4	36.5	48.7	73.1	73.3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67.5	39.7	59.6	79.5	119.2	119.6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48.7	48.7	48.7	48.7	48.7	36.7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75.9	66.3	73.4	79.5	86.9	65.2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8.8	8.8	8.8	8.8	8.8	6.7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0.5*	*10.5*	*10.5*	*10.5*	*10.5*	*7.9*
순 연금자산	8.2	8.2	8.2	8.2	8.2	6.1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9.6*	*9.6*	*9.6*	*9.6*	*9.6*	*7.3*

그리스

연금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진 소득비례 공적연금제도에 일련의 최저연금/사회안전망을 더하여 제공된다. 이 연금 제도는 1993년 이후 노동시장 진입자에게 적용된다.

수급요건

정상 연금 수급연령은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인데 1993년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65세로 동일하다. 수급연령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최저 가입기간 4,500일(15년 해당)이 필요하다. 가입기간 11,100일의 근무일수(37년)의 기록이 있는 근로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완전급여를 받고 퇴직할 수 있다. 힘들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피부양 또는 장애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혜택이 있다.

최저연금 수급에는 최소 15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 주요부분

1993년 이후 노동시장 진입자의 연금은 35년이 될 때까지 매 기여금 납부 년도 소득의 2%이다. 따라서 정상연금수급연령이나 좀 더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대 소득대체율은 70%이다. 65세 이후 67세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연간 3%의 지급률이 적용되고 67세 이후 근로에 대한 지급률은 없다(주어지는 최대의 소득대체율은 76%이다).

최대연금(이래를 볼 것)은 65세 이후 추가로 노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퇴직 전 최종 5년간의 평균이다. 가입기간의 소득은 국가 소득 정책에서 정의한 증가율에 맞추어 연금가치("재평가된")를 조정한다.

최대연금이 있는데 최대연금은 1991년의 1인당 GNP의 4배로 계산되고, 공무원 연금의 수준에 연계된다. 2004년 이러한 연금급여의 상한선이 월 EUR 2,346.67 이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완전경력 근로자에게 최대연금은 평균소득의 275%의 표준소득 상한과 같다.

지급 연금의 조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5년 동안 연금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왔는데, 딱 한번 모든 연금을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아래 참조). 1999~2001년 소액연금의 인상은 물가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나, 2002년에는 그보다 뒤쳐졌다. 최근의 급여 조정 관행의 일관성이 모자라서 연금자산의 계산은 물가상승률과의 연동을 기준으로 한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인플레이션	2.6%	3.2%	3.4%	3.6%	3.0%	2.9%
인상분	3.9%(<EUR 733)	4.0%	5.5%(<EUR 352)	3.5%(<EUR 400)	4%(<EUR 500)	5%(<EUR 500)
	3.4%(>EUR 733)		2.75%(<EUR 587)	1.5%(<EUR 620)	2%(<EUR 1,000)	3%(<EUR 1,000)
			1.4%(<EUR 880)	0.75%(<EUR 910)	0%(>EUR 1,000)	0%(>EUR 1,000)
			0%(>EUR 880)	0%(>EUR 910)		

모든 연금은 매년 14회 지급한다.

소득비례 연금제도 : 보충부분

완전 보충연금은 가입기간이 35년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중요 요소에서 소득 기준의 20%이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연금이 비례적으로 감액되고 선형으로 지급률이 0.57%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값은 35년 이상이 되면 매년(300일) 다섯 번 조정된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은 기혼,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70%로 정해져 있다. 2004년도에 이 금액이 월 EUR 419.48로 평균소득의 40% 정도에 해당된다. 이 금액은 소득정책의 일부로서 매년 조정된다.

소득조사에 의한 제도 : 사회연대급여

이 제도는 1996년 도입된 비기여, 재산조사에 의한 급여로 대부분의 제도(농부연금제도는 별도)하에서 저소득 수급자에게 60세부터 지급된다.

이 제도의 수급권은 EKAS 라고 하며 전체 순소득이 EUR 6,562.02 (2004년) 이하여야 한다. 총 과세소득은 EUR 7,655.71과 총 가구 과세소득 EUR 11,913.22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한소득	0	EUR 5,5976.14	EUR 6,210.52	EUR 6,366.73	EUR 6,562.02
월급여액	EUR 141.2	EUR 105.9	EUR 70.6	EUR 35.3	0

조기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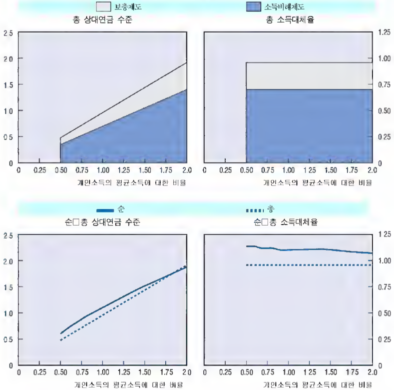
조기 퇴직은 가능하며 아래의 표에 나오는 것과 같이 감액의 대상이다. 조정률은 조기 퇴직의 매달 1/267이며 이는 연간 4.5% 에 해당한다.

연수	수급 연령	조건
15	65	감액 없음
15	60	감액 있음 (1/267)
35	55	감액 있음 (1/267)
37	무관	감액 없음

만기 퇴직

65세의 정상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인상된 지급률이 67세 까지 연금의 중요 요소에 적용되며 67세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엔 지급률이 없다(소득대체율의 최대치는 76%임). 65세 이후에는 최대 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충요소는 계속 늘어난다. 근로소득이 EUR 700 이하인 한 근로소득과 연금 수급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연금모형 결과: 그리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평균소득의 백분율)*	81.4	47.9	71.8	95.7	143.6	191.4
순 상대 연금수준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97.4	60.4	87.9	110.1	151.3	187.6
총 소득대체율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95.7	95.7	95.7	95.7	95.7	95.7
순 소득대체율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111.1	113.6	111.7	110.1	110.3	107.0
총 연금자산	14.3	14.3	14.3	14.3	14.3	14.3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6.6*	*16.6*	*16.6*	*16.6*	*16.6*	*16.6*
순 연금자산	13.6	14.3	13.9	13.0	11.9	11.1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5.7*	*16.5*	*16.0*	*15.1*	*13.8*	*12.8*

헝가리

새로운 제도는 소득비례 공적연금을 의무적 적립방식의 확정기여 제도와 통합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자와 개혁 당시 42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적용한다. 그 이상 연령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혼합제도와 완전 부과방식 공적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형에서는 근로자들이 혼합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급요건

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조정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60세와 55세에서) 62세로 같게 될 것이다. 남성은 2000년 62세에 도달했고, 여성은 2009년 말 62세가 될 것이다. 또한, 소득비례연금과 최저연금 모두에 대하여 가입기간 20년이 필요하다. 2009년이 시작되기 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부분연금을 받는데 가입기간 15년이 필요하다.

제도의 개혁은 1998년 6월에 도입되었다. 자발적으로 새로운, 혼합제도로 전환한 사람들은 2002년 말까지 완전 부과방식 제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더구나, 사적연기금에 가입하는 새로운 가입자의 의무는 2002년도에 정지되었다.

급여산정

소득비례 연금제도

혼합제도 가입자들의 지급률은 매 가입년도 소득의 1.22% 이다(아래 기여 상한 참조). 이것은 부과방식에만 적용되는 사람들의 지급률 1.65%와 비교된다.

소득기준은 현재 1998년부터의 소득이며 전체 생애 소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가입기간의 소득은 퇴직 2년 전의 시점의 경제전반 평균소득으로 재평가 된다. 퇴직 전 마지막 3년의 소득은 전체가 재평가되지 않는다.

1992년에 표준소득의 상한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의 상한선은 1일 기준으로 HUF 14,500 이었다. 이 금액은 OECD 기준(HUF 1,260,948)의 평균소득의 4.2배에 해당한다. 2002년부터는 소득과 연계하여 상한선도 증가하고 있다.

지급 연금은 2001년부터 임금과 물가에 절반씩 연동되었다.

현재 매년 추가로 2주간의 연금이 지급되는데 2006년부터는 1개월분 연금의 추가 지급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제도가 있는데 2004년의 최저연금은 월 HUF 23,200(총 평균소득의 16%, 순 평균소득의 25% 정도)이었다. 이 최저연금의 가치는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연동되는데, 즉 물가 반, 평균소득 반씩 연동된다. 최저연금은 2009년 폐지될 것이다.

확정기여제도

총 표준소득의 8% 정도가 선택적 또는 의무적으로 공사연금 혼합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해 2004년부터 적립방식제도로 전환된다. 이것은 2002년 6%, 2003년 7%로 증가되어 왔다. 적립된 원금을 퇴직 시 종신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신연금은 공적연금제도와 같은 지급연금의 혼합 연동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종신연금 산정에는 남녀 구별이 없는 생명표를 사용해야 한다.

조기 퇴직

현재 조기 퇴직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7세에 가능하다. 연금 수급연령이 62세로 동일해 지면, 조기 퇴직연령도 남성, 여성 모두 59세로 바뀌게 될 것이다. 2013년부터 조기 퇴직 연령은 60세로 연장된다.

현재 완전 연금에 대한 조기 퇴직은 38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한데, 2009년부터는 30년, 2013년부터는 41년으로 연장될 것이다. 현재 감액된 연금이 최소 가입기간 33년이면 지급되는데 2009년에는 37년으로 2013년에는 3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감액률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따라서 최대 감액은 5년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30%이다.

미가입기간	1	2	3	4	5
조기 퇴직에 따른 연간 감액률	1.2%	2.4%	3.6%	4.8%	6.0%

만기 퇴직

소득비례연금은 유예가 가능하다. 연금은 유예기간동안 매달 0.5% 씩 증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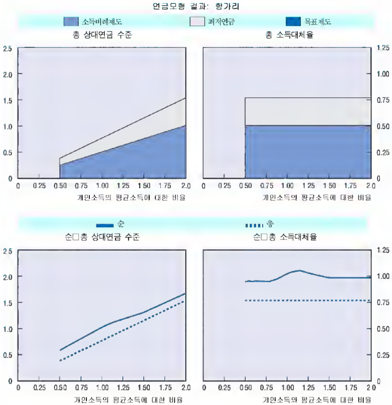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개혁이전의 제도는 순전히 소득비례형, 부과방식 제도에 기초했었다. 연금 급여는 기여연수에 따라 비선형적(non-linear)이었다. 15년의 가입기간동안 43%의 소득대체율을 가진 제도였고 25년간은 2%의 추가 소득대체율을, 그 다음 11년은 1%, 그 이후에는 연간 1.5%의 소득대체율이었다.

연금은 완전히 소득에 연동되었으나 지금은 소득/물가에 연동되고 있다(위를 참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제도에 최저연금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연금 연령이 늘어났다. 개혁안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1997년 입법화 되었고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연금은 순 소득에 기초해 산정되지만 1997년의 개혁으로 2013년부터는 총 소득에 따라 바뀌게 될 것이다.

■ 헝가리


연금모형 결과: 헝가리
소득비례제도
최저연금
목표제도
총 상대연금 수준
총 소득대체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순
총
순□총 상대연금 수준
순□총 소득대체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65.3	38.4	57.6	76.9	115.3	153.7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89.2	58.4	80.5	102.2	131.0	167.3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76.9	76.9	76.9	76.9	76.9	76.9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95.6	94.7	95.1	102.2	98.5	98.5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2.4	12.4	12.4	12.4	12.4	12.4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5.4*	*15.4*	*15.4*	*15.4*	*15.4*	*15.4*
순 연금자산	11.1	12.4	11.4	10.8	9.3	8.9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3.7*	*15.3*	*14.1*	*13.4*	*11.4*	*11.0*

연금모형 결과: 헝가리,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2.6	34.4	47.9	57.7	78.4	101.1
(평균소득의 백분율)	*48.0*	*31.4*	*43.7*	*52.7*	*71.6*	*92.2*
순 상대 연금수준	80.3	52.5	73.1	88.1	119.6	154.2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73.3*	*48.9*	*66.7*	*80.4*	*109.2*	*140.7*
총 소득대체율	61.9	68.9	63.9	57.7	52.3	50.5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56.5*	*62.8*	*58.3*	*52.7*	*47.2*	*46.1*
순 소득대체율	86.9	85.2	86.4	88.1	90.0	90.7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79.3*	*77.8*	*78.8*	*80.4*	*82.1*	*82.8*
총 연금자산	12.0	13.3	12.4	11.2	10.1	9.8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6.2*	*18.0*	*16.7*	*15.1*	*13.7*	*13.2*
순 연금자산	12.0	13.3	12.4	11.2	10.1	9.8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6.2*	*18.0*	*16.7*	*15.1*	*13.7*	*13.2*

아이슬란드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와 두 개의 소득조사에 의한 제도를 포함하여 3부분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혼합산식(주로 확정급여)의 강제적 기업연금제도가 있다.

수급요건

정상수급연령은 67세이며, 완전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은 거주기간 40년이 필요하다.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례적으로 감액되고 최저 3년의 거주가 필요하다. 민간부문 기업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연령은 67세이다.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완전 기초연금액은 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월 ISK 21,249 이다. 이 급여는 소득조사에 의하며, 소득(보충연금 외의 소득 포함)이 평균소득의 62%에 해당하는 ISK 1,716,200을 초과하면 감액하고 ISK 2,565,980 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소득조사는 근로소득 또는 사회부조 및 자본 소득의 50% 같은 비연금 소득에만 적용한다.

목표제도

두 번째 요소는 보충연금(pension supplement)이다. 이 급여의 최대금액은 독신의 경우 월 ISK 41,655 로 평균소득의 약 18%이다. 이 급여는 연 ISK 550,656 (평균소득의 20% 정도) 이상의 소득이면 공제한다. 다만, 기초연금이 보충연금의 금액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보충연금에서 소득조사에 의한 공제율은 45%이다.

마지막으로 최대 수급액 월 ISK 20,540, 평균소득 9% 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부가보충연금이 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소득의 2/3씩 공제하며 439,680의 수준에 이르면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수준은 공공부문 소득 하에서는(경제전반의 소득 상승률 표준 가정과 같은 것으로 가정)에 따라 조정된다.

의무 기업연금제도

사용자 제도는 의무가입이다. 법적으로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56%를 목표로 하여 매 기여기간 일 년에 지급률 1.4%가 된다. 16~70세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이 산정에 사용되는 소득 기준은 가입기간의 생애평균소득이 된다. 표준소득에는 상한이 없다. 과거의 소득은 물가인상률에 3.5% 이자율을 더하여

재평가 된다.

지급되는 기업연금은 법적으로 최소한 소비자물가에 따라 증액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 제도에서 위의 법정 최저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 보통 제도 안에 확정기여와 확정급여의 혼합방식을 취한다. 기업연금제도의 최저 기여율은 소득의 10%이다. 근로자가 4%, 사용자가 6%을 낸다. 위에서 기술한 법정급여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기여는 확정급여 수급액을 증가시키거나 개인계정으로 보내 확정기여 연금을 주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형에서는 강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보장이 되지 않는, 법정급여 외의 급여는 제외한다.

조기 퇴직

의무적 기업연금 제도에서 조기 퇴직은 기금에 따라, 기금 가입자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 부문에서 정상연금수급연령은 67세이고 62세부터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기연금이 청구되면 연금은 매년 7% 씩 감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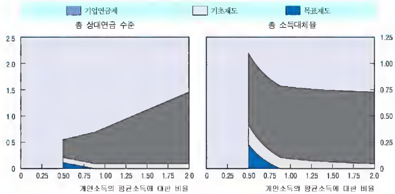
정상연금 수급연령 전에 기초연금 또는 목표 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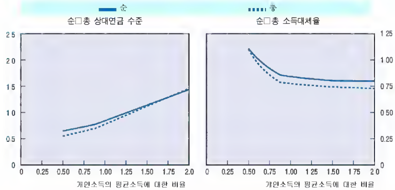
만기 퇴직

의무 기업연금 제도에서 근로자는 70세까지 퇴직을 미룰 수 있고 이 때 연금은 유예하는 매년 9% 씩 증가한다. 연금을 미루고 기여를 계속하는 근로자는 추가적 연금을 수급한다. 몇몇 경우에 총 기여기간은 32년으로 제한된다.

정상 연금 수급연령 이후로 기초연금이나 목표 연금을 유예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기초 연금은 소득조사의 대상이 되고(위를 볼 것), 목표제도는 소득을 포함해 모든 수입을 조사한다.

연금모형 결과: 아이슬란드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68.1	55.0	64.4	77.5	111.6	145.7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76.0	64.6	72.8	84.2	113.8	143.5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80.1	109.9	85.8	77.5	74.4	72.9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86.9	110.9	92.0	84.2	80.3	79.7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2.3	17.7	13.3	11.8	11.3	11.0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38*	*200*	*150*	*13.3*	*12.6*	*123*
순 연금자산	9.7	14.7	10.6	9.1	8.1	7.6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0.9*	*6*	*120*	*10.2*	*9.1*	*86*

아일랜드

공적 연금은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재산조사에 의한 연금이 있다. 임의 기업연금제도는 적용범위가 넓어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적용된다.

수급요건

노령 기여연금(old-age contributory pension)은 66세부터 지급되고, 퇴직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두 급여 모두 완전히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 기간 전체에 매년 평균 48주 납부 또는 크레딧이 필요하다. 연금의 가치는 불완전한 기여 이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노령 기여연금에는 최저 평균 연간 10주, 퇴직연금은 연간 24주의 기여가 필요하다. 또한 최저 전체 가입기간 260주(5년 완전 가입과 동일)도 있다.

재산조사에 의한 연금이 66세부터 지급된다.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2004년 노령 기여연금과 퇴직연금의 금액은 모두 주당 EUR 167.30 (연 53주 지급) 으로 평균소득의 30% 정도(OECD 기준의 평균소득)가 된다. 근로연령의 성인 피부양자에게는 EUR 111.50, 66세 이상 피부양자에게는 EUR 129.20의 추가 지급이 있다. 최근의 장기 계획 아래에서 기초 연금의 가치는 소득에 대해 고정되는데 이전 년도의 산업 평균소득의 34%가 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연금 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현물급여 수급권이 있다. 정부는 이들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건강급여를 제외하고 연 EUR 870 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모형에서는 현금 급여만을 다루고 현물급여는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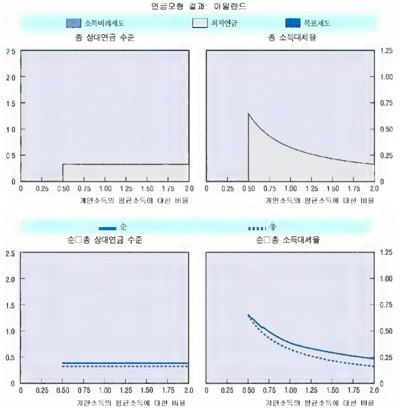
조기 퇴직

정상 수급연령 전에 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만기 퇴직

소득이 주당 EUR 38 이하이면 근로소득과 연금을 혼합할 수 있다(퇴직 연금에서). 그러나 노령 기여연금은 소득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연금을 유예하여 청구할 수 없다.

아일랜드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32.5	32.5	32.5	32.5	32.5	32.5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38.5	38.5	38.5	38.5	38.5	38.5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38.2	65.0	43.3	32.5	21.7	16.2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44.4	65.8	49.3	38.5	29.3	23.5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6.8	11.5	7.7	5.8	3.8	2.9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8.1	13.7	9.2	6.9	4.6	3.4
순 연금자산	6.8	11.5	7.7	5.8	3.8	2.9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8.1	13.7	9.2	6.9	4.6	3.4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새로운 연금제도는 명목계정을 기반으로 한다. 기여금의 수익률은 GDP 성장률과 관련된다. 퇴직 시에 축적된 명목 기금은 퇴직 시의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연금으로 전환된다. 이 제도는 1996년 이후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적용된다.

수급요건

2004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새로운 제도하의 정상 연금 수급연령은 2008년 이후로 여성 60세, 남성 65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기여 조건에 따라(아래를 볼 것) 조기 퇴직이 아직 가능하다.

기본 모형에서는 남성은 65세에 여성은 60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급여산정

소득비례 연금제도

이 명목계정 제도에서 근로자는 소득의 33%가 인정되고, 이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실제 기여율을 약간 상회한다. 다음으로 기여금은 퇴직년도까지 GDP 성장률 5년 이동평균에 따라 인상한다. 모든 국가들의 연금모형의 기본가정은 연간 실질 임금상승률이 2% 이다. 이탈리아 노동력의 감소추세를 근거로 일관된 가정은 실질 GDP 성장률이 연 1.6%라는 것이다.

최종 명목원금(notional capital)을 퇴직 당시 "전환 계수(transformation coefficient)" 에 곱한다. 계수는 연금을 청구하는 연령에 따라 변한다. 이 값은 여러 연령에서 사망률 통계(evidence of mortality rates at different ages)를 기준으로 하여 매 10년마다 검토된다. 사회 파트너(social partner)와 의회에서 논의되지만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산정에는 실질 이자율이 1.5% 라고 가정한다. ISTAT 2001의 인구통계 전망에 기초한 2036-40년(기본 추정치에 사용한 연도인 2040년이 포함됨)의 연금 보험추계는 다음과 같다.

퇴직 연령	57	58	59	60	61	62	63	64	65+
전환 계수 (transformation coefficient, %)	4.014	4.113	4.217	4.328	4.446	4.572	4.705	4.847	4.999

* 이탈리아는 이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의 적정성과 그에 따른 결과물의 비교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기본 가정에 사용된 노동시장 진입연령과 경력기간(각각 20세와 45년)은 EU 수준에서 수행된 비교연구에서 합의된 바와 다르고 또한 현재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현상과도 다르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해석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기여목적의 최저 소득은 주당 EUR 164.87 (평균소득의 39%)이다. 급여를 위한 최대 소득은 새로운 제도에서 연간 EUR 82,401, 또는 평균소득의 370%를 약간 넘는다.

지급 연금의 연동은 복잡한데, 연금액이 작으면 많은 경우 보다 더 관대해 지기 때문이다. 최저연금의 3배까지의 급여에 대해서 지급 연금은 물가에 완전히 연동된다. 이 기준은 2003년에 월간 EUR 1,206 (이는 2004년의 연금 지수로 사용됨), 2004년 EUR 1,236(2005년의 지수) 또는 경제전반의 평균소득의 약 2/3 이다. 최저연금의 3-4배 사이의 급여에 대해서 지급연금은 물가에 90%까지 연동된다. 이 기준 이상에서는 물가의 75%까지 연동된다. 고액의 연금의 각 구간마다 분리하여 이 지수가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하라.

사회부조제도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 즉 1996년 이후 진입자들에 대하여 최저 연금제도는 폐지되었다(아래를 볼 것). 사회부조 수준이하의 소득을 가진 연금 수급자들은 65세부터 자산조사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다. 보충급여를 포함하여 2004년의 사회부조 급여(*assegno sociale*)는 EUR 4,952. 70대에게는 EUR 6,967의 더 높은 급여가 있다. 이들은 각각 평균소득의 22%,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기 퇴직

2004년의 연금개혁은 새로운 제도에서 정상 연금수급연령을 2008년부터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정했다. 이는 과거 연금제도와 같은 정상연금수급연령이다. 최소한 35년의 기여를 한 남성은 60세에 퇴직할 수 있게 될 것이다(2008년 기준). 남성의 최저 퇴직연령은 2010년 61세부터 2014년 62세까지 순차적으로 연장될 것이다. 가입기간 40년 미만의 조기 퇴직에는 9개월 (평균, 2008년 기준)의 추가 대기기간이 있는데 제시된 조기 퇴직연령에 유효한 9개월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여성은 2015년까지 57세부터 조기 퇴직이 가능하도록 유지된다. 2016년부터는 여성도 60세 이전에는 퇴직할 수 없다.

그러나 40년의 기여기간이 있으면 언제라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기 퇴직을 받으려면 사회부조 연금의 최소한 1.2배 상당의 연금이 필요하다.

만기 퇴직

여성은 남성의 정상연금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근로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 65세에 퇴직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연령에 이르면 해고할 권리가 있다. 명목 계정제도에서 63세에 이를 때 까지 고용과 연금 수령을 동시에 할 수 없다. 63세가 지나면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따르는데 총 세금이 전체 연금과 같아질 때까지 최저 연금 이상의 소득에 대해 5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65세 이후로 연금 청구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한데 전환 계수(위를 볼 것)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급여는 오직 추가 기여금과 그에 따른 1년 또는 그 이상의 (명목) 자금의 축적에 의해 증가한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1996년 이후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람은 새로운 제도의 적용만 받는다. 개혁 당시 18년 이상의 기여기간이 있었던 사람은 구제도만 적용된다. 그 사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1995년 말까지는 구제도에 의한 수급권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 부터는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구제도는 확정급여형 급여로 매 기여 연도의 소득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1993년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과표가 다르다. 2004년의 과표는 아래와 같다.

과표구간 (하한선)	0	EUR 37,884	EUR 50,386	EUR 62,887	EUR 71,980
연금지급률	2.0%	1.6%	1.35%	1.10%	0.9%

구제도에 적용되는 소득에는 상한선이 없다.

이 제도의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1992년(남성 60세, 여성 55세)부터 점진적으로 연장되었는데 2000년 이후에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에 이르게 되었다. 연금 수급에는 20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하다(1992년까지는 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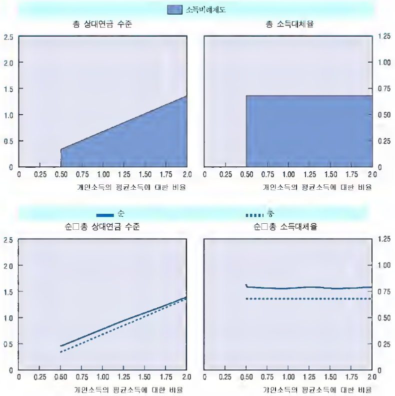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장자 연금(seniority pension-*pensione di anzianità*)"도 있다. 1992년의 개혁은 이들 요건들을 점차적으로 좀 더 강화시켰다. 그 결과, 2001-03년에 37년, 2004/05년은 38년, 2006/07년은 39년, 2008년 이후로는 40년의 가입기간이 있어야만 어떤 연령에서라도 퇴직할 수 있다. 35년의 가입기간이면 감액된 연금을 받는데 2001년에는 56세, 2002년에는 57세로 연장되었다. 아래에서 정한 것처럼 연령은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 연금은 60-64세의 사회부조(위에서 기술)보다 매달 EUR 50, 65-69세 보다 EUR 110가 더 많은 것으로 정해진다. 70세부터는 최저연금이 사회부조 급여와 같아진다.

구제도에서 37년의 가입기간이 있을 경우 58세부터 근로와 연금의 병행도 가능하였다.

■ 이탈리아

연금모형 결과: 이탈리아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7.7	34.0	51.0	67.9	101.9	135.9
(평균소득의 백분율)	44.9	26.4	39.6	52.8	79.2	105.6
순 상대 연금수준	68.1	46.7	61.6	77.9	108.8	139.6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55.8	36.3	50.7	63.4	88.7	111.9
총 소득대체율	67.9	67.9	67.9	67.9	67.9	67.9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52.8	52.8	52.8	52.8	52.8	52.8
순 소득대체율	77.9	81.8	78.2	77.9	78.1	79.3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63.8	63.6	64.4	63.4	63.7	63.5
총 연금자산	10.0	10.0	10.0	10.0	10.0	9.9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0.7	10.7	10.7	10.7	10.7	10.6
순 연금자산	8.6	10.0	8.8	8.4	7.7	7.4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9.7	10.7	10.0	9.4	8.7	8.2

연금모형 결과: 이탈리아,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76.5	45.0	67.5	90.0	135.0	174.9
(평균소득의 백분율)	68.0	40.0	60.0	80.0	120.0	155.5
순 상대 연금수준	86.1	55.9	77.5	98.6	138.1	170.8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78.0	51.1	70.3	89.5	124.7	155.1
총 소득대체율	90.0	90.0	90.0	90.0	90.0	87.5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80.0	80.0	80.0	80.0	80.0	77.7
순 소득대체율	98.5	97.8	98.4	98.6	99.2	97.0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89.2	89.5	89.2	89.5	89.5	88.1
총 연금자산	13.3	13.3	13.3	13.3	13.3	12.9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6.3	16.3	16.3	16.3	16.3	15.8
순 연금자산	10.9	12.0	11.1	10.6	9.9	9.2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3.6	15.1	13.8	13.2	12.3	11.5

일 본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2층 구조로, 기초 및 정액 제도와 소득비례 연금제도(후생연금제도)가 있다.

수급요건

최저 25년 가입기간에 65세부터 노령,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완전 기초 연금은 4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고 기여기간이 짧거나 긴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조정된다.

수급자가 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 최저 1개월의 가입기간이 있으면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을 더하여 지급된다. 연금 수급연령은 정액부분에 대하여는 60세에서 65세로 (2001년에서 2013년 사이 남성, 2006년에서 2018년 사이 여성)늘어나고 있으며, 소득비례제도에서 수급연령은 남성의 경우 2025년, 여성은 2030년에 60세에서 65세에 이르게 된다. 근로자 연금 제도의 소득비례 요소는 기여기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정된다.

급여산정

기초연금

2004년 완전 기초연금은 연간 JPY 794,500으로 평균소득의 16%에 상당한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소득비례 연금제도

후생연금은 정액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비례부분이다. 지급률은 생애평균소득의 0.75%이며 회계 연도 2002년까지 상여부분은 제외되었다. 회계 연도 2003년부터 상여금도 산정소득 기준에 포함되었다. 산정소득의 기준이 늘어남에 따라(상여금을 포함) 지급률은 소득의 0.5481%로 줄어들었다.

가입기간의 소득은 경제 전반의 순 소득에 따라 재평가된다.

소득의 상한선이 있는데, 평균소득의 175%에 상당하는 월 JPY 620,000으로 정해져 있다.

정액 급여는 출생연도에 달려있다. 2004년의 그 범위는 매 기여 월에 JPY 1,676에서 JPY 3,143이었다. 이는 62세와 64세 사이의 연금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데 이 급여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지급되는 후생연금은 물가에 연동된다.

적용제외 제도 (Contracting out)

최소 1,0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 스스로를 적용시키는 경우 소득비례연금의 일부 ("대체 부분, substitution part"이라고 함)을 "적용 제외"(contract out)할 수 있는데 대략 15%의 근로자가 이 제도에 참가하고 있다. 적용제외를 하려면 사용자가 공적 소득비례제도에서 지급하게 되는 급여의 최소 150% (2005년 이전에는 110%)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용제외에 필요한 연금의 산정은 생애 평균 명목 소득에 기초한다. 지급 시 연금의 연동과 과거 소득의 재평가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한다.

적용제외 제도의 기여율은 가입된 근로자들의 연령구조와 계리적 가정에 따라 정부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1996년까지 각 제도별로 그 기여율은 동일하였다. 2005년이래로 비율은 전체 급료의 2.4%에서 5%의 범위이다.

2001년부터 정부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 기업연금제도를 촉진해 왔다. 그 결과, 몇몇 후생연금기금이 없어졌다.

조기 퇴직

2001년 까지 60세에 후생연금을 "특례로 지급하는"것이 가능했다. 이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65세 이전에 완전 급여를 받는 퇴직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급여를 감액하는 조기 퇴직은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제도 둘 다 가능하다.

만기 퇴직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의 수령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를 하게 되면 연금급여는 매달 0.7%, 즉 연간 8.4% 증액된다. 연금 수급권은 65세를 넘어서 매년 기여하면 계속 증가하게 된다.

2006년부터 65세 이후에 근로와 연금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한데 총 소득(근로 소득과 연금소득)이 JPY 480,000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 제한을 넘기게 되면 넘어가는 부분의 절반이 완전 소득비례연금 지급에서 감액되지만 기초 연금은 전부 지급된다. 2007년 4월부터 감소분은 7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이지만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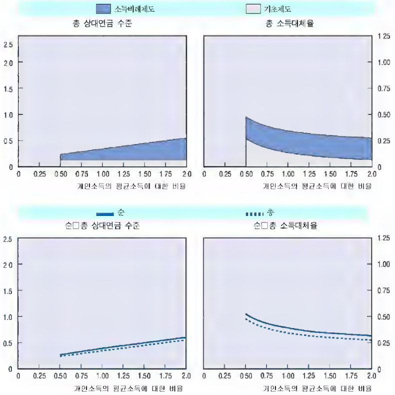
1994년, 후생연금제도의 정액 요소에 대한 연금연령의 연장(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이 도입되었다. 예전 제도의 재평가에 총소득의 증가율이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순 소득을 사용한다. 2000년에 소득비례요소의 연금 수급연령이 늘어났다. 기여의 기준은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늘어났지만 소득비례제도의 기여율은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의 개혁은 2004년에 있었다. 기여율은 2017년 이후에 고정될 것인데 소득비례연금 제도에서는

18.3% 이며 기초연금제도의 기여금은 JPY 16,900 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금액으로 고정될 것이다.

이 개혁은 기대여명 위험의 변경 추계를 연금산식에 넣는 것을 도입하였다. 약 20년간, 연금 수입과 연금 지출이 동일해지는 지점 까지 재평가에 특별 조정요소가 사용될 것이다. 이 조정요소는 공적 연금제도에서 3년 동안의 납부자수 평균 감소분과 기대여명의 증가율을 합한 것으로 계산된다. 기대여명 증가율은 0.3%의 정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요소는 순 소득 성장률(재평가를 위함)과 물가 인상률(연동을 위함)로부터 공제되지만, 부정적인 재평가와 연동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장치가 있다. 40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 수준에 한사람만 버는 부부의 경우 목표 최저 소득대체율은 50% 이다. 만약 조정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 제도는 정지되고 소득대체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도입될 것이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조정요소는 2025년까지 0.9%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제도는 순 소득에 따른 재평가와 물가인상률 연동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연금모형 결과: 일본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31.3	23.9	29.2	34.4	44.9	54.4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35.6	26.9	33.1	39.2	49.6	59.3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36.8	47.8	38.9	64.4	29.9	27.2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41.5	52.5	43.5	39.2	34.3	31.3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6.1	7.9	6.4	5.7	5.0	4.5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6.9*	*8.9*	*7.3*	*6.5*	*5.6*	*5.1*
순 연금자산	5.6	7.2	5.9	5.3	4.5	4.0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6.3*	*8.2*	*6.7*	*5.9*	*5.0*	*4.5*

연금모형 결과: 일본,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37.0	28.4	34.6	40.7	53.1	64.3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42.4	32.2	39.5	46.5	60.4	72.3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43.6	56.8	46.1	40.7	35.4	32.2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49.4	62.9	51.9	46.5	41.7	38.2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7.2	9.4	7.5	6.8	5.9	5.3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8.1	10.6	8.6	7.6	6.6	6.0
순 연금자산	6.7	8.7	7.1	6.3	5.4	4.9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7.6	9.8	8.0	7.1	6.1	5.5

한 국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누진적 산식을 가진 소득비례 제도로 급여는 개인별 소득과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 모두에 기초한다.

수급요건

현재 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하며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된다. 감액된 조기 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점삼 연금수급연령은 점차로 늘어나서 2033년에는 65세가 될 것이다. 모형에서는 장기 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조기 연금연령 또한 늘어나는 것(55세에서 60세로)으로 가정한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급여는 가입기간 초기 20년 동안 소득의 1.5%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급여는 추가 가입기간 1년당 5%씩 증가한다. 따라서 이 연금은 가입기간 40년에 소득 기준의 60%가 된다. 소득 기준은 임금상승률에 따라 재평가 된 개인별 생애 평균소득과 이전 3년간 측정되고 물가에 따라 재평가된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이다. 표준소득의 상한선은 월 KRW 3백6십만 이며 이는 평균소득의 1.6배에 해당한다.

급여의 최대수준은 개인 소득의 100% 이다. 퇴직 이후 급여는 물가에 연동된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은 기여금을 내지 않으며 60세 이상에서 급여의 증액도 없다.

조기 퇴직

정상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되면 조기퇴직 연령도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60세의 조기노령연금은 정상노령연금의 75%이다. 급여는 매년 5%씩 증가하며 64세에 퇴직하는 사람은 완전 노령연금의 95%를 받게 될 것이다.

만기 퇴직

만기 퇴직에 따른 추가 연금은 없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연금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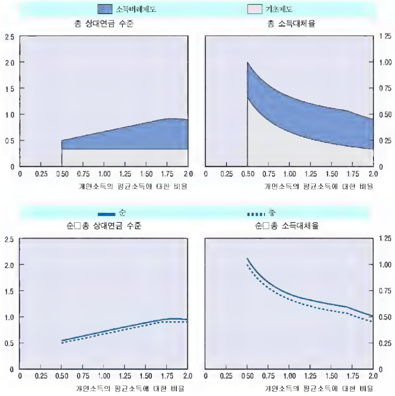
향후, 65세에서 69세 사이의 개인은 “재직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근로 소득과 연금 수급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에 지급되는 연금은 완전 노령연금의 50%가 될 것이며 급여는 근로연도 마다 연 10% 씩 증가한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현재 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처음 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로 유지되어 왔다. 처음에는 사업장 근로자만 연금의 적용을 받았으나 농촌지역의 자영업자와 도시지역의 자영업자도 각각 1995년과 1999년 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 1999년에 변수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감소되었다. 40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평균 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감소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연금 수급연령이 보다 낮았다(위를 볼 것).

연금모형 결과: 한국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61.8	50.0	58.4	66.8	83.7	90.2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66.6	54.2	63.1	71.8	88.5	94.4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72.7	99.9	77.9	66.8	55.8	45.1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77.8	106.1	83.1	71.8	61.9	50.7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0.1	13.9	10.8	9.3	7.8	6.3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2.1	16.6	12.9	11.1	9.3	7.5
순 연금자산	9.9	13.7	10.6	9.1	7.4	6.0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1.8	16.3	12.7	10.8	8.9	7.1

연금모형 결과: 한국,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64.1	50.0	60.6	69.3	86.8	93.5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66.9	54.3	65.3	74.3	91.3	97.4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75.4	100.0	80.7	69.3	57.9	46.8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80.5	106.2	86.0	74.3	63.9	52.4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2.4	16.5	13.3	11.4	9.5	7.7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4.6	19.4	15.6	13.4	11.2	9.1
순 연금자산	12.1	16.2	13.0	11.1	9.1	7.3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4.2	19.1	15.3	13.1	10.7	8.6

룩셈부르크

공 적 연금제도는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는 정액 요소와 소득비례요소,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 또한 최저연금제도도 있다.

수급요건

조기 연금은 40년(의무 또는 임의)동안 가입한 경우, 57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강제, 임의 또는 인정 가입기간 40년에 60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모형에서 20세부터 완전 가입이력을 가정하므로 근로자가 60세에 퇴직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가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65세이다(최소한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40년 가입을 전제로, 급여는 2004년에 (2003년 8월부터) 월 EUR 330 이며 이는 평균소득의 10% 정도에 해당된다. 불완전한 보험의 경우, 급여는 비례적으로 감액된다(공식적으로 2004년의 기초연금은 23.5%, EUR 1,403 임).

또한 "연말수당(end-of-year allowance)"으로써 40년 가입에 월 EUR 45가 추가된다. 이것은 40년 이하의 보험기간에 비례적으로 감액되는데 적용 매년에 월 EUR 1을 약간 상회한다. 연말수당은 명목소득(아래 참조)에 연동된다.

소득비례연금제도

소득비례 연금의 지급률은 연 1.85%이다. 산식에 사용하는 측정소득은 명목소득에 의해 재평가한 생애 평균소득이다.

지급률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높다. 55세 이후 매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률은 0.01 퍼센트 포인트 증가된다. 또한, 38년을 넘어서는 매 기여연수 마다 0.01 퍼센트 포인트의 추가 지급률이 발생된다. 최대 지급률은 연 2.05% 이다. 20세에 시작하여 완전경력을 가진다는 표준 가정 하에서 지급률은 2.01%이다.

2004년 (2003년 8월이후) 최대 연금은 월 EUR 5,847 (공식적으로 기준금액의 25/6로 지정됨)이었다. 이것

은 평균소득의 180%에 약간 못 미친다

급여는 (누적 인플레이션이 최저 2.5% 이면)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자동 연동된다. 여기에 실질임금 증가 조정분이 매 2년마다 참고 되어야만 한다. 최근에는 소득과 비슷하게 인상해왔고, 모형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은 (기준금액의 90%로 정의함) 월 EUR 1,263로 40년 가입을 조건으로 평균소득의 39%에 해당된다. 이것은 (의무, 임의 또는 인정가입) 최저 20년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하며, 기간이 짧으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사회부조제도

사회부조 안전망 수준은 독신 월 EUR 999이다.

조기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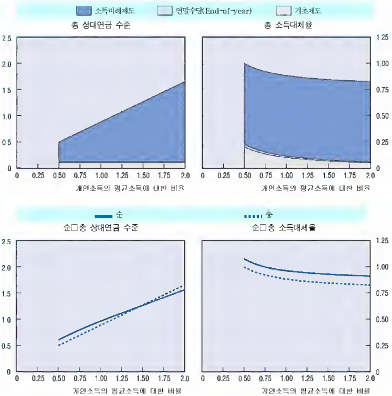
40년의 기여기간이 있으면 57세에, 40년의 납부 또는 인정기여기간이 있으면 60세에 퇴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기 퇴직자는 최저 사회 임금의 1/3을 넘지 않는 소득을 일정기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퇴직 전 프로그램들이 있다. 여기서 관련되는 것은 퇴직 전 연대(pre-retire solidarity)와 퇴직 전 적응(pre-retirement adaptation) 제도이다. 첫 번째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 당국에 등록된 구직자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조기 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도는 노령 근로자가 구조조정이나 파산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조기 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57세부터 60세의 연령에게 적용된다. 퇴직 전 급여는 첫해에는 이전 소득의 85%, 두 번째 해에는 80%, 세 번째 해에는 75%이다. 소득측정은 이전 3개월의 소득으로 한다.

만기 퇴직

연금은 퇴직연령인 65세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연령이후에는 연금급여에서 감액이 없이 근로와 연금급여를 병행 할 수 있다.

연금모형 결과: 룩셈부르크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평균소득의 백분율)	76.8	49.9	69.1	88.3	126.7	165.1
순 상대 연금수준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86.4	60.3	79.4	96.2	126.1	155.9
총 소득대체율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90.3	99.8	92.1	88.3	84.5	82.5
순 소득대체율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98.0	107.6	99.8	96.2	92.9	91.0
총 연금자산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9.7	21.8	20.1	19.3	18.4	18.0
순 연금자산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6.5	19.6	17.2	15.6	13.7	12.7

멕시코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자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적립식 및 사적으로 관리되는 확정기여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개인별 계정에 1997년 실질 최저임금의 5.5%를 기여한다. 또한 최저연금이 있다.

수급요건

정상퇴직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인데 1,250주(약 25년)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급여산정

적립방식 제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개인 계정에 소득의 총 6.275%를 기여하는데 여기에 소득의 0.225% 에 상당하는 정부 기여가 추가된다. 개인별 주택 계정(이 제도를 Infonavit 라고 함)에 추가 5%가 기여되는데 이 계정이 사용되지 않으면 퇴직계정으로 반환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모든 개인별 퇴직계정에 1997년 실질 최저임금의 5.5%를 기여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기초 연금적 요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액 기여금의 가치는 평균 소득의 1.4%와 동일하다.

산정에서는 개인이 정상수급연령에서 적립된 계정 잔액을 물가연동 종신연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한다. 연금지급률(annuity rate)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최저연금제도

최저연금은 1997년의 실질 최저임금과 같고 2002년의 평균 적용임금의 약 23%로 추정된다(2004년은 MXN 20,158). 실질 최저임금과의 연계는 최저연금이 사실상 물가에 연동됨을 의미한다.

조기 퇴직

남성과 여성 모두 60세에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조기 퇴직의 조건은 근로자가 고용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고 최소 1,250 주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한다(또는 납부예외 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25% 보다 적어야 한다)

노동시장을 영원히 떠나는 근로자들은 확정기여(Afore) 계정에서 전체 잔액을 인출할 수도 있다.

만기 퇴직

65세 이후로 연금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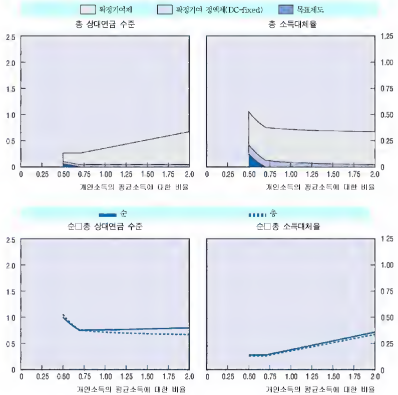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멕시코 연금 제도는 1999년에 개혁되었다. 개혁 시점에 구제도의 적용을 받던 모든 근로자들은 새로운 제도에 의한 급여와 구제도가 지급하고자 했던 급여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권이 없다.

구제도는 최초 10년의 가입기간동안 35%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매 기여연도에 대하여 소득의 1.25%를 추가로 지급하는 확정급여 제도이다. 과거의 소득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성장에 따라 재평가 되고 지급연금은 물가 인상률에 연동된다. 표준 소득의 상한은 MXN 288,000이다.

MXN 20,158 또는 평균소득의 26%의 최저 연금이 있는데 새로운 제도의 최저연금과 같다.

연금모형 결과: 멕시코



■ 멕시코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31.1	26.4	28	35.8	51.6	67.3
(평균소득의 백분율)	26.4	26.4	26.4	29.7	42.8	55.8
순 상대 연금수준	33.2	28.2	29.9	38.3	55.1	71.8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28.2	28.2	28.2	31.7	45.7	59.6
총 소득대체율	36.6	52.8	37.3	35.8	34.4	33.6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31.1	52.8	35.2	29.7	28.5	27.9
순 소득대체율	37.9	50.3	37.8	38.3	39.0	40.0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32.2	50.3	35.7	31.7	32.3	33.2
총 연금자산	4.9	7.0	5.0	4.8	4.6	4.5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5.0	8.5	5.6	4.8	4.6	4.5
순 연금자산	4.9	7.0	5.0	4.8	4.6	4.5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5.0	8.5	5.6	4.8	4.6	4.5

연금모형 결과: 멕시코,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61.6	36.3	54.4	72.5	108.8	145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65.8	38.7	58.1	77.4	116.1	154.8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72.5	72.5	72.5	72.5	72.5	72.5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75.1	69	73.5	77.4	82.2	86.2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4.2	14.2	14.2	14.2	14.2	14.2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7.4	17.4	17.4	17.4	17.4	17.4
순 연금자산	14.2	14.2	14.2	14.2	14.2	14.2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7.4	17.4	17.4	17.4	17.4	17.4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두 개의 주요 층으로 정액의 공적 연금제도와 소득비례 기업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금제도를 제공해야 할 법정 의무는 없지만 산업관계 협정에 의하여 91%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는 준 강제적이라고 생각된다.

수급요건

기초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가능하다. 또한 정상 퇴직연령은 보통 기업연금에서 65세이다. 모든 거주자들은 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독신의 경우 2004년의 총 연금 급여는 상반기에 EUR 921.28, 하반기에 EUR 920.12였다. 여기에 추가적인 공휴일 수당(holiday allowance)이 각각 EUR 43.78과 EUR 43.69있었다. 이는 연간 총 EUR 11,578 또는 평균소득의 31% 가 된다. 부부의 경우 전체 연간 급여는 EUR 15,906 이었다. 급여의 가치는 격년으로 인상되는 순 최저 임금에 연계된다.

기초 급여는 근로자가 살아있거나 국내에서 일하는 경우 매년 전체 금액의 2%씩 증가된다. 노령자를 위한 사회부조 제도도 있는데 그 금액은 순 기초연금과 동일하다.

기업연금제도

네덜란드에는 적용범위가 넓은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819개의 연금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101개가 산업별 제도이다. 특정 조건하의 네덜란드의 기업들은 자체 제도에서 동등한 급여를 제공하면 이들 제도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약 700여개의 단일 사용자 제도가 있다. 주로 작은 규모인 기타 40,500의 사용자들(2002년 기준)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을 제공한다.

이 기금들에서 피고용인의 대략 97% 정도가 확정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피고용인들은 확정기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확정급여 제도의 가입자들의 3/4정도에 대하여 소득측정은 생애 평균소득에 따르고 13% 정도는 최종 소득에 기초한다. 나머지는 두 제도의 혼합(9%)이거나 액수가 고정되어 있다(1%).

기업연금제도의 가입연령에 대한 법정요건은 없다. 2004년에 절반을 약간 넘는 수의 근로자가 가입연령

이 없는 제도에, 8% 가 16~20세, 18%가 21~24세, 거의 19%가 25세를 진입연령으로 하는 제도에 가입되었다.

대부분의 최종 소득제도가 매년의 가입기간에 소득의 1.75%를 지급하는데 이는 40년 가입이력에 소득대체율 70%를 의미한다. 대다수 평균소득제도의 경우 지급률은 가입된 1년당 1.75%에서 2% 로 달라진다.

가입 중 소득 재평가에 대한 법정 요건이 없고, 관행적으로 사회파트너 간의 약정에 따라 제도 간에 차이가 있다. 평균 임금제도에서 대략 80%의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소득은 평균소득 상승률에 의해 재평가되지만 약 6%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인플레이션율이 사용된다. 모형에서는 평균소득에 따라 재평가하는 평균 임금제도를 가정한다.

법적으로 연금인상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금이 지급 시에 통상 연간 기준으로 인상된다. 지급되는 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각각의 산업에서의 임금상승률에 연동되고 약 27%의 연금이 물가에 연동된다.

직업을 바꿀 때 연금 수급권은 전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퇴직 전에 제도를 떠나는 사람들의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연금 지급 시 연동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동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있다. 수급권 부여(vesting) 기간이 아주 짧다.

표준 소득에는 상한이 없다.

지급 시 급여는 비록 법적인 인상 요건은 없지만, 전형적으로 소득에 연동된다(가입자의 절반이상이 그런 제도의 적용을 받음).

기업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와 통합되어 있다. 현재의 세금 규정은 공적연금, 개인연금 모두 65세에 최종 소득의 100%까지 급여의 최대치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도가 최종소득의 70%를 목표 총 소득대체율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적 급여는 특권액(franchise amount)만큼 감액된다. 2004년 평균 특권액은 EUR 14,500이었고 이는 완전 기초연금보다 많은 금액이다.

조기 퇴직

기초연금은 65세 이전에 지급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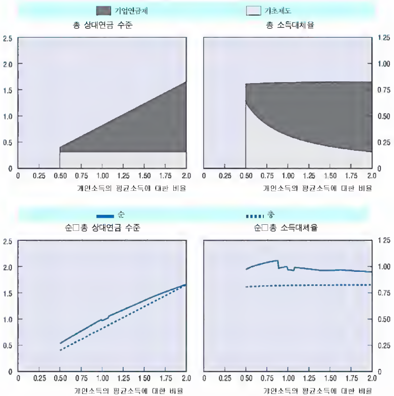
Vervroegde Uitterding (VUT)라고 하는 별도의 조기 퇴직 프로그램이 있는데 60세부터 65세 사이의 연령에게 연금 전 급여를 지급한다. 소득대체율은 제도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약 80% 정도이다. 수급요건은 회사와 부서마다 매우 다르다. 2004년에 정부와 사회 파트너(social partners)는 노령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늘이기 위해 VUT 제도의 세금우대 정책을 종결하는 것에 합의했다.

만기 퇴직

기초 노령연금 제도를 65세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중 기초연금의 수급은 가능하다.

기업연금 제도별로 연금 유예 규정이 달라진다. 기업연금제도와 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몇몇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연금을 받으면서 같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계속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규제는 없다.

연금모형 결과: 네덜란드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평균소득의 백분율)*	69.4	40.3	61.1	81.9	123.5	165.2
순 상대 연금수준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86.1	53.4	76.9	96.8	135.0	165.1
총 소득대체율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81.7	80.6	81.5	81.9	82.4	82.6
순 소득대체율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105.3	97.0	103.8	96.8	96.3	94.8
총 연금자산	15.1	14.9	15	15.1	15.2	15.2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7.6*	*17.4*	*17.6*	*17.7*	*17.8*	*17.8*
순 연금자산	12.8	13.5	13.0	12.3	11.4	10.5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5.0*	*15.8*	*15.2*	*14.3*	*13.3*	*12.3*

뉴질랜드

공적연금 제도는 거주기간 조사에 의한 정액 연금제도이다. 기업연금제도가 있는데 1990년 이래로 가입률이 고용인력의 22.6%에서 14.1%로 낮아졌다.

수급요건

20세 이후 10년을 거주하여(50세 이후 5년을 포함) 65세에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200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단독 주거 독신자의 연금은 주당 총 NZD 301.33 이었다. 2003/04년에는 NZD 296.49였다. 과세연도 2004년의 전체 연금은 NZD 15,670이었고 이는 평균임금의 약 40% 이다.

공적연금의 금액은 물가에 연동되는데 소득의 변화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이 주어진다. 부부의 경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제외한 연금액이 조사된 세후 주당 소득의 65%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72.5%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독신의 세후 연금액은 부부의 세후 연금액의 65%(단독 주거)와 60% (공동 주거)로 정해진다. 만약 물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조사된 세후 주당 소득보다 낮게 된다면 후자 (세후 주당 소득)가 유효한 연동지수가 된다.

조기 퇴직

정상연금수급연령인 60세 이전에 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만기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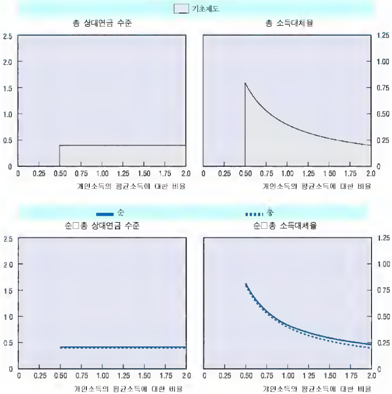
공적 연금의 수령할 때 반드시 퇴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금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격 연령에 도달하여 공적 연금을 청구할 의무는 없는 반면, 청구를 유예하는데 이익을 주는 것도 없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개혁으로 연금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

연금모형 결과: 뉴질랜드


기초제도
총 상대연금 수준
총 소득대체율
2.5
2.0
1.5
1.0
0.5
0
0.25
0.50
0.75
1.00
1.25
1.50
1.75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순
총
순□총 상대연금 수준
순□총 소득대체율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39.7	39.7	39.7	39.7	39.7	39.7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41.7	41.7	41.7	41.7	41.7	41.7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46.8	79.5	53	39.7	26.5	19.9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48.6	81.4	54.9	41.7	29.4	23.2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8.6	14.7	9.8	7.4	4.9	3.7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0.2	17.3	11.5	8.6	5.8	4.3
순 연금자산	7.1	12.2	8.1	6.1	4.1	3.0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8.4	14.3	9.5	7.1	4.8	3.6

연금모형 결과: 뉴질랜드,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39.7	39.7	39.7	39.7	39.7	39.7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41.7	41.7	41.7	41.7	41.7	41.7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46.8	79.5	53.0	39.7	26.5	19.9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48.6*	*81.4*	*54.9*	*41.7*	*29.4*	*23.2*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0.5	17.9	11.9	8.9	6	4.5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2.2*	*20.8*	*13.9*	*10.4*	*6.9*	*5.2*
순 연금자산	8.7	14.8	9.8	7.4	4.9	3.7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0.1*	*17.2*	*11.5*	*8.6*	*5.7*	*4.3*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공적 연금은 정액의 기초연금, 특별 보조연금 및 소득비례(보충적)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연금의 일부는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자산조사 제도이다. 최근에 의무적 기업연금이 도입되었다.

수급요건

현재의 공적 제도는 1967년에 도입되었다. 완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0년의 소득기간이 필요한데 첫 번째 노령연금 수급자 집단에서 그 보험기간을 채우는 사람은 2007년에 퇴직한다. 그러나 최저연금과 193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수급요건은 보다 높은 급여를 허용하기 위해 완화되었다.

정상 연금수급연령은 67세이다. 기초연금과 특별보충연금으로 구성된 최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7세부터 67세(포함) 사이의 기간에 최소한 3년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40년의 장기 거주기간 이후에는 완전 급여가 보장된다. 보충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연간 연금점수를 얻어야 한다. 40년 거주기간 이후에 완전연금이 보장된다. 두 급여 모두 보험가입기간이 짧으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국민 보험 제도의 수많은 급여들은 2004년에 평균 NOK 58,139 이었던 기본연금액 G (basic amount, G)와 관련하여 결정된다. 독신자의 완전 기초연금은 기본연금액과 같다. 이는 평균소득의 18%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기본연금액의 연동은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2년부터 정부는 기본연금액의 가치를 평균소득과 연계했다. 모형은 이러한 관행이 계속된다고 가정하였다.

최저연금제도

특별 보조연금은 40년의 가입기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79.33% 이며 가입기간이 짧아질수록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이 보조연금은 소득비례 보충연금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위의 기초연금과 특별 보조연금은 최저 연금을 구성한다.

특별 보조연금은 실제 조건으로 인상되며 전체적인 최저 연금은 간헐적으로 인상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성장률을 따라가는 추세이다. 2002년부터 최저연금은 공식적으로 평균 임금에 연동되게 되었다.

소득비례 연금제도

기초연금이 소득의 첫 단계를 대체하기 때문에 소득비례 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이상의 소득만 적용한

다. 특별 보조금은 기본 연금액의 2.89배까지 소득의 상위단계를 대체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그 이상의 소득을 위한 것이다. 기초연금액의 2.89배에서 6배까지의 연간 소득은 42%에서 대체된다(이 비율은 1992년의 45%에서 줄어든 것으로 각 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 이전부터 1992년까지의 연간 점수와 연수, 두 가지를 가중평균한 것이다). 기본연금액의 6배에서 12배 사이의 소득대체율은 그 수준의 1/3이다. 완전연금을 위해서 필요한 40년의 가입기간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각각 1.05% 와 0.35%의 연간 연금지급률(모두 1992년 이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과 동일하다. 지급률이 내려가는 첫 번째 기준은 평균소득을 약간 넘는다(109%). 따라서 급여수급을 위한 소득의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두 배를 약간 넘는다(219%).

연금의 산정은 점수를 얻은 기간 중 최고 20년을 이용한다. 초기의 소득의 재평가는 기초연금액(G)을 위한 조정 절차에 따른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형은 기초연금액이 향후 평균소득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가정한다.

확정기여 제도

2006년 시작부터 사용자는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의 2%를 확정기여 연금제도의 최저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만약 사용자가 이 제도 대신 확정급여 제도를 제공하고자 하면, 그 급여는 2%의 의무 확정기여제도에서 예상되는 급여와 최소한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기여금은 기본연금액(G)와 기본연금액의 12배 사이의 소득에만 필요하다.

현재 급여는 67세에만 지급된다.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 급여는 성별의 구별 없는 사망률 표를 이용하여 물가연동 연금액을 취한다고 가정한다.

조기 퇴직

근로자의 2/3 가량이 계약조기퇴직제도(Contractual Early Retirement Scheme-AFP)에 의한 조기퇴직에 참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한다. 198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62세에 퇴직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제도의 연금수준은 67세부터 지급되는 보통 노령연금과 대체로 동일한데, 즉, 실제로 퇴직하는 당시까지 일을 계속하는 것과 동일하다.

AFP연금의 산정은 분야별로 달라진다. 민간 부문에서 AFP 연금은 영구 장애 연금과 같은 방식(67세를 포함하여 남은 연도에 대한 연금 점수를 부여)으로 산정된다. 또한 연금 수급자는 소위 AFP-보충연금이라고 하는 연간 NOK 11,400을 받는다. 이 보충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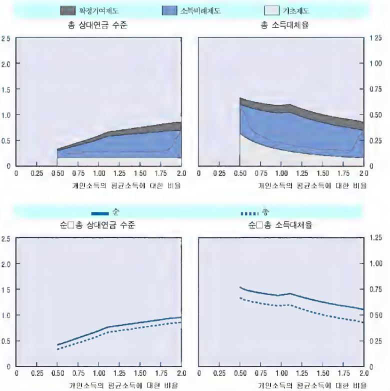
만기 퇴직

67세 이후로 연금을 유예하고 근로를 계속 할 수 있고 근로와 연금을 받는 것을 병행할 수 있다.

원래 연금수급연령은 70세로 정해졌는데 나중에 67세로 줄었다. 연금 점수의 취득 가능성은 70세 까지 유지되는 근로소득에 근거하며 67세부터 70세까지 연령집단의 연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조사에 의한 것이 있(이다)다. 이 소득조사는 개인이 근로와 연금을 병행했을 때 두 기본연금액(G)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40%에 의한 연금액 감소로 이루어진다.

67세 이후로 연금을 유예했을 때 증액은 없으며 67세에서 70세의 소득조사는 근로와 연금을 병행했을 때 40%이다. 그러나 후자는 두 가지 기본연금(G)을 초과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연금모형 결과: 노르웨이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평균소득의 백분율)*	51.0	33.2	45.9	59.3	75.3	85.4
순 상대 연금수준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60.8	41.9	55.3	69.3	85.2	95.1
총 소득대체율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60.0	66.4	61.2	59.3	50.2	42.7
순 소득대체율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70.0	77.1	71.2	69.3	62.5	55.1
총 연금자산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0.3 *12.1*	11.5 *13.4*	10.5 *12.3*	10.2 *11.9*	8.6 *10*	7.3 *8.5*
순 연금자산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8.6 *10.1*	10.1 *11.8*	8.9 *10.4*	8.3 *9.7*	6.8 *7.9*	5.6 *6.6*

폴란드

새로운 연금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49년생 및 그 이후 출생자들에게 적용된다. 새로운 공적 연금제도는 명목 계정 제도를 기초로 한 것이다. 개혁 당시 30세 이하의 사람들(1969년생 및 그 이후 출생자)은 또한 적립식 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20세에서 50세의 사람들(1949년에서 1968년 사이 출생자)은 적립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1999년까지 반드시 해야 하며 돌이킬 수 없다.

수급요건

새로운 제도에서 최저 연금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가 될 것이다. 최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25년과 2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급여산정

소득비례 연금제도

소득의 12.22% (또는 1949년에서 1948년 출생 근로자들 중 확정기여제도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9.52%)인 기여금은 각 개인의 명목계정에 적립된다. 처음에 이 기여금은 근로자들이 기여금납부시점과 퇴직 시점 사이에 물가 인상률에 75%의 실질 적용 임금상승률을 더한 값으로 인상되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이 명목 이자율이 실질 적용 임금상승률의 100% 이며 물가 인상률보다 낮지 않는 금액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2000년으로 소급해서 계정에 적용된다.

퇴직 시에 적립된 명목 원금을 "g-값"(g-value)으로 나누면 연금급여가 된다. g-값은 퇴직연령에서의 평균 기대여명으로, 이 과정은 적립방식 연금제도에서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g-값은 중앙 통계 사무소(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발표한 생명표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모형에서는 국제연합/세계은행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추계자료를 사용하였다.

기여금과 표준 소득의 상한선은 PLN 68,700 또는 2004년의 평균소득의 2.3배이다.

1999년과 2004년 사이 지금 연금은 80%는 전년도 물가 추정치에, 20%는 전년도 평균소득에 의해 인상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최저 연동은 물가에, 조정은 5%에 달하는 복리 인플레이션에만 의하여 이루어졌음에 유의하라.

소득비례 연금제도

부과방식 제도에 최저연금제가 있는데 2003-04년도의 월간 PLN 562.86이었고 이는 평균 임금의 23%에 해당한다. 최저연금은 80%를 인플레이션에 20%를 임금상승률에 의해 조정하여왔으나 2005년부터는 물가

에 연동한다.

확정기여제도

전체 기여금에서 약 7.3퍼센트가 의무적용을 받거나 의무적용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적립식 제도로 전환된다. 연금에 관한 법령에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적립된 금액은 퇴직 시에 종신연금 및 최저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가정하는데 종신염금은 물가에 연동 될 것이다(모형산정에 사용). 연금률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녀 동일한 생명표에 근거하여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퇴직

이 연금제도에는 조기 퇴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구제도(1949년생 이전 출생자에게 적용)에서는 광부, 철도근로자, 교사, 특정조건의 근로자 및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의 조기퇴직을 허용하였다.

만기 퇴직

명목 제도와 적립식, 확정기여 연금제도 모두 제한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정상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을 유예하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하고 추가 연금을 얻는다.

근로와 연금수령을 병행할 수도 있다. 법정 퇴직연령 이하의 노령 연금수급자들(구제도에서)에게는 소득의 제한이 있다. 평균 임금의 70% 보다 높은 소득의 근로자는 연금이 감액되고 평균 임금의 130%이상이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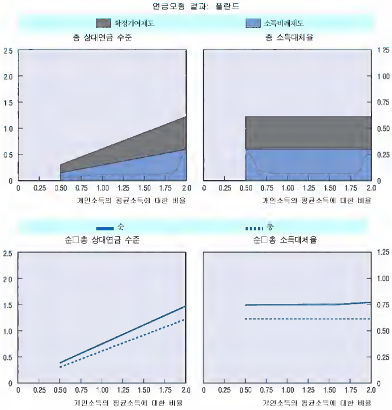
개혁 전 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개인별 계정이 없었다. 구제도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에 연계된 정액연금이다. 이 급여는 국가 전체적으로 평균소득의 24%로 정해졌다. 2003-04년에는 PLN 1862.62였고 2004-05년에는 PLN 1829.24였다. 최근에 급여는 매년 3월에 조정된다. 이 급여는 남성은 25년, 여성 20년의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매년 기여금으로 소득의 1.3%를 납부하는 소득비례부분이 있다. 기준소득은 최종 20년 중 연속적인 최고 10년, 또는 경제의 평균 임금과 관계하여 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전체 이력 중 20년의 기간의 소득이다.

최저연금의 상한은 구제도와 현재의 제도가 동일하다.

연금은 1999년부터는 물가에 전년도에 추정한 최소 20%의 실질 임금상승률을 더한 값에 연계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물가에 연동된다(새로운 제도의 연금처럼).


연금모형 결과: 폴란드
확정기여제도
소득비례제도
총 상대연금 수준
총 소득대체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순
총
순□총 상대연금 수준
순□총 소득대체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2.0	30.6	45.9	61.2	91.8	122.4
(평균소득의 백분율)	*37.8*	*23.1*	*33.4*	*44.5*	*66.8*	*89.0*
순 상대 연금수준	64.1	38.8	56.8	74.9	111.0	147.1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47.3*	*29.9*	*42.1*	*55.2*	*81.4*	*107.7*
총 소득대체율	61.2	61.2	61.2	61.2	61.2	61.2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44.5*	*46.2*	*44.5*	*44.5*	*44.5*	*44.5*
순 소득대체율	74.8	74.5	74.8	74.9	75.0	77.1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55.3*	*57.5*	*55.3*	*55.2*	*55.0*	*56.4*
총 연금자산	8.4	8.4	8.4	8.4	8.4	8.4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8.6*	*8.9*	*8.6*	*8.6*	*8.6*	*8.6*
순 연금자산	7.0	7.2	7.1	7.0	6.9	6.9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7.3*	*7.9*	*7.4*	*7.3*	*7.2*	*7.1*

연금모형 결과: 폴란드,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5.6	40.1	51.1	62.2	84.2	106.3
(평균소득의 백분율)	51.4	37.7	47.5	57.3	76.9	96.5
순 상대 연금수준	68.2	50.0	63.0	76.0	102.0	128.1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63.3	47.1	58.7	70.2	93.4	116.5
총 소득대체율	65.4	80.3	68.2	62.2	56.1	53.1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60.5	75.4	63.3	57.3	51.2	48.2
순 소득대체율	79.7	96.1	82.9	76.0	69.0	67.1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74.0	90.6	77.2	70.2	63.1	61.0
총 연금자산	9.0	11.0	9.3	8.5	7.7	7.3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1.7	14.6	12.2	11.1	9.9	9.3
순 연금자산	7.5	9.3	7.9	7.1	6.4	6.0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9.8	12.4	10.3	9.3	8.2	7.7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최저연금과 재산조사에 의한 안전망이 있는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가지고 있다.

수급요건

표준수급연령은 65세이며 조기퇴직은 55세부터 가능하다. 최저 가입기간 15년이 있어야 65세에 퇴직할 수 있다. 조기퇴직은 가입기간 30년이면 가능하다.

65세부터 사회연금(social pension)을 받을 수 있다.

급여산정

소득비례 연금제도

연금은 기여기간 20년 또는 그 이하기간의 내년 기준소득의 2%를 지급한다. 21년 또는 그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수급자는 지급률이 소득에 따라 2~2.3% 사이가 된다. 지급률 표는 국가 최저임금(EUR 365.60)에 대비한 개인소득에 의해 정한다. 각 소득구간의 연금은 다른 지급률을 갖는다.

소득/최저임금	≤1.1	>1.1-2.0	>2.0-4.0	>4.0-8.0	>8.0
지급률(%)	2.3	2.25	2.2	2.1	2.0

연금은 최대 40년 동안 적립된다.

기준소득은 현재 최종 15년의 최고 10년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금 넓어지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생애전체의 평균소득이 이르게 될 것이다. 최근의 개혁은 이러한 변경을 더욱 가속화 시켜서 2006년과 2017년 사이에 퇴직하는 사람들의 기준소득은 최종 15년 중 최고 10년 소득과 생애전체의 평균소득에 대해 비례적으로 기준을 삼게 될 것이다. 2002년 이후 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여기간이 40년 이상인 사람들에 대하여는 최고 40년만 급여산식에 계산된다.

2002년 초부터 연금산전을 위한 소득 재평가는 소득과 물가를 혼합한 기준을 사용한다. 가중치는 물가 인상률 75%, 소득상승률 25%로, 최대 실질성장률 0.5%가 된다.

최근 합의된 연금개혁은 안정성 요소라고 알려진, 65세의 기대여명의 증가에 대해 미래의 연금을 조정하는 것을 도입했다. 국제연합과 세계은행의 사망률 통계에 의하면, 2006년의 포르투갈의 65세의 기대여명은 16.2

년이다. 45년 후 기대여명은 20.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인이 전체 경력 중에서 이 조정에 의해 지내는 기간이 기대여명과 연계되어진 결과, 급여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보다 8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급연금은 작은 연금에 대해 더 큰 증액이 이루어지는 누진적인 연동이다. 또한 GDP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연동 또한 더욱 관대하게 될 것이다. 2008년부터는 아래의 표가 적용될 것이다.

연금	GDP 성장률		
IAS의 배수	< 2%	2-3%	≥3%
<1.5	CPI	CPI+20% GDP 성장률*	CPI+20% GDP 성장률
1.6-6	CPI-0.5 p.p.	CPI	CPI+12.5% GDP 성장률
6-12	CPI-0.75 p.p.	CPI-0.25 p.p.	CPI
≥12	zero	zero	zero

주: CPI= 소비자 물가상승률(comsumer price inflation),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p.p= 백분율(percentage point) IAS는 최저생계비의 측정기준임. 2007년의 경우, IAS는 2006년의 최저임금(EUR 38.5.90)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의 물가인상률(3.1%)로 인상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AS가 어떻게 연관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형에서는 장기간의 평균소득을 따라 가는 것으로 가정함.
* 물가인상률을 초과하는 0.5 퍼센트가 최저 제한선

최저연금제도

매달 최저연금이 지급되는데 2004년 1월부터 5월 까지는 EUR 208, 6월부터 11월까지 EUR 211.50, 2004년 12월부터는 EUR 216.79(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된다. 15년에서 40년의 가입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연금 금액은 근로자의 사회 기여금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65%에서 100%까지로 다양하다. 2004년의 경우, 아래의 표에 제시한 것처럼, 하한선은 EUR 217.65 (1월-5월), EUR 222 (6월-11월), EUR 233.10(12월-)이고 상한선은 각 기간에 대해 EUR 325.31, EUR 325.38, EUR 333.51 이었다. 연간

기여기간의 연수 (년)	최저 연금 (유로화)		
	1월 - 5월	6월 - 11월	12월
15 및 16	217.65	222.00	233.10
17 및 18	222.48	226.93	236.01
19 및 20	227.31	231.86	238.82
21 및 22	238.43	243.20	255.36
23 및 24	243.25	248.12	259.29
25 및 26	248.08	253.04	263.16
27 및 28	252.90	257.96	265.70
29 및 30	257.72	260.30	266.81
31	279.33	284.92	310.56
32	284.16	289.84	313.03
33	288.99	294.77	315.64
34	293.81	299.69	317.67
35	298.63	304.60	319.83
36	303.46	309.53	325.01
37	308.28	314.45	327.03
38	313.12	319.38	328.96
39	317.94	324.30	332.41
40 이상	325.31	325.38	333.51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004년도의 평균소득의 최저 연금은 EUR 3,096에서 EUR 4,564로 다양하다.

최저연금은 매년 14회 지급한다.

목표 연금제도

소득비례 제도의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매달 사회연금을 받는데 그 금액은 EUR 151.84 (2004년 1월-5월), EUR 154.88 (6월-11월), EUR 164.17 (12월-)이다. 이것은 독신자의 경우 전체소득이 최저 임금의 30%, 부부의 경우 최저 임금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급된다. 이것도 14번 지급된다.

최저연금 금액과 다른 사회적 급여는 아래의 표에 의해 IAS에 연계되게 될 것이다.

급여	금액 (% IAS)
최저 연금 (소득비례)	
15년의 기여기간	57.8
15년에서 20년의 기여기간	64.5
21년에서 30년의 기여기간	71.2
30년 이상의 기여기간	89.0
사회연금	44.5

조기 퇴직

30년의 가입기간이면 55세부터 조기 퇴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기 퇴직으로 매달 0.5% (연간 6%)의 감액이 이루어진다. 3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 55세가 되면, 30년을 넘는 매 3년의 완전 기여기간은 1년으로 쳐서 연금에 적용하여 조정된다.

만기 퇴직

65세 이후로 연금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개혁으로 완전 경력자(40년)는 매달 1% (연간 12%)의 연금 증액이 허용되었다. 기여기간이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유예하는 매달 0.33% (<25년 경력)에서부터 0.65% (35-39년)까지 증액률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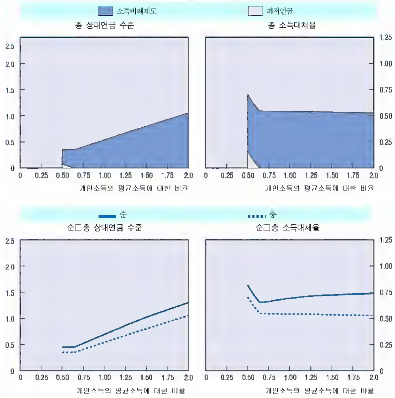
최근 개혁의 결과 65세가 되기 전에 퇴직 요건이 갖추어진 개인은 유예하는 매달 0.56%(연간 7.8%)의 증액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증액은 최대 소득대체율 92%까지 보장된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개혁이전의 시나리오 모형은 최종 15년중 최고 1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안정성 조정이 배제되었다.

연금모형 결과: 포르투갈


소득비례제도
최저연금
총 상대연금 수준
총 소득대체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순
총
순□총 상대연금 수준
순□총 소득대체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개인소득의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

■ 포르투갈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46.1	35.2	40.9	54.1	80.1	105.3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59.0	45.0	52.3	69.2	102.0	130.1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54.3	70.4	54.5	54.1	53.4	52.7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67.4	81.6	66.0	69.2	72.2	73.7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8.2	10.5	8.2	7.9	7.8	7.7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9.6*	*12.3*	*9.6*	*9.2*	*9.1*	*9.0*
순 연금자산	8.2	10.5	8.2	7.9	7.8	7.4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9.6*	*12.3*	*9.6*	*9.2*	*9.0*	*8.7*

연금모형 결과: 포르투갈,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76.9	45.7	68.1	90.1	133.5	175.5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98.3	58.5	87.1	113.2	158.4	199.2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90.5	91.5	90.8	90.1	89.0	87.8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112.4	106.1	110.0	113.2	112.1	112.9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3.2	13.3	13.2	13.1	13.0	12.8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5.4*	*15.6*	*15.4*	*15.3*	*15.1*	*14.9*
순 연금자산	13.2	13.3	13.2	12.9	12.0	11.4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5.4*	*15.6*	*15.4*	*15.1*	*14.0*	*13.2*

슬로바키아

소득비례 공적연금제도는 급여가 평균소득에 관계된 개인별 소득에 의존하는 점수제도와 유사하다. 최저연금제도는 없지만 저소득 근로자들은 연금 산정시의 최저 소득금액으로 보호받는다. 모든 연금수급자들은 소회 부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05년 초 확정기여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수급요건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연금보험기간이 필요하다. 연금 수급연령은 점차 증가해서 남녀 모두 62세로 동일해진다. 남성의 영금수급연령은 2006년부터 62가 되며 여성의 경우 2004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연금 수급연령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급여산정

소득비례 연금제도

연금제도에 기여하는 사람은 매년 연금점수를 얻는다. 이는 개인별 소득과 경제전반의 평균소득의 비율로 계산된다. 연금수급액은 경력기간 동안 연금 점수의 합에다 연금점수 값을 곱한 것이다. 2004년의 금액은 SKK 183.58이었다. 연금점수 값은 평균소득에 연동된다. 2004년의 국가 평균소득은 매월 SKK 15,825였다. 점수 값을 소득으로 나눈 값은 1.2%에 약간 못 미치는데 확정급여제도의 지급률과 동일하다.

기여금과 급여를 산정하는 소득에 상한선이 있는데 평균소득의 세배로 정해져있다. 소득 자료에는 지체가 있는데 따라서 2004년 상반기의 상한선은 2002년 평균소득(월 SKK 13,511)의 세배가 된다. (소득증가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본 가정에 따라, 이러한 지체로 인해 상한선은 동일한 시점의 평균소득의 3배에 약간 못 미치게 된다.)

지급연금은 소득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산술적 평균에 연동한다.

확정기여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들을 위한 공적 소득비례 제도의 급여는 공적 제도만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절반이다.

최저연금제도

최저 연금제도는 없다. 다만, 연금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산정기준이 있는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2004년 10월의 시작부터 최저임금은 SKK 6,500이며 그해 초에는 SKK 6,080 이었다. 최저임금은 평균소득의 약 40% 이하이다.

확정기여 연금제도

확정기여 제도의 기여율은 소득의 9%이다. 2005년 1월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다른 모든 근로자들은 2006년 6월 까지 공적 제도에만 남아있을 것인지, 혼합제도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확정기여연금은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과 단계적 일시금의 혼합으로 받을 수도 있다. 모형에서는 남녀 동일한 연금률로 계산된, 물가에 연동하는 종신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조기 퇴직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급여는 매달 0.5%씩(연간 6%에 해당) 감액된다. 조기 연금에는 연금액이 최소한 성인 생계비 수준의 1.2배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수준은 2004년 상반기 SKK 5,052, 하반기 SKK 5,497이다. 2004년도의 생계비 최저액은 평균소득의 32% 상당이었는데 이는 조기 퇴직에 필요한 최저연금은 소득의 38%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조기 퇴직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10년의 기여기간 조건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건, 두가지 모두 충족될 경우 어떤 연령이라도 가능하다.

만기 퇴직

정상연금 수급연령이 이후로 연금을 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금이 유예되면 급여는 매달 0.5% 씩(연간 6%) 증액된다. 연금을 신청하고 근로를 계속하는 사람의 연금은 실제로 퇴직할 때 추가 근로 기간의 정수의 1.5를 더하여 재계산 될 것이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새로운 연금 제도는 2004년 1월 1일부터 연금을 청구하는 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구제도에 의해 연금 청구권이 생겼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구제도나 신제도의 급여를 계산하여 더 높은 급여가 부여된다.

구제도하에서 (완전)연금의 수급권은 25년의 기여기간 또는 인정기간이 필요했다. 정상연금수급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7세였다. 위험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의 남성 근로자와 육아를 하는 여성 저소득자의 경우엔 연금 연령이 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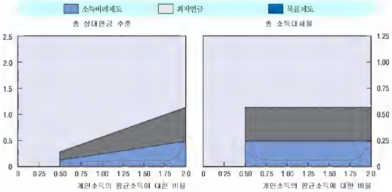
연금은 소득의 50%에 25년의 기여기간의 매년 1%의 추가소득이었다. 기준 소득은 최종 10년중 최고 5년이었다. 2002년 상반기 최고 연금은 월 SKK 8,282 였고 하반기에는 SKK 8,697이었다. 이는 연간으로 보면 2002년 전체 SKK 101,874 이고 그 해의 평균소득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슬로바키아 정부에 따르면 2004년의 명목 임금상승률은 10.2% 로 추정되고 2003년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6.3%로서 2004년의 연간 최대 연금액은 SKK 119,338로 예상된다고 한다.(연금개혁이 안되었을 경우). 이는 평균소득의 2/3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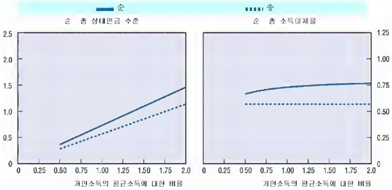
구제도의 지급연금은 평균소득 상승률에 따라 증가되었다(최소 5%의 상승률이 사용됨).

구제도에서는 최저 연금제도가 있었는데 매월 SKK 550에다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한 조정치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2002년의 최저 연금은 매월 SKK 1,240이었다. 2002년 이후 주어진 소득 상승률(위를 참고)에 의해 모형은 최저연금의 2004년의 값을 매월 SKK 1,453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평균소득의 약 10% 에 해당한다. 최전 연금을 받기 위해서도 25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했다.

구 연금제도에서 조기 퇴직제도는 없었다. 연금의 유예의 경우, 유예를 청구한 때부터 매년 6%씩 증액이 있었다.

연금모형 결과: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48.2	28.4	42.6	56.7	85.1	113.5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62.0	36.5	54.7	72.9	109.4	145.8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56.7	56.7	56.7	56.7	56.7	56.7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71.7	66.4	70.6	72.9	75.4	76.7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8.8	8.8	8.8	8.8	8.8	8.8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0.7*	*10.7*	*10.7*	*10.7*	*10.7*	*10.7*
순 연금자산	8.8	8.8	8.8	8.8	8.8	8.8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0.7*	*10.7*	*10.7*	*10.7*	*10.7*	*10.7*

연금모형 결과: 슬로바키아,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5.3	32.5	48.8	59.5	59.5	59.5
(평균소득의 백분율)	*52.7*	*31.0*	*46.5*	*59.5*	*59.5*	*59.5*
순 상대 연금수준	71.0	41.8	62.7	76.4	76.4	76.4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67.7*	*39.8*	*59.8*	*76.4*	*76.4*	*76.4*
총 소득대체율	65.0	65.0	65.0	59.5	39.6	29.7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62.0*	*62.0*	*62.0*	*59.5*	*39.6*	*29.7*
순 소득대체율	82.1	76.1	80.9	76.4	52.7	40.2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78.3*	*72.5*	*77.2*	*76.4*	*52.7*	*40.2*
총 연금자산	12.8	12.8	12.8	11.7	7.8	5.8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6.7*	*16.7*	*16.7*	*16.1*	*10.7*	*8.0*
순 연금자산	12.8	12.8	12.8	11.7	7.8	5.8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6.7*	*16.7*	*16.7*	*16.1*	*10.7*	*8.0*

스페인

스페인의 공적연금제도는 단일, 소득비례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전의 특별 사회부조제도를 대체하는 재산조사에 의한 최저연금제도가 있다.

수급요건

완전급여를 받기 위한 퇴직연령은 남녀 65세이다. 연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5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급여산정

소득비례 연금제도

연금급여는 급여지급표에 의해 지급된다. 가입기간 15년 이후에 연금급여는 소득 기준의 50%가 된다. 그 다음 10년은 매년 추가 3%가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매년 2%가 된다. 최대 지급률은 100%로 가입기간 35년 후에 도달한다.

소득기준은 과거 15년 동안의 소득으로 물가에 의해 상향조정하지만 최종 2년간은 제외한다. 이것은 최종 소득 대비 최대 소득대체율이 100% 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증가와 물가에 대한 표준 가정에 따라 88%로 산정된다.

기여금과 급여산정의 소득에는 EUR 32,778의 상한선이 있는데 이는 평균소득의 165%에 해당한다. 연금급여는 물가에 연동된다.

최저연금제도

피부양 배우자가 없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65세부터 월 EUR 471.81 또는 평균소득의 30% 에 해당하는 최저연금이 지급되는데 연 14회 지급된다.

조기 퇴직

1967년에 또는 그 이후에 제도에 적용된 사람들은 61부터 조기 퇴직이 가능한데 실업상태이어야 하고 최소 30년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한다. 계리적 감액률은 기여연수에 의하는데 8% (30년), 7.5% (31-34년), 7% (35-37년), 6.5% (38-39년), 그리고 4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면 6%이다.

1967년 이전에 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60세에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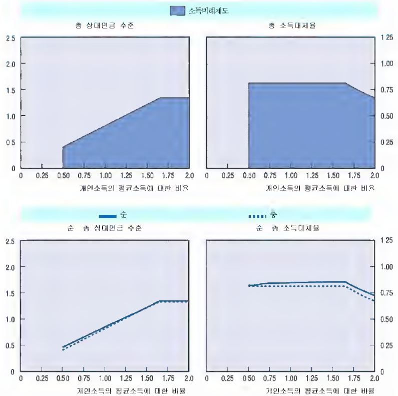
60세에서 64세 사이에 부분적 연금 수령과 노동시간이 25%에서 85%까지 줄어드는 비정규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분 연금수급자가 떠나면 남은 노동시간은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만기 퇴직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65세에 35년의 기여기간을 가진 사람의 경우, 연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를 초과할 지도 모른다. 유예기간 동안 급여는 매년 2%씩 늘어난다.

65세부터 부분 연금수령과 비정규직을 병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동시간 대체의 의무규정은 없다.

연금모형 결과: 스페인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평균소득의 백분율)*	69.0	40.6	60.9	81.2	121.8	134.2
순 상대 연금수준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73.0	46.0	65.2	84.5	121.3	132.5
총 소득대체율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81.2	81.2	81.2	81.2	81.2	67.1
순 소득대체율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84.2	82.0	83.9	84.5	85.2	72.4
총 연금자산	12.2	12.2	12.2	12.2	12.2	10.1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4.3	14.3	14.3	14.3	14.3	11.8
순 연금자산	10.3	11.0	10.4	10.1	9.7	7.9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2.1	12.9	12.2	11.9	11.4	9.3

스 웨 덴

새로운 연금 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었는데 1954년생 및 그 이후 출생자들에게 적용된다. 노령근로자는 도입 비율에 따라 신제도와 구제도에 적용되는데, 즉 1938~53년생은 신구제도 혼합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비례 부분은 명목계정에 기초하고 개인별, 확정기여 적립연금제도에 대한 소액의 의무기여금이 있다. 또한 연금 소득조사 부가급여(top-up)가 있다. 확정급여 요소와 확정기여 요소가 있는 기업연금제도가 널리 적용된다.

수급요건

보장 연금(guarantee pension)의 수급권은 거주기간 3년이면 주어진다. 65세에 보장연금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최대 보장연금은 40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고 그보다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이 연금은 65세부터 청구 할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에서 표준 연금 수급연령은 화이트칼라 민간부문 근로자(ITP 제도)의 경우 65세이며 조기연금은 55세이다. 최저 가입연령은 28세이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새로운 소득비례 연금제도는 명목계정을 이용한다. 표준소득(pensionable pay)의 16%의 기여금이 인정되고 경제전반 평균소득의 3년 이동평균선에 따라 상향조정된다. 표준소득은 소득에서 피고용자의 연금 제도(즉, 명목 계정 및 수익연금-premium pension)에 대한 기여금 7% 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되며, 유효한 기여율은 명목계정제도에 대하여 총 소득의 14.88%가 된다. 기여금은 평균소득의 5%가 안 되는, 2004년 SEK 16,600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지만 이 한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소득 전체에 부과된다. 급여에는 상한선이 있는데 2004년 SEK 317,500의 표준소득으로 산정한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표준소득과 관련이 있고 2004년에 총소득과 관련한 유효상한은 SEK 341,400(평균소득의 약 130%) 였다. 사용자의 기여금은 상한선까지지만 지급되는데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연금 기여금과 같은 비율이지만 중앙 정부에 직접적으로 귀속된다. 이는 연금 수급권과 무관하다.

명목 계정은 동일연령 사망자와 생존자(유산취득)의 연금 균형의 분포에 따라 매년 인상된다. 최저 퇴직

가능 연령(61세)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사람들로부터의 유산취득은 명목계정 실제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 연령 이후 유산취득 요소는 더 이른 기간의 사망률 전망을 토대로 추정된다(남녀 구별이 없는 5년간의 사망률 표로부터 계산).

퇴직 시에 적립된 명목 자금은 종신연금으로 전환될 것이다. 종신연금 산정에는 개인의 퇴직 연령과 당시의 기대여명(이전 5년간 남녀공통의 사망률 표를 기준)에 의한 계수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산정에는 실질 연간 할인율이 1.6% 로 가정될 것이다. 65세 종신연금계수(annuity coefficient)를 예를 들어보면, 2000년에 15.4에서 2020년 16.8, 2040년까지는 17.4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1940년 출생자의 현재 종신연금 계수는 61세에 퇴직하는 경우 18.0이고 70세에 퇴직하는 경우 12.8 이다.

퇴직 이후 연금액은 명목 평균소득 상승률에 연금 약수(annuity divisor)에서 1.6%의 귀속이자율 (imputed interest rate)만큼을 공제한 만큼 인상된다.

또한 "균형 장치(balance mechanism)"가 있는데, 자산(완충기금에 예상 기여금 징수의 형태로 된 자산의 값을 더한 것)이 부채(지급된 명목 연금 자금 및 지출되는 연금 값의 자금) 보다 작아지면 지급 시 연금의 연동과 인정 명목계정의 수익률이 자산과 부채의 비율로 낮아지게 된다. 현재 균형비율(balancing ratio)은 자동 균형 장치가 실현되는 시점에 가깝다(2003년 1.0097, 2004년 1.0014, 2005년 1.0044). t 년도의 균형비율은 균형 숫자 또는 t+2 년도의 균형 장치 작동의 필요성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균형 장치의 작동은 국가 연금 제도에서 더 낮은 소득대체율을 의미하지만 연금 제도가 회복되고 균형값이 증가하면 더 높은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이 회복기간에 균형지수가 소득지수를 초과함).

모형에서는 종신연금 계수는 위의 규정과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사망률에 의거해 계산된다. 균형 장치가 급여의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목표제도

"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은 명목계정 급여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소득조사에 의한 부가급이다. 2004년에 1938년 이후 출생한 독신자의 보장급여는 SEK 83,709 또는 평균소득의 33%이었다.

독신자의 경우, 보장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소득 최초 SEK 49,518 (2004년)에 대하여 100%만큼 공제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48%만큼 공제한다. 이 기준은 평균소득의 20%에 해당한다. 소득비례연금이 SEK 120,651 - 평균소득의 거의 50% - 을 초과할 때만 최저보장 연금액이 소진된다.

현재 법규정으로는 이 보장수준은 물가에 연동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모형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퇴직 급여 안전망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 생활수준에 따라 감소한다기보다는 평균소득을 따라가는 추세이다.

또한 주거비용의 93%를 커버하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가 있는데 독신자의 경우 최대 월 SEK 5,000 이다. 이 급여는 스웨덴 연금수급자의 최저 생활수준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이는 자산조사 급여이며 모형의 계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확정기여제도

표준소득의 2.5% (유효기여율이 총소득의 2.325%)가 수익연금(premium pension) 이라고 하는 개인연금계좌에 지급된다. 사람들이 이 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다.

퇴직 시 사람들은 급여를 인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진다. 첫째, 투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전환 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는, 변액연금(variable annuity), 즉 그들이 선택한 기금관리자가 계속 기금을 투자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종신연금들은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금 산정의 원칙은 계정의 값을 연금약수(추정 평균 기대여명에 근거)로 나누고 연금 급여를 추산 미래 이자율 3%에 행정적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수익률이 3%를 초과하면 추가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계정의 잔액이 더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이는 연간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준강제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 제도들은 모두 합치면 사업장 가입자의 거의 90%에 적용된다고 추산된다. 4개의 주요 기업연금제도가 있다. 모형에서는 화이트 칼라 근로자를 위한 ITP 제도를 사용했는데 이 제도는 확정급여제와 확정기여제가 혼합된 제도이다.

확정급여는 기준 소득금액의 7.5배 또는 2004년에 SEK 317,250으로 정해진 상한까지의 소득에 최종소득의 10%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실제로 표준소득이 아닌 총 소득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적제도에 유효한 상한보다 낮다. 이 기준과 평균소득의 약 3.1배 사이에서는 완전경력 소득대체율이 65%, 평균소득의 3.1~4.6배는 32.5%가 된다.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가입연령 28세부터 가입기간 30년이 필요하다. 재직기간이 짧으면 급여가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지급 연금은 ITP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한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대체로 물가에 의해 인상해 왔으므로 모형에서는 이 방법으로 가정한다.

또한 ITP 제도에는 총 소득의 2%의 기여를 받는 확정기여 부분이 있다. 모형에서는 확정기여 부분이 물가연동 종신연금의 형태로 정상수급연령에 인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초 가입연령은 역시 28세이다.

ITP 제도는 최근에 다시 논의 되어왔고 1979년 또는 그 이후 출생자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 새로운 제도는 확정기여제도로 기준소득의 7.5배(2006년 기준 SEK 333,750) 까지 총소득의 4.5%의 기여금을 가지며 이 제한을 넘어서면 기여금은 총 소득의 30%를 넘는다. 이 제도는 모형에서 계산하지 않았다.

조기 퇴직

공적 연금제도(소득연금 및 보장연금 모두)에서 퇴직은 61부터 가능하다. 퇴직연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명목 계정 및 종신연금의 산정에서는 퇴직연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리적 감액을 실시한다.

소득조사 방식 보장연금은 65세 이전에 청구할 수 없다. 명목계정 연금이 65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인출되면 보장연금은 명목계정 연금이 65세에 인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산정된다.

ITP 기업연금제도에서는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62세 이전에 청구한 사람에게는 급여의 감액이 있다. 62세 또는 그 이후의 퇴직에 대하여 완전 기업연금은 기여제도가 65세까지 납부된 것처럼 지급하지만 65세보다 이전에 지급된 연금은 매월 0.5%씩 감액된다.

만기 퇴직

명목 계정 연금은 연령제한 없이 유예가 가능하며 역시 자동으로 계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

ITP 기업연금제도는 65세 이후로 유예가 가능하다. 65세 이후로 추가적인 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로와 연금 수급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액은 부분적으로 인출(전체 연금의 25%, 50% 및 75%)할 수 있다. 보장연금은 스웨덴의 다른 노령연금제도 및 비슷한 외국의 국민연금 제도들 같은 다른 연금들에 대해 조정되지만, 임금 소득, 자본 소득,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 보험에 의해 감액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장연금에서도 근로와 연금 수급의 병행도 가능하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공적 연금제도의 개혁은 1999년에 도입되었다. 구제도와 신제도의 적용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구제도는 2개의 층을 가진다. 첫 번째 층은 거주 요건(40년) 또는 기여요건(30년)을 가진 기초연금인데 수급요건의 연수가 모자라면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독신자의 경우 연금의 가치는 2004년에 SEK 39,300인 물가기준액의 96% 였다. 물가기준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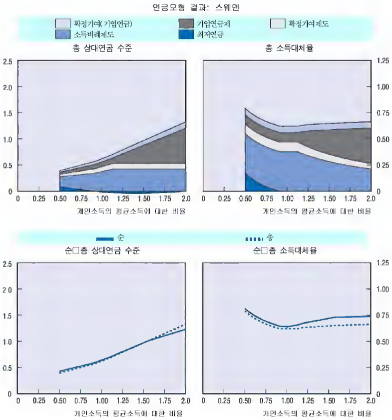
소득비례 층은 점수제도에 기초한다. 연금 수령은 최소한 3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연금액은 기준 금액(연금수급연령 도달 시)에 최고 점수의 15년간의 연금 점수의 숫자를 곱한다. 점수의 숫자는 당시의 기준 소득에서 기준 금액을 제외한 후 기준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기준 금액은 물가에 연동하고 산식은 당시 및 최종 기준 금액에 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정책은 물가 재평가와 동일하다는 것에 유의 할 것). 표준 소득의 상한은 기준 금액의 7.5배였다. 완전 연금은 30년의 가입기간 필요하고 이보다 가입기간 이력이 짧은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개혁 이전 제도의 지급연금은 물가에 연동되었다. 조기 (61세까지) 및 만기(70세까지)의 퇴직은 조정하에 가능하다. 조기 퇴직에는 매월 0.5% (연간 6%)의 감액이, 만기퇴직에는 0.7% (연간 8.4%)의 증액이 있었다.

개혁 이전의 연금제도에는 또한 연금 보충액이 있었는데 소득비례연금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다. 이 금액은 0.56 물가 기준금액(SEK 21,565)였다. 이는 소득비례연금에 대하여 공제되었다(다른 소득원은 제외).

연금개혁법안의 일부로 보장연금의 도입, 노령자를 위한 세금특례가 실시되었다. 2002년에 노령자들은 SEK 11,104에서 SEK 59,688 사이(연금소득에 따라)의 특별 소득세 감면이 주어졌다. 이 특별 감면은 최저

■ 스웨덴

연금 수준이상의 소득에 66.5%를 공제했는데 SEK 132,605 이상의 소득을 가진 연금수급자들에게는 특별 감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4.2	39.6	50.0	62.1	97.1	132.5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56.6	42.8	52.7	64.0	97.1	122.9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63.7	79.1	66.6	62.1	64.7	66.3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66.2	81.4	69.2	64.0	71.9	73.9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0.2	12.6	10.7	10.0	10.3	10.5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1.7*	*14.4*	*12.2*	*11.4*	*11.8*	*12.0*
순 연금자산	7.4	9.5	7.8	7.2	7.2	6.8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8.5*	*10.9*	*9.0*	*8.2*	*8.2*	*7.8*

연금모형 결과: 스웨덴,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67.7	41.5	60.2	78.9	115.1	150.6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69.2	44.7	62.2	79.8	110.8	135.5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79.6	83.1	80.3	78.9	76.8	75.3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81.0	84.9	81.8	79.8	82.0	81.5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12.5	13.0	12.6	12.3	12.0	11.8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4.2*	*14.8*	*14.3*	*14.1*	*13.7*	*13.4*
순 연금자산	8.9	9.8	9.1	8.7	8.1	7.4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0.1*	*11.1*	*10.3*	*9.9*	*9.2*	*8.4*

스위스

스위스의 연금 제도는 3가지 중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비례제도 이지만 누진적 산식을 가진다. 의무 기업연금제도와 소득조사에 의한 보충적 급여가 있다.

수급요건

공적연금제도와 의무 기업연금제도에서 연금가능 연령은 현재 남성 65세, 여성 63세이고 여성은 2005년부터 64세로 늘어났다. 완전연금은 44년의 기여기간이 필요하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공적 연금은 생애소득의 평균에 기초한다. 만약 이 금액이 CHF 37,980 이하이면 수급액은 CHF 9,368에 생애 평균소득의 26%를 더한 금액이 된다. 위 기준을 넘어가는 생애소득에 대해서는 수급액은 정액 CHF 13,166에 생애 평균소득의 16%를 더한 금액이 된다.

CHF 12,660의 최저연금과 그 두 배에 달하는 최고 연금이있다. 이는 각각 평균소득의 18%와 36%에 해당한다. 생애 평균소득이 CHF 75,960, 즉 경제전반 평균소득의 108% 일 때 최대 급여가 된다.

지급 연금은 50%는 물가에 50%는 명목 소득에 연동된다.

의무적 기업연금제도

의무적 기업연금제도는 1985년에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개인별 연금계정에 "확정 크레딧"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성별, 연령별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남자, 연령	25-34	35-44	45-54	55-64
여자, 연령	25-31	32-41	42-51	52-63
크레딧 (조정소득의 백분율)	7	10	15	18

퇴직 시점에서 누적된 크레딧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기여기간에 적용된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2002년 말까지 오랜 시간동안 동안 최저 이자율은 4%였으며 2003년 3.25%, 2004년에 2.25%노 낮아졌다. 만약 이자율이 넓게 보아서 소득성장률과 동일하다면 이 제도의 완전경력자는 65세에 소득의 500%의 크레딧을 축적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소득의 성장률 이상(또는 이하)이면 결과가 더 높을 수 (낮을 수) 있다. 모형에서는 크레딧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소득과 일치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 제도에서 최저 연금지급률은 7.2%로 명목자본의 합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완전 경력의 소득대체율은 (500 x 7.2 =) 36% 가 된다(이자율이 소득성장률과 동일해질 때). 2005년부터 최저 연금지급률은 10년을 주기로 감소되어 나중에는 6.8%에 이르게 된다.

확점 크레딧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조점(co-ordinated)" 소득에만 적용된다. 이는 공적 연금에서의 최대 연금(2004년 기준 CHF 25,320)과 그 수준의 3배(2004년 기준 CHF 75,960) 사이이다. 이 기준은 각각 평균소득의 35%와 108% 이다. 표준 소득의 상한선은 공적 연금제도와 의무 기업연금제도가 같다는 점에 유의하라. 조점소득의 최젓값은 최댓값의 1/8이다. 조점 소득이 이 수준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크레딧은 이 최저수준에서 올라간다.

조정 소득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2005년의 진입수준은 이전의 수준의 2/3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모형에 포함되었다.

목표제도

보충급여제도는 독신자에게 평균소득의 24%에 해당하는 최저 CHF 17,300의 최저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충급여는 공적 노령연금과 같이 50% 물가, 50% 임금에 연동된다. 저소득 수급자를 위한 주 단위 부가급이 있는데,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조기 퇴직

공적 연금제도에서 표준 퇴직연령 2년 전에 퇴직이 가능한데 남성의 경우 63세 여성의 경우 2005년에 62세이다. 조기 연금이 청구되면 매년 최대 급액에서 6.8%의 감액이 이루어진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운영되는 보험수리적인 조정으로 보면 4.5%에 해당한다(그 이유는 1/44=2.3%의 조정치는 기여한 가입자의 추가 연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1947년생 이거나 그 이전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조기 퇴직에 따른 연금급여의 감액률은 총 금액에서 연간 3.4%이다.

기업연금 제도에서도 조기 퇴직이 허용된다. 각 제도들이 스스로 점책을 경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 제도들에서 조기 퇴직은 정상연금수급연령 5년전 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 지급률은 65세의 7.2% 에서 조기 퇴직으로 매년 0.2 %씩 감액된다. (이 전환율은 점점 낮아져서2005년부터 10년 동안 6.8%까지 낮아짐에 유의). 0.2% 퍼센트 포인트의 감액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조기 퇴직 연간 2.9-3.2%의 계리적 조정과 동일한 것이다(조기 퇴직의 범위를 확장할 때). 조기 퇴직의 결과로 생기는 기여금과 크레딧의 부족을 포함하면 급여는 조기 퇴직 매년 6.7-8.8%가 낮아진다. 이러한 감소는 더 일찍 퇴직할수록 늘어난다. (이 범위는 61세부터 65세이다).

만기 퇴직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모두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을 유예할 수 있다. 연금은 조기 퇴직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된다. 연금은 정상연금 수급연령보다 최고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연금은 아래의 표에 따라 증액된다.

유예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조정률	5.2%	10.8%	17.1%	24.0%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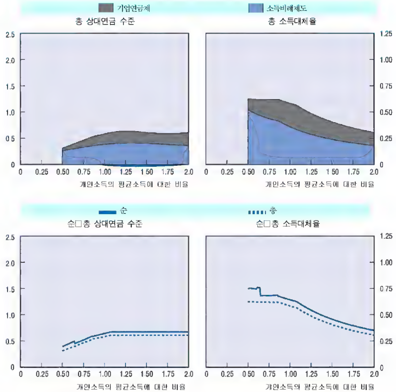
65세에 연금을 청구하고 노동을 계속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이 연간 CHF 16,800 (2004년 기준) 이하인 경우 65세 이후에는 기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수준이상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유예한 경우 또는 연금을 청구하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기여금이 부과되고 추가적 연금수급을 얻을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에서 연금을 유예한 경우 매년 0.2퍼센트 포인트씩 연금지급률이 증가한다. 실제적으로 각 기관들은 5년까지 연금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기업연금을 수급하면서 노동을 병행 할 수는 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주로 경력이 모자라거나 만기 퇴직이아니라 조기 퇴직한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정상연금수급연령 이후로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기업연금 수급도 유예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공적연금제도에서 65세 이후에는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

연금모형 결과: 스위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52.7	31.2	46.6	58.4	61.1	61.1
(평균소득의 백분율)	53.2	31.4	47.0	59.1	61.8	61.8
순 상대 연금수준	59.0	39.4	51.9	64.3	67.2	67.2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58.4	39.6	52.4	65.0	68.0	68.0
총 소득대체율	62.0	62.5	62.1	58.4	40.7	30.5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62.6	62.8	62.6	59.1	41.2	30.9
순 소득대체율	68.8	75.0	68.2	64.3	45.7	35.1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68.1	75.4	68.9	65.0	46.3	35.5
총 연금자산	10.5	10.7	10.5	9.8	6.8	5.1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2.8	13.1	12.9	12.0	8.3	6.3
순 연금자산	8.8	10.1	8.8	8.1	5.6	4.2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0.5	12.4	10.8	9.9	6.9	5.2

터 키

소득조사에 의한 안전망과 정액 보충연금제도가 있는 소득비례 공적연금제도이다.

개혁 이후의 제도

수급 요건

2004년 퇴직하는 남성의 최저 연금수급연령은 45세, 여성은 40세이다. 이전의 연금개혁은 이 연령을 2030년대 말까지 남성 60세, 여성 58세까지 늘어나도록 제안하였다. 가장 최근의 개혁으로 이 퇴직 연령은 더욱 늘어나서 남성은 2043년에 65세가 되고 여성은 약간 더 나중에 퇴직하게 된다. 모형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연금수급연령을 사용한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급여의 지급률은 2015년 말까지 연간 소득기준의 2.5%가 되고 그 이후에는 연간 2%가 될 것이다. 소득기준은 실질 소득 성장률 50%, 물가 인상률 50%를 합한 지수로 재평가한 생애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 연금은 물가에 연동한다.

최저 연금제도

최저연금이 있는데 2004년 초 TRY 3억6천4백7십만 이었고 그해 말에는 TRY 4억7십만 이었는데 이는 평균소득의 1/3에 해당한다.

목표제도

재산조사에 의한 연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2002년 상반기 연금이 월 TRY 5천4백6십만, 후반기 월 TRY 5천7백9십만 또는 평균소득의 5%였다.

모든 퇴직자들에게 매월 보충금이 지급된다. 2003년 초 그 금액은 TRY 7천5백만이었다. 개인별 소득비례 연금에 매달 증가분이 생기는데 이 보충금은 그 증가분만큼 감액된다. 2004년에 보충금은 없었다.

2003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18.4%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지급 연금이 2004년 1월에 10%, 7월에 10%가 증가하였다.

조기 퇴직

특정 산업(예, 광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장애우는 조기 퇴직이 가능하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연금수급연령이전에 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만기 퇴직

정상 연금수급연령 이후로 연금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금 급여의 총액은 늘어난 기여기간 만큼 증정되지 않는다. 2006년부터는 늘어난 기여금이 반영될 것이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수급 요건

최근 가입한 사람들(1999년 9월 이후)은 7,000일의 기여기간이 있으면 60세 (남성) 및 58세 (여성)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계속 근로자에게는 약 20년의 기여기간에 해당한다. 다른 수급조선은 4,500일의 기여기간에 25년의 보험가입기간인데 연금은 남성은 60세 여성 58세에 청구가 가능하다.

급여산정

연금은 GDP 성장률에 따라 재평가된 생애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국가의 모형과 일치시키기 위해 여기서도 실질 성장률을 연간 2%로 가정한다. 향후 50년간 노동력증가율이 연 1%로 할 때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3%가 될 것으로 가정한다.

연금은 가입 연수에 따른 비선형적 산식을 가진다. 최초 3,600일의 기여기간에 연금은 소득의 35%를 받게 되고, 추가 9,000일의 기여기간으로 연간 2%, 그 이후에는 연간 1.5%가 추가된다.

필요 기여기간에 하한선이 있다. 2004년도에 두 가지의 다른 금액이 있었는데 1월부터 6월 까지는 TRY 5억4천6백7십만, 7월부터는 TRY 4억4천4백십만 이었다. 최저 표준소득은 이전 기간의 최저 임금보다 높았는데 두 금액은 7월부터는 동일했다.

표준소득에 상한선이 있는데 2004년 1월부터 6월 까지는 TRY 27억4천8백십만, 7월부터는 TRY 28억8천8백9십만 이었다. 1999년부터 시작된 개혁 이후 상한선은 최저 임금의 3배가 되었는데 이 금액은 2000년 4월부터는 5배로 늘어났다.

모형에서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위 변수들의 평균을 사용한다.

지급 연금의 연동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한다. 연금은 매월 조정된다. 과거 2년간 연금의 추가적, 실질 인상이 주어졌고 한 해에는 "사회 보충금"(social supplement)이 추가되었다. 모형은 지급 연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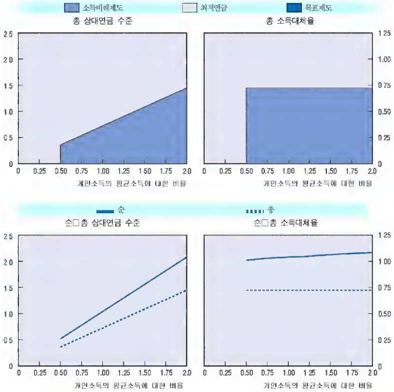
최저연금과 목표연금제도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더 읽을거리

Brook, A.-M. and E.R. Whitehouse (2006), "The Turkish Pension System: further reforms to help solve the informality problem",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44, OECD, Paris (also available as Working Paper No. 529, Economics Department, OECD.)

OECD (2006), "Making the Pension System Less of an Obstacle to Formalisation", Chapter 4 of OECD Economic Surveys: 터키, Paris.

연금모형 결과: 터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61.6	36.2	54.4	72.5	108.7	144.9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88.4	52.0	78.0	104.0	156.0	208.0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72.5	72.5	72.5	72.5	72.5	72.5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103.4	101.0	102.9	104.0	106.4	108.3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9.2	9.2	9.2	9.2	9.2	9.2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0.7	10.7	10.7	10.7	10.7	10.7
순 연금자산	9.2	9.2	9.2	9.2	9.2	9.2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0.7	10.7	10.7	10.7	10.7	10.7

연금모형 결과: 터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91.4	53.8	80.7	107.6	161.4	215.2
(평균소득의 백분율)	87.4	51.4	77.1	102.8	154.2	205.6
순 상대 연금수준	131.2	77.2	115.8	154.4	231.6	308.8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125.4	73.8	110.6	147.5	221.3	295.0
총 소득대체율	107.6	107.6	107.6	107.6	107.6	107.6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102.8	102.8	102.8	102.8	102.8	102.8
순 소득대체율	153.5	150.0	152.8	154.4	157.9	160.8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146.7	143.3	146.0	147.5	150.9	153.7
총 연금자산	16.3	16.3	16.3	16.3	16.3	16.3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19.1	19.1	19.1	19.1	19.1	19.1
순 연금자산	16.3	16.3	16.3	16.3	16.3	16.3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19.1	19.1	19.1	19.1	19.1	19.1

영 국

영국은 복잡한 연금제도가 있는데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공적제도는 (정액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가연금) 2개의 층이며, 대규모의 임의 개인연금 부분에 의해서 보완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기여 근로자는 국가의 제2층 연금제도에서 "적용 제외(contract out)"되어 다른 종류의 개인연금으로 이동한다. 극빈 연급수급자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지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소득비례(income-related) 급여제도(연금 크레딧)가 최근에 도입되었다.

수급요건

수급연령이 현재 여성 60세, 남성 65세인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5세로 같아진다. 최저소득보장/연금크레딧에 대한 수급연령은 60세이고 여성의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저축 크레딧은 남녀 모두 65세부터 적용된다.

국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거나 잠재적 근로 기간 (44년)의 9/10 정도 크레딧이 있어야 한다. 최저 25% (11년)가 되면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급여산정

기초연금제도

독신자에 대한 국가 완전기초연금은 2004/05년에 주당 GBP 76.900이며(2003/04년에 GBP 77.45로 2004년도 전체로는 GBP 4,111), 이는 평균소득의 15%에 해당한다.

소득비례연금제도

저소득 제한선(2004/05년 연간 GBP 4,108, 2003/04년 GBP 4,004)과 첫 번째 기준(GBP 11,600, GBP 11,200) 사이의 소득 소득대체율은 40%의 차이가 있다. 저소득 제한선은 평균소득의 15%인 반면, 첫 번째 기준은 42%이다. 이는 크레딧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은 첫 번째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이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음의 범위는 소득대체율이 10%로 GBP 26,600, GBP 25,600에서 끝난다. 이 기준과 상한선 사이의 소득대체율은 20%이다. 상한선은 2004/05년 GBP 31,720, 2003/04년 GBP 30,940 이었다. 삼위 기준은 평균소득의 96%,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15%이다.

급여액은 가입기간의 소득이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에 따라 인상된 생애 평균소득으로 산정한다. 퇴직 이후의 급여는 물가연동이다.

적용제외 (Contracting out)

사업장 근로자의 48% 정도가 제2국가연금제도(the state second pension)에서 "적용제외(contract out)"되어 기업연금(사용자 제공), 개인별 연금(personal pension)이나 유동연금(stakeholder plan)으로 전환한다(두 제도 모두 금융서비스회사에서 제공). 기업연금은 주로 확정급여제도인데 확정기여제도가 낮은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개별 연금제도와 유동 연금제도는 확정기여 방식이다.

적용제외된 사업장 근로자는 그들의 제2국가연금수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다. 확정급여 기업연금제도를 통해 적용제외 된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장 기여율이 낮게 책정된다. 반대로 확정기여 연금으로 적용제외 된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회보장 기여금 전액을 계속 납부하고(확정기여 기업연금 경우에 따라 약간의 감액이 있기는 함), 다만 국가에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제도에 기여금을 낸다. 확정급여제도의 적용제외는 반드시 최저 급여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정부계리국(the Government Actuary)의 자문에 따라 매 5년마다 사회보장 환급액(social security rebates)을 정한다. 이 환급액은 국가연금 수급권 포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만들어졌다.

목표제도

2003년 도입된 연금 크레딧 제도는 최저 소득 수준을 목표로 한다. 독신자의 경우 이 금액은 2004/05년에 GBP 105.45 (2003/04년 GBP 102.10) 이다. 연금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크레딧은 평균소득의 1/5 수준이다.

연금 크레딧은 또한 위에서 설명한 "보증 크레딧(guarantee credit)"에 추가해서 새로운 "저축 크레딧(savings credit)"을 포함한다. 이것은 구제도의 급여 유효 인출률을 100%에서 40%로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소득(연금 크레딧과 별개)이 "시작점(starting point)" 이상이지만 목표 최저소득보다 적은 사람은 부가급(top-up)을 받는다. 시작점은 완전 기초연금액과 같다. 부가급은 시작점 이상 소득의 60% 이다. 목표 최저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초과액의 40%만큼 감액한다. 따라서 2004/05년 독신자의 최대 저축 소득은 주당 약 (GBP 105 - GBP 80) ×60% = GBP 15 이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제2국가연금제도는 Serps 라고 알려진 국가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개정판으로 2002-03년에 도입되었다. Serps는 1978년에 도입되어 1988년까지 지속되었다.

제2국가연금과 Serps 의 중요한 차이점은 상이한 소득 집단별로 다른 소득대체율을 도입한 것이다. Serps 에서는 소득의 상하 제한선 사이의 모든 소득에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였다. 1988년의 개혁에 따라, 장기 지급률 20/49 또는 0.41% 에 대하여 목표 소득대체율은 20%였다. 1988년 이전에는 목표 소득대체율이 25%였다. 더 나아가서 초기 세대들에게 보다 가속화된 소득대체율을 설정해주는 제도도 있었다. 1998-99년 또는 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25/20 또는 1.25%의 지급률을 부여하여 20년만에 완전 연금을 받도록

하였다. 이는 Serps/제2국가연금제도 하에서 완전 경력을 보내는 중간 연령집단(즉, 2027-28년 이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개혁 전 시나리오에서는 1988년 개혁의 효과를 포함한 Serps를 위한 장기 연금지급률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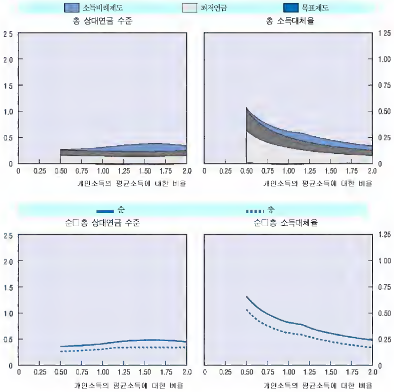
일련의 개혁들로 2003/04년부터 최저 소득보장이 연금 크레딧으로 대체되었다. 최저소득보장(Mig)는 개혁 이전 제도의 일부로 간주된다. 모형에서는 새로운 연금 크레딧 제도하의 보장 크레딧과 같은 비율을 Mig의 비율로 사용한다.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는 또한 여성의 연금 수급연령 증가의 효과를 포함하는데 이는 개혁이전에 있던 것으로 개혁과 별도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기 퇴직

공적 연금제도에서 조기 퇴직은 불가능하다.

연금모형 결과: 영국



만기 퇴직

2005년 4월까지는 국가연금을 70세까지만 유예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때 매년 7.4%의 증액이 있었다. 2005년 4월부터는 유예하는 연령의 제한이 없어질 것이고 유예에 따른 증액도 10.4$로 늘어난다. 또한 유예 기간 이후에 일시금으로 대신 찾아가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유예기간동안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은 repo율(영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최소 2퍼센트 포인트 높게 보장되는 이자율을 사용하여 마지막에 지급될 것이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29.3	26.7	28.3	30.8	33.9	33.9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39.2	36.0	38.0	41.1	44.6	44.6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34.4	53.4	37.8	30.8	22.6	17.0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45.4	66.1	49.2	41.1	30.6	24.0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5.1	8.0	5.7	4.6	3.4	2.5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5.9	9.1	6.5	5.3	3.9	2.9
순 연금자산	5.1	7.9	5.6	4.5	3.3	2.5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5.8	9.1	6.4	5.2	3.8	2.8

연금모형 결과: 영국, 개혁 이전의 시나리오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28.1	21.7	26.2	30.8	33.9	33.9
(평균소득의 백분율)						
순 상대 연금수준	37.7	29.4	35.5	41.1	44.6	44.6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총 소득대체율	33.0	43.3	35.0	30.8	22.6	17.0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순 소득대체율	43.7	53.9	45.9	41.1	30.6	24.0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총 연금자산	4.9	6.5	5.2	4.6	3.4	2.5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5.7	7.4	6.0	5.3	3.9	2.9
순 연금자산	4.9	6.5	5.2	4.5	3.3	2.5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5.6	7.4	6.0	5.2	3.8	2.8

미 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으로 알려진 공적 연금급여는 누진적 산식을 가진다. 또한 저소득 수급자를 위해 재산조사방식에 의한 추가 지급분이 있다.

수급요건

2004년 연금 수급연령(정상퇴직연령-normal retirement age, 또는 NRA 이라고 함)이 65세 및 66세이며 단계적으로 67세가 된다. 퇴직급여 수급은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고 기여연수에 의해 정해진다. 조기퇴직은 62세부터 가능하고 감액된 급여를 받는다.

급여산정

소득비례연금제도

급여산식은 누진적이다. 첫 번째 소득구간 월 USD 612은 소득대체율이 90%이다. 월 USD 612부터 USD 3,567 사이의 소득구간은 32%의 소득대체율이다. 이들 기준은 각각 평균소득의 22%, 133%이다. 그 이상의 소득부터 소득의 상한선까지의 소득대체율은 15%이다. 50%의 피부양자 추가금액이 지급되는데 두 번째 소득자의 수급액이 더 적고 적격 피부양 아동이 있는 기혼 부부에게 허용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은 수급자가 60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경제 전반의 평균소득 상승률에 따라 재평가된다. 60세 이후 연도의 소득에 대한 조정은 없다. 기초 급여가 62세 지급 시 계산된다. 그 이후 기초급여는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급여액은 총 35년이 필요하고 소득이 없는 해를 포함하여 최고 35년 동안의 생애평균 (재평가 이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기여와 급여에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선은 연간 USD 87,900 로 경제전반의 소득 상승률에 따라 매년 상향된 평균소득의 거의 3배(290%)에 해당한다.

지급연금은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최저연금

사회 보장제도에 최저연금이 있다. 특별 최저 일차보험액(special minimum primary insurance amount)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애 전체 가입기간에 의한 최저연금이 주어지는데 가입기간 11년에 USD 32, 가입기간 35년에 USD 696 사이로 다양하다. 이 최저 연금의 기준은 2004년 USD 9,765 또는 평균소득의

32%였다. (이 기준은 "구 법"의 기여금과 급여액 기준의 15%로 공식적으로 정의됨). 최저연금은 해당 소득 이하이므로 연금산정 모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목표제도

미국에서는 보족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으로 알려진,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를 제공한다. 65세 이상의 독신은 자산 및 기타 소득에 따라 연 USD 6,768 이까지 수급할 수 있다. 부부의 급여액은 USD 10,152 (독신자의 비율보다 50% 높음)이다. 이들 급여액은 국가 평균임금의 각각 22%, 23% 정도에 해당한다. 급여액은 물가에 연동된다.

자산조사(asset tests)가 엄격해서, 개인소유물, 집, 자동차, 장제보험 및 생명보험(두 보험은 USD 1,500까지)을 제외하고 독신의 경우 USD 2,000, 부부의 경우 USD 3,000까지의 자산으로 제한한다. 수급액 산정에 소액(월 USD 20)은 "무시(disregard)"된다. 그러고 나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100% 공제한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에서 결정한 최저급액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이 복잡해진다. 12개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최저급액만 지급하지만 28개 주는 자체의 제도가 있고, 12개 주에서는 연방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는 추가지급액을 제공한다. 이들 12개 주에서 지급하는 추가지급액의 평균은 독신 수급자에 대해 13%, 부부에 대해 18%이다. 모형에는 추가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하라.

조기 퇴직

조기 퇴직은 62부터 가능한데 계리적으로 감액된다. 정상연금 수급연령 이전 퇴직 첫 3년간에 대해서 급여는 연간 6 2/3% 씩 감액된다. 그 이후에는 감액률이 5%까지 떨어진다. 이는 정상 퇴직연령(NRA) 65세 이상의 퇴직자에게도 적용된다. 2004년 62세에 수급권이 있는 퇴직자는 정상 퇴직연령이 65세와 10개월이다. 이 연령은 점차 늘어나서 2022년 퇴직으로 수급권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67세에 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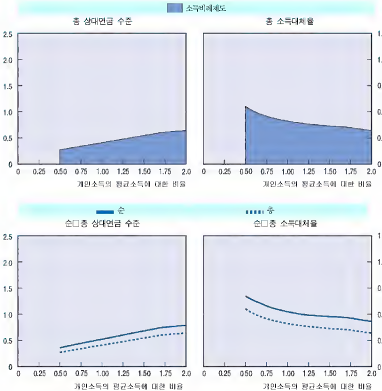
만기 퇴직

최초의 연금 수령은 NRA 이후로 유예할 수 있고 70세 까지 유예가 인정된다. 2004년의 수리적 증액률은 유예되는 매년 7%이다. 이 증액률은 2006~07년에 7.5%가 될 것이고 2008년 이후에는 8%가 된다.

소득조사에 의해 근로와 연금수령을 병행 할 수도 있다. NRA이하의 연령의 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 연금은 USD 11,640을 초과하는 소득의 50%가 감액된다. NRA에 도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득에 기초한 급여의 감액은 없다.

■ 미 국

연금모형 결과: 미국



남성 *여성 (남성과 다른 경우)*	*중간 소득자*	*개인소득, 경제전반 평균의 배수*				
		0.5	**0.75**	**1**	**1.5**	**2**
총 상대 연금수준 *(평균소득의 백분율)*	37.1	27.6	34.4	41.2	54.7	64.3
순 상대 연금수준 *(평균순소득의 백분율)*	47.6	36.1	44.5	52.4	68.3	78.9
총 소득대체율 *(개인별 총 소득의 백분율)*	43.6	55.2	45.8	41.2	36.5	32.1
순 소득대체율 *(개인별 순 소득의 백분율)*	55.3	67.4	58.0	52.4	47.9	43.2
총 연금자산	6.2	7.9	6.5	5.9	5.2	4.6
(개인별 총소득의 배수)	*7.2*	*9.2*	*7.6*	*6.8*	*6.1*	*5.3*
순 연금자산	6.1	7.9	6.5	5.7	5.0	4.3
(개인별 순 소득의 배수)	*7.1*	*9.2*	*7.5*	*6.6*	*5.8*	*5.0*

본 서적의 원본은 **Pensions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7 Edition**, ISBN 978-92-64-03214-9, 이라는 제목으로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본 번역은 OECD와의 합의서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book was published under the title Pensions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2007 Edition, ISBN 978-92-64-03214-9,

www.oecd.org/publishing/translations - Translated version of OECD publications
www.oecdbookshop.org - OECD online bookshop
www.sourceoecd.org - OECD e-library
www.oecd.org/oecddirect - OECD title alerting service

한 눈에 보는 연금

발행처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발행인 : 조기원
발행일 : 2008년 12월
인쇄처 : (주)국진피앤디

OECD/Korea Policy Centre - Health and Social Policy Programme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7-43
TEL : 82-2-3299-1226
FAX : 82-2-3299-1230